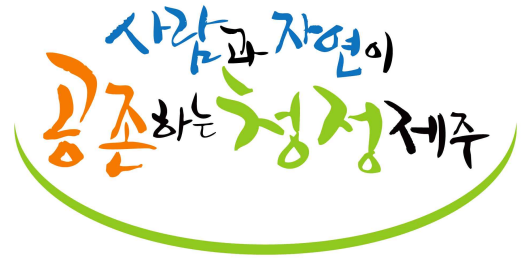




제842호. 2020. 03. 04.(수)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도 보

## 목 차

### 입법예고

제2020-12호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제2020-13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회계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4
제2020-14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
제2020-15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www.jeju.go.kr](http://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 시

제2020-31호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 .....	7
제2020-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8
제2020-33호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2019년도 이행실적 고시 .....	60
제2020-34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	61

### 공 고

제2020-67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61
제2020-6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	62
제2020-720호 2020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계획 추가 공고 .....	62

## 공 고

제2020-743호 2020년 지방경제혁신 아카데미 운영 지방보조사업 지원계획 공고	65
제2020-744호 2020년 메인인 제주 융복합 페스티벌 지방보조사업 지원계획 공고	67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알림(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분다클럽)	70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알림(사단법인 제주민예총)	71

## 제 주 시

제주시고시 제2020-75호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애월읍 광령리 3097-1번지 일원)	72
제주시고시 제2020-77호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조천읍 와산리 1488-16번지 일원)	73
제주시고시 제2020-79호 지구단위계획구역(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도시계획시설(중로1-42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고시	74
제주시공고 제2020-764호 건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75
제주시공고 제2020-767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홀천지류)	75
제주시공고 제2020-769호 보험미가입 일반여행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76
제주시공고 제2020-776호 보험미가입 일반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77
제주시공고 제2020-791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79
제주시공고 제2020-809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일반여행업)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80
제주시공고 제2020-810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일반여행업)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81
제주시공고 제2020-811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82
제주시공고 제2020-812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83
제주시공고 제2020-813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84
제주시공고 제2020-814호 보험미가입 일반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85
제주시공고 제2020-815호 보험미가입 일반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86
제주시공고 제2020-838호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87
제주시공고 제2020-845호 보험미가입 일반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08

## 서귀포시

서귀포시고시 제2020-28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내역 고시	110
서귀포시고시 제2020-45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10
서귀포시공고 제2020-607호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수용제결신청서 열람 공고	168
서귀포시공고 제2020-649호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171
서귀포시공고 제2020-655호 위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7호선)개설사업 실시계획(안)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175
서귀포시공고 제2020-662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177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0-12호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재정수입액 산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5조)

나. 재정수입액 산정에 따른 기준 등 보완(안 제6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23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 전화 및 전송 : (064)710-2314 Fax(064)710-2319
- E-mail : kdw1911@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 2. 27. ~ '20. 3. 18.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2020-13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회계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회계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회계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 이유

현행 지역개발기금이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 특별회계로 운영 당시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불필요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3. 규칙안: 따로 붙임

4. 의견 제출

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23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 전화 및 전송 : (064)710-2314 Fax(064)710-2319
- E-mail : kdwl911@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지역개발기금 회계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 2. 27. ~ '20. 3. 18.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규칙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0-14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록관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규칙명 : 제주특별자치도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시에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록관 명칭 정비(안 제4조)

나. 행정시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운영(안 제6조, 제7조, 제11조)

다. 조문 내용 및 표기법(띄어쓰기) 등을 바르게 함(안 제5조, 제13조, 제29조)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 전화 및 전송 : (064) 710 - 2227, Fax (064)710 - 2209

- E-mail : durtk2009@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기간 : 2020. 2. 28. ~ 3. 20.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규칙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0-15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최소분할 면적 제한 완화 및 태양광 발전사업 이격거리 제한 도입, 본도와 교통연계가 어려운 추자도의 건축기준 완화, 침체된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휴게음식점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안 제4조의2)

나. 전기공급설비 중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임의시설로 규정(안 제8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필수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8조)

라.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인 경작을 위한 성토·절토의 범위를 2m로 규정(안 제19조)

마.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범위 규정(안 제20조)

바. 토지의 분할 시 하나의 필지를 1년 이내에 세 개 이하로 분할 할 수 있도록 명확히 조문 개선(안 제21조)

사. 공공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완화(안 제60조)

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 또는 사본 제공 공개방식으로 개선(안 제74조)

자. 휴게음식점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안 별표 1)

차. 차고지 증명제 주차장 및 분묘조성을 위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 허용(안 별표 1)

카.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격거리를 두도록 개선(안 별표 1)

파. 도서지역(추자면) 건축제한(숙박시설, 레미콘 공장)을 완화하도록 개선(안 별표 24 및 별표 35)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도시계획재생과

- 전화 및 전송: 064-710-2683, FAX 064-710-2759

- E-mail: sk2hong@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0. 3. 3. ~ 3. 23.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31호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

도로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구 분	[V] 지정 [ ] 기존	[ ] 폐지 [ ] 변경
도로의 종류	붙임	
노선번호	붙임	
노선명	붙임	
기점	붙임	
중점	붙임	
주요 통과지	붙임	
총연장(킬로미터)	붙임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연장 (킬로미터)	붙임

도로(지방도) 노선의 지정

도로의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기점	중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다른 도로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연장 (km)
지방도	1123	애원로 (상가~애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6-2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043	제주시 애월읍	9.5	-	-
지방도	1124	금백조로 (송당~수산)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234-3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696	제주시 구좌읍 서귀포시 성산읍, 표선면	11.0	-	-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0-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시도19호선: 보성-구역)확장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km)
					당 초	변 경				
신 설	시도	19호선	보성 ~ 서광선	서귀포시 대정읍 일 원	당 초	변 경	대정읍 구역리 1037-1 (영어교육 도시)	대정읍 보성리 2057-1 (지방도 1132호선)	대정읍 보성, 구역, 인 성, 안성리  안덕면 서광리	4.195
					163,481	147,70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에 설계된 저류지 부분이 제척됨에 도로구역 결정(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6월 ~ 2023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지장물건조서:

- 붙임 용지조서, 지장물조서 첨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 064-710-2732)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 도로계획평면도 및 지형도면의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같음하며 따로 작성·고시하지 않음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분 묘 조 서

사업지구 :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선형변경구간) 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분묘 구분	수 량	연고 구분	석물 유무	소 유 자		묘 번
						성 명	주 소	
1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1008	단 장	1		유			
2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1015	단 장	2		유			
3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1018	단 장	1		유			
4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1019	단 장	1		유			
5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1022	단 장	1		유			
6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73-7	단 장	1		유			
7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75	단 장	1		유			
8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447	단 장	1		유			
9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459-17	단 장	1		유			
10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476-2	단 장	1		유			
11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483	단 장	1		유			
12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484-7	단 장	1		유			
13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69-1	단 장	1		유			
14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139-1	단 장	1		유			
15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140	단 장	1		유			
16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187-11	단 장	2		유			
17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200-4	단 장	1		유			
18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175-6	단 장	1		유			
19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207	단 장	1		유			
20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568-1	단 장	1		유			
21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568-1	단 장	1		유			
22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569	단 장	1		유			
23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594	단 장	1		유			
24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04-1	단 장	2		유			
25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05-1	단 장	1		유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재지	분묘 구분	수 량	연고 구분	석물 유무	소유자		묘 번
						성 명	주 소	
26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05-1	단 장	1		유			
27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05-5	단 장	1		유			
28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06-1	단 장	1		유			
29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87-3	단 장	1		유			
30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91	단 장	1		유			
31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805	단 장	1		유			
32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138	단 장	1		무			
33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060-1	단 장	1		유			
34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814	단 장	1		유			
35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848	단 장	1		유			
36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967-9	단 장	2		유			

토지 현황 총괄 집계표

지 목	사 유 지		시(도) 유 지		국 유 지		합 계		비 고
	필 수	편입면적	필 수	편입면적	필 수	편입면적	필 수	편입면적	
과	34	30,830	-	-	6	5,393	40	36,223	
구	1	29	-	-	-	-	1	29	
답	-	-	-	-	-	-	-	-	
대	15	2,730	-	-	2	495	17	2,986	
도	67	10,753	-	-	90	32,532	157	43,285	
묘	26	1,691	-	-	2	73	28	1,764	
잡	2	2,185	-	-	-	-	2	2,185	
전	88	44,539	-	-	21	4,869	109	49,408	
창	1	342	-	-	-	-	1	342	
천	-	-	-	-	-	-	-	-	
임	16	7,447	-	-	7	3,695	23	11,142	
장	1	98	-	-	-	-	1	98	
유	-	-	-	-	1	240	1	240	
합 계	251	100,644	-	-	129	47,297	380	147,702	

토지 현황 집계표 (보성리)

지 목	사 유 지		시(도) 유 지		국 유 지		합 계		비 고
	필 수	편입면적	필 수	편입면적	필 수	편입면적	필 수	편입면적	
과	28	25,584	-	-	5	4,818	33	30,402	
주	1	29	-	-	-	-	1	29	
답	-	-	-	-	-	-	-	-	
대	13	1,397	-	-	1	17	14	1,414	
도	53	7,773	-	-	71	23,621	124	31,394	
묘	22	1,436	-	-	2	73	24	1,509	
잡	2	2,185	-	-	-	-	2	2,185	
전	56	27,838	-	-	20	4,653	76	32,491	
창	-	-	-	-	-	-	-	-	
천	-	-	-	-	-	-	-	-	
임	16	7,447	-	-	4	2,353	20	9,800	
장	1	98	-	-	-	-	1	98	
유	-	-	-	-	-	-	-	-	
합 계	192	73,787	-	-	103	35,535	295	109,322	

토지 현황 집계표 (구역리)

지 목	사 유 지		시(도) 유 지		국 유 지		합 계		비 고
	필 수	편입면적	필 수	편입면적	필 수	편입면적	필 수	편입면적	
과	3	2,213	-	-	-	-	3	2,213	
구	-	-	-	-	-	-	-	-	
답	-	-	-	-	-	-	-	-	
대	2	1,333	-	-	-	-	2	1,333	
도	4	230	-	-	12	1,954	16	2,184	
묘	2	126	-	-	-	-	2	126	
잡	-	-	-	-	-	-	-	-	
전	15	7,740	-	-	1	216	16	7,956	
창	1	342	-	-	-	-	1	342	
천	-	-	-	-	-	-	-	-	
임	-	-	-	-	3	1,342	3	1,342	
장	-	-	-	-	-	-	-	-	
유	-	-	-	-	-	-	-	-	
합 계	27	11,984	-	-	16	3,512	43	15,496	

토지 현황 집계표 (안성리)

지 목	사 유 지		시(도) 유 지		국 유 지		합 계		비 고
	필 수	편입면적	필 수	편입면적	필 수	편입면적	필 수	편입면적	
과	3	3,033	-	-	1	575	4	3,608	
구	-	-	-	-	-	-	-	-	
답	-	-	-	-	-	-	-	-	
대	-	-	-	-	1	239	1	239	
도	10	2,750	-	-	6	6,909	16	9,659	
묘	2	129	-	-	-	-	2	129	
잡	-	-	-	-	-	-	-	-	
전	17	8,961	-	-	-	-	17	8,961	
창	-	-	-	-	-	-	-	-	
천	-	-	-	-	-	-	-	-	
임	-	-	-	-	-	-	-	-	
장	-	-	-	-	-	-	-	-	
유	-	-	-	-	1	240	1	240	
합 계	32	14,873	-	-	9	7,963	41	22,836	

토지 현황 집계표 (인성리)

지 목	사 유 지		시(도) 유 지		국 유 지		합 계		비 고
	필 수	편입면적	필 수	편입면적	필 수	편입면적	필 수	편입면적	
과	-	-	-	-	-	-	-	-	
구	-	-	-	-	-	-	-	-	
답	-	-	-	-	-	-	-	-	
대	-	-	-	-	-	239	-	239	
도	-	-	-	-	1	48	1	48	
묘	-	-	-	-	-	-	-	-	
잡	-	-	-	-	-	-	-	-	
전	-	-	-	-	-	-	-	-	
창	-	-	-	-	-	-	-	-	
천	-	-	-	-	-	-	-	-	
임	-	-	-	-	-	-	-	-	
장	-	-	-	-	-	-	-	-	
유	-	-	-	-	-	-	-	-	
합 계	-	-	-	-	1	287	1	287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구역리	1037 -4	과	1,203	1,203	박유홍	경상남도 양산 물금읍 동중7길 8, 110동 401호(주공아파트)				
2	구역리	1033 -3	대	388	388	박경홍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683				
3	구역리	1034	임	618	618	제주특별자치도	-				
4	구역리	1024 -1	전	3,302	107	박영중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634-7				
5	구역리	1023	묘	43	43	김달혁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6	구역리	1018 -7	전	1,086	1,086	박영중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634-7				
7	구역리	1018 -6	대	945	945	박영중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634-7				
8	구역리	1015 -5	전	110	110	고대익	제주시 과원로 80-5, 4층 501호(연동)				
9	구역리	1015 -4	전	1,367	1,367	백승봉 외1	제주시 수덕로 44, 209동 102호 (노형동,노형뜨란채)				
10	구역리	1010 -1	전	157	157	강길남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634-4				
11	구역리	1008 -5	전	621	197	양희량 외 1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537번길 91				
12	구역리	1008 -7	도	88	88	제주특별자치도					
13	구역리	1008 -8	전	336	336	양희량 외 1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537번길 91				
14	구역리	1008 -6	전	271	271	김희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762번길 79 씨10동 102호				
15	구역리	1007 -7	전	293	293	허영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66번길 27-17(운중동)				
16	구역리	1007 -8	전	350	350	제주특별자치도	-				
17	구역리	1006	임	643	643	국(기획재정부)	-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8	구억리	1006 -1	임	81	81	국(기획재정부)	-				
19	구억리	1005 -3	전	216	216	제주특별자치도	-				
20	구억리	1005 -2	도	139	139	남제주군	-				
21	구억리	1005 -1	도	23	23	제주특별자치도	-				
22	구억리	1004 -1	도	50	50	조기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23	보성리	173 -4	도	36	36	남제주군	-				
24	보성리	173 -2	도	12	12	고만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795				
25	구억리	1004 -2	도	198	48	남제주군	-				
26	구억리	983 -1	도	131	131	고창학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686				
27	구억리	983 -2	도	556	556	남제주군	-				
28	구억리	983 -5	과	275	275	문정임 외 1인	제주도 제주시 이도이동 405 영산홍주택 101-307				
29	구억리	983 -6	과	735	735	장형석 외 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2길 25, 202동 502호				
30	구억리	981 -3	전	297	297	제주유통영농조합법인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로 92번길 13				
31	구억리	981 -4	창	342	342	제주유통영농조합법인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로 92번길 13				
32	구억리	981 -1	도	333	333	남제주군	-				
33	구억리	1037 -1	도	66	66	남제주군	-				
34	구억리	1036 -3	도	315	7	남제주군	-				
35	구억리	1036 -4	전	797	797	강수방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818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36	구역리	1036 -2	도	26	26	강수방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818				
37	구역리	1035 -1	전	197	197	김용국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72, 108동 1210호				
38	구역리	1022 -1	전	2,071	2,071	이안옥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760				
39	구역리	1018 -5	전	104	104	박영종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634-7				
40	구역리	1019	묘	83	83	강월석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41	구역리	1018 -1	도	251	59	남제주군	-				
42	보성리	161 -2	도	573	388	남제주군	-				
43	구역리	1015 -3	도	168	168	남제주군	-				
44	구역리	1008 -2	도	324	324	남제주군	-				
45	구역리	1008 -1	도	163	163	제주특별자치도	-				
46	보성리	163 -18	대	17	17	제주특별자치도	-				
47	보성리	163 -1	도	75	75	김복선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716				
48	보성리	163 -2	도	568	568	남제주군	-				
49	보성리	163 -19	과	34	34	제주특별자치도	-				
50	구역리	1007 -4	도	3	3	남제주군	-				
51	보성리	167 -1	도	47	47	고만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795				
52	보성리	167 -4	전	155	155	고대익	제주도 제주시 과원로 80-5, 4층 501호	대정농업 협동조합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947	근저당권 지상권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53	보성리	170 -2	전	70	70	제주특별자치도					
54	보성리	170 -3	전	114	114	제주특별자치도					
55	보성리	171 -1	도	43	43	제주특별자치도	-				
56	보성리	171 -2	임	62	62	제주특별자치도	-				
57	보성리	172 -1	도	563	472	남제주군	-				
58	보성리	172	임	618	618	손유례 외1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공원길 15-1(접촌동)	산동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공원길 15-1(접촌동)	근저당권	
59	보성리	172 -2	임	618	618	남은경 외 1인	경상남도 문경시 중앙공원 15-1				
60	보성리	173 -7	전	668	668	고대웅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795				
61	보성리	173 -6	도	241	77	고대웅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795				
62	보성리	173 -8	전	290	290	구역리마을회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993-1				
63	보성리	173 -5	도	30	30	남제주군	-				
64	보성리	174 -6	임	5	5	구역리마을회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993-1				
65	보성리	174 -2	도	41	9	남제주군	-				
66	보성리	175 -2	임	78	78	고기백	남제주군 대정읍 구역리 794				
67	보성리	175 -11	도	305	135	고태길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794				
68	보성리	175 -9	전	86	86	김태심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73번길 40, 602동	주식회사 서광알앤디	강남구 테헤란로 139, 4층	근저당권	
69	보성리	175 -10	전			제주특별자치도					
70	보성리	437 -1	도	211	211	남제주군	-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71	보성리	441 -1	대	379	379	지더블유건설주 식회사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34				
72	보성리	441 -2	대	52	52	지더블유건설주 식회사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34				
73	보성리	443 -2	전	845	845	김경자	남제주군 대정읍 구역리 463-15	대정농업 협동조합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947	근저당권	
74	보성리	446 -1	전	2,042	2,042	고창학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686				
75	보성리	461	묘	86	86	김여문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76	보성리	459 -17	과	1,778	1,778	제주특별자치도					
77	보성리	459 -7	전	265	6	이하연외1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74 110동 402호				미분할
78	보성리	465 -1	대	280	31	양승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767	대정농업 협동조합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947	근저당권	미분할
79	보성리	459 -12	도	133	133	국(건설교통부)	-				
80	보성리	465 -16	도	32	26	제주특별자치도					
81	보성리	465 -11	도	150	140	국(건설교통부)	-				
82	보성리	459 -5	도	20	20	이태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576				
83	보성리	459 -2	도	400	400	이태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576				
84	보성리	459 -6	도	278	278	이태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576				
85	보성리	465 -25	도	213	213	이재우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86	보성리	459 -11	도	22	22	국(건설교통부)	-				
87	보성리	465 -13	도	66	53	국(건설교통부)	-				
88	보성리	459 -14	전	38	38	강창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781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89	보성리	459 -3	전	32	32	강창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781				
90	보성리	465 -18	도	19	3	제주특별자치도					
91	보성리	465 -20	도	13	13	제주특별자치도					
92	보성리	465 -7	대	286	3	문춘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465-7				
93	보성리	465 -27	대	96	96	박병국	부산 남구 용호동 486-41 태양빌아트-202				
94	보성리	465 -24	전	347	347	제주특별자치도					
95	보성리	478 -9	과	352	352	천성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92번길 3-2, 201호(상도동)				
96	보성리	466 -5	잡	1,927	1,927	강창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781	대정농업 협동조합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947	근저당권	
97	보성리	478 -10	과	1,206	1,206	천성열 외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로 62, 102동 302호(효자동, 테라비아타인지곡)				
98	보성리	477	묘	99	99	임최형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99	보성리	479 -5	과	107	107	주식회사 한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32, 5층				
100	보성리	481 -4	대	64	64	김상호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481	김상호	남제주군 대정읍 구역리 2016	지상권	
101	보성리	479 -4	도	598	261	남제주군	-				
102	보성리	482 -5	도	165	165	송경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03	보성리	483 -2	전	155	155	김갑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1688				
104	보성리	483 -1	도	469	469	김기유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05	보성리	175 -4	도	13	13	남제주군	-				
106	보성리	437 -3	전	2,392	2,392	오승미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61 103동 501호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07	보성리	440 -3	과	2,373	2,373	강영화	제주도 서귀포시 구역리 686				
108	보성리	448 -4	과	103	103	문영필	제주도 서귀포시 구역리 824				
109	보성리	447	묘	73	73	오인봉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면 감산리				
110	보성리	459 -15	전	535	535	문석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36				
111	보성리	460	묘	63	63	김여문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112	보성리	458	도	69	69	이경호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13	보성리	457 -9	전	5,230	26	박용철 외 2인	제주시 아라1동 1709-5 엽광아파트3동106호				
114	보성리	459 -4	도	79	79	이태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576				
115	보성리	457 -3	도	344	97	제주특별자치도					
116	보성리	457 -8	도	205	107	제주특별자치도					
117	보성리	466 -2	도	33	31	국(건설교통부)	-				
118	보성리	457 -10	도	100	39	국(건설교통부)	-				
119	보성리	466 -3	도	43	43	국(건설교통부)	-				
120	보성리	457 -11	도	81	51	국(건설부)	-				
121	보성리	466 -4	도	78	75	국(건설부)	-				
122	보성리	457 -12	전	9	9	제주특별자치도	-				
123	보성리	467	묘	50	50	문규평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124	보성리	468	묘	112	112	고임돌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한경면 저지리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25	보성리	471 -1	임	1,112	1,112	채세숙 외 2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91-5 도곡동삼성래미안아파트 109-1402				
126	보성리	476 -2	과	2,234	2,234	강운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721	대정농업 협동조합 제주감귤농 업협동조합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1029-11 서귀포시강정동155	근저당권	
127	보성리	481 -6	전	1,498	1,498	김상효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481				
128	보성리	482 -4	전	1,581	1,581	강운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721	대정농업 협동조합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947	근저당권	
129	보성리	483 -5	과	1,729	1,729	김갑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1688				
130	보성리	484 -3	도	248	248	정문철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1654				
131	안성리	1968 -1	도	4	4	남제주군	-				
132	안성리	1968 -2	과	13	13	강운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721				
133	안성리	1967 -4	도	257	257	송경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34	안성리	1967 -8	전	309	309	강운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73	제주시농업 협동조합	제주도 제주시 일도이동 985-1,2	근저당권 지상권	
135	안성리	1967 -1	도	747	710	송경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36	안성리	1967 -10	전	27	27	강만부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1616				
137	안성리	1967 -6	도	329	329	강순용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73				
138	안성리	1967 -9	전	776	776	송준철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235				
139	안성리	1967 -11	전	27	27	김희선 외1					
140	안성리	1965 -2	도	260	260	김상수	서울 양천구 목동 501 왕자아파트9-101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41	안성리	1965 -3	전	913	913	고용욱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794				
142	안성리	1963 -1	도	26	26	남제주군	-				
143	안성리	1963 -2	전	571	571	송창선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36				
144	안성리	1962 -4	과	1,149	1,149	강만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16	대정농업 협동조합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947	근저당권	
145	안성리	1959 -3	과	1,871	1,871	김경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235				
146	안성리	2038	도	146,814	4,799	국(농림부)	-				
147	안성리	1852 -1	전	14	14	임기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48	보성리	772 -5	전	1,081	1,081	박애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1-3 가락현대5차아파트52-901				
149	안성리	1851 -1	전	23	23	고양욱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726				
150	안성리	1847 -3	과	575	575	제주특별자치도					
151	안성리	1848	묘	60	60	강제홍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면 대포리				
152	안성리	1847 -2	대	239	239	제주특별자치도					
153	보성리	484 -7	과	1,073	1,073	허영식	제주시 아라일동 2612-19				
154	보성리	484 -5	도	322	69	허영식	제주시 아라일동 2612-19				
155	보성리	484 -8	과	533	533	신양순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74				
156	안성리	1967 -2	전	204	204	오문필	제주시 도남동 50-3 이도백록연립205				
157	안성리	1967 -5	도	143	143	오문필	제주시 도남동 50-3 이도백록연립205				
158	보성리	769 -2	전	110	110	오문필	제주시 도남동 50-3 이도백록연립205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59	보성리	762 -1	도	4	4	강영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686				
160	보성리	762 -3	전	101	101	강동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686				
161	안성리	1965 -1	도	139	139	고산태길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794				
162	보성리	759 -6	전	83	83	허충호 외 1인	서귀포시 서귀동 285-1				
163	보성리	759 -4	도	127	127	남제주군	-				
164	보성리	759 -2	도	492	492	임시연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5	보성리	759 -5	도	189	189	임시연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6	보성리	759 -1	임	175	175	송창선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36				
167	보성리	754 -1	도	1	1	남제주군	-				
168	보성리	754 -4	도	463	6	허충호	서귀포시 서귀동 285-1	755-1 과 합병			
169	안성리	1962 -2	도	96	96	강권칠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1068				
170	안성리	1962 -1	도	340	340	강권칠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1068				
171	안성리	1962 -3	도	120	120	남제주군	-				
172	안성리	1959 -1	도	284	284	김원문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235				
173	보성리	753 -5	전	2	2	제주특별자치도					
174	보성리	753 -3	전	34	34	제주특별자치도					
175	안성리	1959 -2	도	192	192	김원문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235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76	보성리	2138	도	106,627	8,591	국(국토교통부)	-				
177	보성리	772 -1	도	2,669	2,548	남제주군	-	753-1, 773-1 합병			
178	보성리	771 -1	도	9	9	오인봉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79	보성리	771	묘	47	47	오인봉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80	보성리	772 -3	전	38	38	고문홍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794.	대정농업 협동조합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947.	근저당권	
181	보성리	772 -4	전	91	91	고문홍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794.				
182	보성리	773 -4	전	52	52	진세옥	제주시 서광로11길 28, 2층(삼도일동)	신용보증 기금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4-5	가압류	
183	보성리	773 -3	장	98	98	현동부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722-2 메르헨하우스3-135	제주와이 신용협동조합	제주도 제주시 용담일동 155-11	근저당권	
184	안성리	1813 -1	전	878	878	황보환	제주특별자치도				
185	안성리	1814	묘	69	69	강위사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86	안성리	1811 -2	전	295	295	강정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5길 68-6 102동 1704호				
187	안성리	1810 -1	유	240	240	국(농림수산부)	-				
188	안성리	1806 -2	전	1,218	1,218	최성진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캐슬휘닉스1001호				
189	안성리	1805 -2	전	825	825	강창호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54번길 4-5				
190	안성리	1804 -2	전	800	800	강창호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54번길 4-5				
191	안성리	1803 -2	전	1,052	1,052	조민봉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1674				
192	안성리	1801 -1	전	195	195	이상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6 209동 1202호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지상권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93	안성리	1800 -2	전	834	834	정성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59				
194	안성리	1800 -1	도	300	300	남제주군	-				
195	보성리	1141 -7	전	176	176	강윤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라봉5길 23 201호	대정농업 협동조합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947	근저당권 지상권	
196	보성리	1141 -2	도	40	40	이경호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97	보성리	1141 -8	전	54	54	강윤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라봉5길 23 201호				
198	보성리	1141 -5	전	63	63	강윤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라봉5길 23 201호				
199	보성리	1141 -10	전	16	16	강윤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라봉5길 23 202호				
200	보성리	1139 -2	도	321	207	이운수	제주도 서귀포시 일과리 67				
201	보성리	1144 -5	도	342	208	남제주군	-				
202	보성리	1114 -2	도	40	40	조문옥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557				
203	보성리	1114 -6	도	185	185	제주특별자치도					
204	보성리	1144 -2	도	473	473	제주특별자치도					
205	보성리	1144 -7	전	5	5	제주특별자치도					
206	보성리	1144 -3	도	60	60	제주특별자치도					
207	보성리	1145 -2	전	4,018	6	허용호	김해시 외동 1261-9 임호마을 한국아파트214-1202				
208	보성리	1145 -6	도	162	162	이창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253				
209	보성리	1145 -3	임	578	578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210	보성리	780 -2	전	11	11	문태전	서귀포시 법환동 1115-3				
211	보성리	781 -2	전	110	110	문태전	서귀포시 법환동 1115-3				
212	보성리	784 -4	도	23	23	송응율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1675				
213	안성리	1804 -1	도	1,660	1,660	남제주군	-				
214	보성리	785 -4	도	15	15	제주특별자치도					
215	보성리	785 -2	도	13	13	제주특별자치도					
216	보성리	785 -3	도	24	24	제주특별자치도					
217	보성리	1138 -9	전	17	17	야자수영농조합 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용흥로66번길 192				
218	보성리	1138 -5	도	42	42	남제주군	-				
219	보성리	1138 -3	도	288	288	강문호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2028				
220	보성리	1138 -4	도	492	492	강순식	일본국 신호시 장전구 어옥부통 2정목5번25호				
221	보성리	1138 -6	도	155	155	강순식	일본국 신호시 장전구 어옥부통 2정목5번25호				
222	보성리	1138 -10	전	650	650	제주특별자치도					
223	보성리	1135 -33	전	215	215	최운보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143(서호동, 해피니스빌)				
224	보성리	1139 -3	도	281	281	남제주군	-				
225	보성리	1135 -35	전	108	108	제주특별자치도					
226	보성리	1140	묘	26	26	김종식	제주도 서귀포시 보성리				
227	보성리	1135 -34	전	253	253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228	보성리	1135 -36	전	338	338	제주특별자치도					
229	보성리	1135 -37	전	135	135	박영규외2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4길 25 나동 305호				
230	보성리	1135 -38	전	383	383	제주특별자치도					
231	보성리	1114 -10	전	1,732	1,732	조용석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44 남산타운아파트28-801	대정농업 협동조합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947	근저당권 지상권	
232	보성리	1114 -3	도	20	20	조문옥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557				
233	보성리	1114 -11	전	51	51	윤민	인천 서구 가정동 546 한신그랜드힐빌리지5-202				
234	보성리	1144 -4	도	7	7	제주특별자치도					
235	보성리	1144 -6	전	3	3	제주특별자치도					
236	보성리	1145 -4	임	208	208	이종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1-1				
237	보성리	1187 -9	전	588	588	이종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1-1	대정농업 협동조합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947	근저당권	
238	보성리	1145 -8	도	132	132	남제주군	-				
239	보성리	1145 -7	도	114	18	이창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253				
240	보성리	1145 -5	도	188	188	이창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253				
241	보성리	1187 -6	도	71	71	송두백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260				
242	보성리	1187 -5	도	96	96	송두백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260				
243	보성리	1187 -3	도	109	109	송두백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260				
244	보성리	1186 -5	도	32	15	윤공선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5	보성리	1186 -2	묘	10	10	윤공선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246	보성리	1184 -4	도	6	6	이남만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1574				
247	보성리	1176 -5	도	30	30	강경량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77				
248	보성리	1198 -4	도	50	50	강해생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16				
249	보성리	1198 -10	도	42	42	남제주군	-				
250	보성리	1198 -8	도	23	23	강문호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1656				
251	보성리	1176 -8	도	625	625	이대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52	보성리	1198 -11	도	114	114	남제주군	-				
253	보성리	1176 -4	임	248	248	이대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54	보성리	1175 -2	도	254	161	이대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55	보성리	1175 -4	임	23	23	이대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56	보성리	1175 -3	도	291	291	이대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57	보성리	1174 2	묘	45	45	좌운룡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58	보성리	1174 -1	묘	20	20	좌운룡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59	보성리	1200 -3	도	302	302	남제주군	-				
260	보성리	1201 -3	도	329	329	강원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255번지				
261	보성리	1204 -5	도	152	137	남제주군	-				
262	보성리	1172 -5	전	6	6	서귀금융조합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리 665				
263	보성리	1206 -1	과	105	105	강만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16				
264	보성리	1689 -1	과	523	523	황보순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52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265	보성리	1688 -1	과	378	378	황보순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52				
266	보성리	1687 -3	대	198	198	이순옥 외1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100				
267	보성리	1687 -4	대	48	48	강위상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281				
268	보성리	1687 -1	도	230	127	남제주군	-				
269	보성리	1584 -6	도	59	54	남제주군	-				
270	보성리	1584 -8	전	141	141	조병철 외 1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0 602호				
271	보성리	1187 -1	잡	258	258	이종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1-1				
272	보성리	1187 -11	전	1,256	1,256	송시봉 외2	제주시 과원로 27, 305동 204호 (노형동,부영아파트)	모슬포수산 업협동조합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항구로 30	지상권	
273	보성리	1198 -9	도	330	144	강해생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16				
274	보성리	1198 -13	전	830	830	제주특별자치도					
275	보성리	1198 -16	전	492	492	강영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길 20 109동 903호				
276	보성리	1198 -14	과	554	554	임영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상로 33-4				
277	보성리	1198 -15	전	744	744	이종협	제주시 도남동 88-9 다세대주택302				
278	보성리	1200 -4	전	695	695	이종협	제주시 도남동 88-9 다세대주택302				
279	보성리	1201 -2	전	1,002	1,002	강원백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255				
280	보성리	1204 -8	과	1,791	1,791	강만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16				
281	보성리	1204 -9	과	118	118	김동효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204-4				
282	보성리	1207	묘	314	314	임기휴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283	보성리	1694 -8	과	1,854	1,854	송상우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242				
284	보성리	1693 -3	전	17	17	오용주외2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106				
285	보성리	1691	묘	60	60	고성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86	보성리	1692	전	561	561	제주특별자치도					
287	보성리	1582 -1	도	9	9	남제주군	-				
288	보성리	1582 -2	전	32	32	강승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581				
289	보성리	1583 -1	도	35	35	남제주군	-				
290	보성리	1583	전	124	124	제주특별자치도					
291	보성리	1581 -1	대	3	3	강승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581	대정농업 협동조합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947	근저당권	
292	보성리	1570 -6	과	2,995	2,995	송영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덕로 78 104동 1102호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293	보성리	1569	묘	126	126	이신일	서귀포시 동홍동 147 동홍아파트101-304				
294	보성리	1568 -9	대	366	366	보성리마을회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568-5				
295	보성리	1568 -4	도	446	105	보성리마을회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568-5				
296	보성리	1568 -8	대	66	66	보성리마을회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73				
297	보성리	1587 -4	대	91	91	보성리마을회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568-5				
298	보성리	1587 -2	도	304	259	남제주군	-				
299	보성리	1587 -3	전	278	278	임영택	서귀포시 대정읍 보상하로 6				
300	보성리	1595 -2	도	50	8	남제주군	-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301	보성리	1596 -2	도	145	145	남제주군	-				
302	보성리	1595 -5	전	5	5	남제주군	-				
303	보성리	1597 -2	도	10	10	남제주군	-				
304	보성리	1591 -4	전	7	7	정성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59				
305	보성리	1591 -7	과	3,326	132	정성문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59				
306	보성리	1594	묘	50	50	이기호	제주도 서귀포시 하에리				
307	보성리	1591 -3	도	502	397	정성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59				
308	보성리	1591 -5	임	99	99	정성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59				
309	보성리	1604 -1	묘	53	53	이원백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310	보성리	1604 -2	묘	20	20	이원백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311	보성리	1605 -3	임	344	344	임치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207				
312	보성리	1605 -2	도	532	451	남제주군	-				
313	보성리	1606 -2	묘	13	13	김승구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리				
314	보성리	1606 -1	묘	63	63	김승구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리				
315	보성리	1815 -1	임	882	882	제주특별자치도					
316	보성리	1818	묘	3	3	장수규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317	보성리	1805	묘	43	43	조승언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318	보성리	1804 -2	과	1,339	1,339	좌순선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195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6	근저당권 지상권	
319	보성리	1804 -1	도	441	441	남제주군	-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320	보성리	1807 -9	임	2,254	9	강형철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732 부영아파트102-102	대정농업 협동조합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947	근저당권	
321	보성리	1807 -7	도	398	84	남제주군	-				
322	보성리	1791	묘	60	60	이원근	제주도 서귀포시 무릉리				
323	보성리	1790 -3	도	23	17	남제주군	-				
324	보성리	1790 -7	전	6	6	박영실 외 1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07 럭키아파트2-1101				
325	보성리	1790 -8	전	2,080	2,080	박영실 외 1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07 럭키아파트2-1101				
326	보성리	1570 -3	도	512	30	야산두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243				
327	보성리	1570 -4	도	208	36	이경희	제주도 서귀포시 동일리 391				
328	보성리	1568 -1	전	460	460	제주특별자치도					
329	보성리	1567 -2	도	99	99	남제주군	-				
330	보성리	1568 -2	도	298	298	강원백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331	보성리	1567 -3	전	357	357	제주특별자치도					
332	보성리	1568 -3	전	69	69	보성리마을회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73				
333	보성리	1566 -1	임	270	270	임영택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225				
334	보성리	1596 -3	전	1,024	1,024	임영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10-5				
335	보성리	1597 -4	전	1,013	1,013	임영택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10-5	대정농업 협동조합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947	근저당권	
336	보성리	1597 -5	전	60	60	고일평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337	보성리	1603 -2	도	228	72	남제주군	-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338	보성리	1603 -4	도	13	13	문일백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329				
339	보성리	1603 -5	전	131	131	강경백	제주시 정촌3길 11, 205호 (노형동, 풍성웰빙파크)	대정농업 협동조합	대정읍 하모중앙로 70	근저당권	
340	보성리	1605 -5	전	1,342	1,342	임치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207				
341	보성리	1819 -7	과	87	87	제주특별자치도					
342	보성리	1819 -8	과	166	166	제주특별자치도					
343	보성리	1819 -6	과	923	923	김동여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348-1 에이도 202호				
344	보성리	1803 -2	과	2,753	2,753	제주특별자치도					
345	보성리	1801 -2	과	344	344	송준호 외1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41번길 26, 803호 (법환동 제주오션스카이아파트)	대정농업 협동조합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947	근저당권	
346	보성리	1800 -3	과	356	356	강상보	제주시 도남로15길 13, 301호 (도남동, 도남월드하우스)	제주은행	제주시 이도일동 1349	근저당권	
347	보성리	1800 -1	도	712	163	남제주군	-				
348	보성리	1798 -1	도	650	579	남제주군	-				
349	보성리	1798 -2	과	838	838	김순자 외 1명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728	대정농업 협동조합 제주감귤농 업협동조합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947 제주도서귀포시강정동155	근저당권	
350	보성리	1792	묘	43	43	국(기획재정부)	-				
351	보성리	1790 -5	전	2,319	2,319	심종극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2리 2720				
352	보성리	1781 -3	도	410	154	국(건설교통부)	-				
353	보성리	1781 -2	도	69	26	국(건설교통부)	-				
354	보성리	2056 -5	도	523	523	국(건설교통부)	-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355	보성리	2056 -4	도	182	182	이창식	일본국 동경도 황천구 동일모리육정목36번1호				
356	보성리	2056 -3	도	40	40	이창식	일본국 동경도 황천구 동일모리육정목36번1호				
357	보성리	2057 -2	도	264	264	국(건설교통부)	-				
358	인성리	728	도	42,363	48	국(국토해양부)	-	도로확인불가			
359	보성리	2063 -2	도	40	40	국(건설부)	-				
360	보성리	2064 -1	묘	30	30	제주특별자치도	-				
361	보성리	2064 -2	도	3	3	이치만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362	보성리	2063 -4	도	1,901	1,901	국(건설교통부)	-				
363	보성리	2063 -3	도	192	132	국(건설부)	-				
364	보성리	2065	도	46	46	국(건설교통부)	-				
365	보성리	2067 -5	도	1,022	821	국(건설교통부)	-				
366	보성리	1795 -1	임	831	831	국(기획재정부)	-				
367	보성리	1786 -3	전	45	45	김경은	제주도 서귀포시 상모리 313	대정단위농 업협동조합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947	근저당권	
368	보성리	1797 -1	과	174	174	임철민 외 1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5 무궁화아파트102-1401				
369	보성리	1796 -4	임	26	26	고유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돈내길 16 5층				
370	보성리	1796 -5	임	1	1	고유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돈내길 16 5층				
371	보성리	2055 -9	임	3,613	3,613	이상훈 외 1인	상모리 3844 할라빌라 나동 306호				
372	보성리	2056 -1	주	1,110	29	장제정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738	제주감귤농 업협동조합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155	근저당권 지상권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373	보성리	2055 -6	도	39	39	이문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374	보성리	2055 -10	대	3	-	제주감귤 농업협동조합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155				
375	보성리	2055 -5	도	16	16	국(건설교통부)	-				
376	보성리	2060 -4	과	16	16	김상수	제주도 서귀포시 상모리 3138	대정단위농 업협동조합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1029-11	근저당권	
377	보성리	2060 -3	과	182	182	고정일	제주도 서귀포시 상모리 3810				
378	보성리	2057 -5	과	2,859	2,859	고정일	제주시 연동 294-81 경동빌라 202	대정단위농 업협동조합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1029-11	근저당권	
379	보성리	2057 -3	도	970	970	국(건설교통부)	-				
380	보성리	2063 -5	과	393	393	강형선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16				

지 장 물 조 서

사업지구 :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 유 자		관 계 인			도면 번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1	구역리 981-3	방/창고	판넬/판넬지붕	110.6	㎡		제주유통영농 조합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로 92번길 13					
		마 당	콘크리트	67.0	㎡								
		돌 담	H=0.8m,L=75.0m	1	식								
2	구역리 983-5,6	창 고	블록/스래트지붕	75.7	㎡		홍성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일동1046-9					
		돌 담	H=1.2m,L=111.0m	1	식								
		삼나무	H=8.0m,R=0.2m	42	주								
		사대기나무	H=9.0m,R=0.3m	1	주								
		사대기	H=4.0m,R=0.15m	10	주								
		밀감나무	H=2.3m,R=0.15m	76	주								
		동백나무	H=1.0m,R=0.05m	41	주								
3	구역리 1008-8	돌 담	H=0.6m,L=93.0m	1	식		김춘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821					
		밀감나무	H=2.3m,R=0.15m	147	주								
		삼나무	H=10.0m,R=0.2m	26	주								
		사대기나무	H=2.5m,R=0.2m	12	주								
		사대기나무	H=3.0m,R=0.15m	6	주								
		사대기나무	H=8.0m,R=0.2m	3	주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 유 자		관 계 인			도면 번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4	구역리 1010-1	마 당	콘크리트	170.0	m <sup>2</sup>		강길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634-4					
		돌 담	H=0.5m,L=41.0m	1	식								
		소나무	H=3.0m,R=0.1m	1	주								
		사철나무	H=3.0m,R=0.15m	7	주								
		돈나무	H=2.0m,R=0.1m	1	주								
		쥐똥나무	H=3.0m,R=0.15m	3	주								
6	구역리 1018-7	돌 담	H=2.0m,L=94.0m	1	식		박영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634-7					
		밀감나무	H=2.3m,R=0.2m	335	주								
		삼나무	H=5.0m,R=0.2m	15	주								
		소나무	H=12.0m,R=0.4m	1	주								
		소나무	H=10.0m,R=0.3m	1	주								
		사대기나무	H=8.0m,R=0.25m	6	주								
		삼나무	H=10.0m,R=0.2m	20	주								
		사철나무	H=4.0m,R=0.2m	10	주								
7	구역리 1022-1	삼나무	H=10.0m,R=0.2m	13	주		이안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760					
		사대기나무	H=10.0m,R=0.3m	1	주								
		밀감나무	H=2.3m,R=0.15m	302	주								
8	구역리 1024-1	소나무	H=3.0m,R=0.1m	10	주		박영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2028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유자		관계인			도면 번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9	구역리 1033-3	돌 담	H=1.5m,L=48.0m	1	식		박경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683					
		건물	조립식 판넬	156.68	㎡								
		창고	조립식 판넬	5.00	㎡								
		대 문	철 재 H=1.5m,L=2.7m	1	식								
10	구역리 1034	저수조	콘크리트/슬라브지붕	51.8	㎡		남제주군						
		기계실	판넬/판넬지붕	7.8	㎡								
		지하수관정		1	식								
		웬 스	H=2.0m,L=61.0m	1	식								
		계 단	콘크리트,B=1.0m,L=1 4.0m	1	식								
		마 당	콘크리트	155.0	㎡								
		농사용전기	5kW	1	식								
11	구역리 1036-4	돌 담	H=0.5m,L=105.0m	1	식		강수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818					
		밀감나무	H=2.0m,R=0.15m	137	주								
		사대기나무	H=4.0m,R=0.1m	2	주								
		삼나무	H=10.0m,R=0.2m	17	주								
		사철나무	H=1.2m,R=0.05m	5	주								
		사대기나무	H=6.0m,R=0.15m	7	주								
		사철나무	H=4.0m,R=0.1m	6	주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유자		관계인			도면 번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2	구역리 1037-4	창고	블록/스래트지붕	97.7	㎡		박유홍외1인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동중7길 8, 110동 401호(주공아파트)					
		창고	블록/슬라브지붕	11.6	㎡								
		창고	블록/스래트지붕	4.2	㎡								
		저수조	블록,H=2.0m,L=12.0m	1	식								
		대문	철재,H=1.5m,L=3.2m	1	식								
		마당	콘크리트	21.0	㎡								
		돌담	H=1.7m,L=106.0m	1	식								
		밀감나무	H=2.3m,R=0.25m	71	주								
		사대기나무	H=4.0m,R=0.1m	8	주								
		사대기나무	H=10.0m,R=0.2m	10	주								
13	보성리 163	돌담	H=0.5m,L=80.0m	1	식		정소연 외1인	제주시 동화로1길 11, 106동204호 (화북일동, 화북1아파트)					
		밀감나무	H=2.0m,R=0.1m	33	주								
		삼나무	H=8.0m,R=0.2m	5	주								
		편백나무	H=8.0m,R=0.2m	6	주								
14	보성리 167-4	돌담	H=0.5m,L=72.0m	1	식		고대익	제주시 남녕로4길 19, 102호(연동, 은하빌라)					
		밀감나무	H=2.0m,R=0.15m	55	주								
		삼나무	H=10.0m,R=0.2m	6	주								
		사대기나무	H=10.0m,R=0.25m	3	주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 유 자		관 계 인			도면 번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15	보성리 172	돌 담	H=1.2m,L=129.0m	1	식		윤선희 외1인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37길8(산격동)					
		밀감나무	H=2.0m,R=0.15m	171	주								
		삼나무	H=8.0m,R=0.2m	80	주								
16	보성리 173-7	돌 담	H=1.7m,L=102.0m	1	식		고대웅	구역리 795					
		소나무	H=8.0m,R=0.4m	1	주								
		소나무	H=8.0m,R=0.3m	12	주								
		삼나무	H=8.0m,R=0.25m	1	주								
		밀감나무	H=2.3m,R=0.15m	97	주								
17	보성리 440-3	창 고	블록/스래트지붕	3.8	m <sup>2</sup>		강영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686					
		대 문	철재,H=1.7m,L=3.2m	1	식								
		돌 담	H=1.5m,L=43.0m	1	식								
		그물망	PIPE + 그물 H=3.0m,L=27.0m	1	식								
		진입로	콘크리트	146.0	m <sup>2</sup>								
		콘크리트 지지대		1	식								
		지지대철근		1	식								
		키위나무	H=2.5m,R=0.15m	35	주								
		사대기나무	H=10.0m,R=0.25m	9	주								
		편백나무	H=5.0m,R=0.2m	2	주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 유 자		관 계 인			도면 번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삼나무	H=8.0m,R=0.2m	17	주								
		사대기나무	H=4.0m,R=0.1m	20	주								
18	보성리 441-1,2	창 고	PIPE + 비닐 + 보온 차광막/보온지붕	63.5	m <sup>2</sup>		임현성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745-1					
		이동식 화장실	FRP	1	식								
19	보성리 443-2	밀감나무	H=2.0m,R=0.1m	197	주		김경자	남제주군 대정읍 구역리463-15					
		삼나무	H=10.0m,R=0.25m	25	주								
		감나무	H=4.0m,R=0.1m	1	주								
		사대기나무	H=8.0m,R=0.2m	9	주								
20	보성리 446-1	돌 담	H=1.0m,L=88.0m	1	식		고창학	구역리 686					
		밀감나무	H=2.0m,R=0.1m	281	주								
		사대기나무	H=6.0m,R=0.3m	1	주								
		사대기나무	H=6.0m,R=0.15m	5	주								
		삼나무	H=8.0m,R=0.2m	1	주								
21	보성리 459-15	창 고	블록/스래트지붕	15.1	m <sup>2</sup>		문석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36					
		돌 담	H=1.0m,L=35.0m	1	식								
		삼나무	H=4.0m,R=0.1m	1	주								
		삼나무	H=10.0m,R=0.2m	5	주								
		밀감나무	H=2.0m,R=0.1m	79	주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 유 자		관 계 인			도면 번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22	보성리 459-17	삼나무	H=10.0m,R=0.25m	36	주		강연옥	광주 북구 우산동 611-5					
		사철나무	H=3.0m,R=0.25m	9	주								
		사대기나무	H=5.0m,R=0.2m	8	주								
		밀감나무	H=2.0m,R=0.1m	286	주								
23	보성리 465-1	화장실	블록/슬라브지붕	8.3	m <sup>2</sup>		양승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767					
		정화조		1	식								
		물탱크	FRP,1000ℓ	1	식								
		돌 담	H=1.3m,L=31.0m	1	식								
		마 당	콘크리트	84.0	m <sup>2</sup>								
		동백나무	H=3.0m,R=0.2m	1	주								
		구상나무	H=0.5m,R=0.03m	1	주								
		소나무	H=0.8m,R=0.05m	1	주								
		석류나무	H=2.5m,R=0.1m	2	주								
24	보성리 466-5	굴재배 비닐하우스	맘모스/비닐지붕	1486.5	m <sup>2</sup>		강창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781					
		창 고	PIPE + 비닐/비닐지붕	10.0	m <sup>2</sup>								
		창 고	블록/스래트지붕	102.5	m <sup>2</sup>								
		창 고	블록/함석지붕	91.5	m <sup>2</sup>								
		지하수	H=95.0m	1	식								
		농사용전기	5kW	1	식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유자		관계인			도면 번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돌 담	H=1.5m,L=47.0m	1	식								
		마 당	콘크리트	113.0	㎡								
		동백나무	H=1.3m,R=0.1m	22	주								
		밀감나무	H=2.0m,R=0.15m	170	주								
25	보성리 476-2	망고재배 비닐하우스	مام모스/비닐지붕	1561.5	㎡		강윤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721					
		한라봉나무	H=2.5m,R=0.15m	120	주								
26	보성리 478-9	귤재배 비닐하우스	مام모스/비닐지붕	1174.3	㎡		강창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781					
		돌 담	H=1.3m,L=130.0m	1	식								
		스프링쿨러		1	식								
		자동 컨트롤박스		1	식								
		운반레일	PIPE	1	식								
		밀감나무	H=2.0m,R=0.1m	180	주								
		사대기나무	H=4.0m,R=0.07m	25	주								
27	보성리 479-5	귤재배 비닐하우스	مام모스/비닐지붕	31.9	㎡		김경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59-1					
		돌 담	H=1.3m,L=55.0m	1	식								
		소철나무	H=0.6m,R=0.1m	2	주								
		밀감나무	H=2.0m,R=0.1m	15	주								
		밀감나무	H=0.5m,R=0.01m	28	주								
		소철나무	H=1.5m,R=0.3m	1	주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 유 자		관 계 인			도면 번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감나무	H=3.0m,R=0.15m	3	주								
28	보성리 481-4	창 고	블록/스래트지붕	62.3	㎡		김상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481					
		가 추	PIPE + 함석/함석지붕	-	㎡								
		주 택	블록/슬라브지붕	-	㎡								
		다용도실	블록/슬라브지붕	-	㎡								
		돌 담	H=1.2m,L=4.0m	1	식								
		마 당	잔 디	10.0	㎡								
29	보성리 481-6	돌 담	H=1.5m,L=39.0m	1	식		김상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481					
		밀감나무	H=2.3m,R=0.12m	242	주								
		삼나무	H=12.0m,R=0.25m	30	주								
30	보성리 482-4	기계실	판넬/판넬지붕	8.1	㎡		강윤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721					
		망고재배 비닐하우스	맘모스/비닐지붕	1347.6	㎡								
		스프링쿨러		1	식								
		열풍기		1	식								
		돌 담	H=1.2m,L=56.0m	1	식								
		향나무	H=2.0m,R=0.03m	72	주								
		사대기나무	H=1.0m,R=0.02m	1	주								
31	보성리 483-5	창 고	블록/스래트지붕	70.1	㎡		김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1688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 유 자		관 계 인			도면 번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대 문	PIPE H=1.6m,L=3.5m	1	식								
		돌 담	H=0.7m,L=132.0m	1	식								
		삼나무	H=10.0m,R=0.2m	97	주								
		밀감나무	H=2.3m,R=0.15m	256	주								
32	보성리 484-7	주 택	블록/스래트지붕	32.9	m <sup>2</sup>		허영식	제주시 아라일동 2612-19					
		창 고	블록/스래트지붕	90.5	m <sup>2</sup>								
		기름보일러		1	식								
		상수도		1	식								
		이동식화장실	FRP	1	식								
		마 당	콘크리트	43.0	m <sup>2</sup>								
		돌 담	H=0.6m,L=62.0m	1	식								
		삼나무	H=10.0m,R=0.25m	16	주								
		편백나무	H=6.0m,R=0.2m	1	주								
		밀감나무	H=2.3m,R=0.2m	150	주								
		소나무	H=4.0m,R=0.25m	1	주								
		봉숭아나무	H=4.0m,R=0.2m	1	주								
		매실나무	H=4.0m,R=0.15m	1	주								
		감나무	H=2.0m,R=0.05m	1	주								
		앵두나무	H=3.0m,R=0.15m	1	주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 유 자		관 계 인			도면 번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장 미	H=2.0m,R=0.1m	1	주								
		석류나무	H=2.0m,R=0.1m	1	주								
		단풍나무	H=3.0m,R=0.15m	1	주								
33	보성리 484-8	돌 담	H=0.7m,L=70.0m	1	식		신양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74					
		삼나무	H=10.0m,R=0.2m	44	주								
		사철나무	H=5.0m,R=0.2m	2	주								
		사철나무	H=2.0m,R=0.02m	3	주								
		한라봉나무	H=2.0m,R=0.05m	22	주								
34	보성리 762-3	창 고	조립식판넬/부속건물	15.4	m <sup>2</sup>		강영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686					
		담 장	H=1.6m,L=38.0m	1	식								
		대 문	철 재 H=1.6m,L=3.2m	1	식								
		소나무	H=8.0m,R=0.3m	1	주								
		사대기나무	H=6.0m,R=0.1m	27	주								
		사철나무	H=3.0m,R=0.1m	5	주								
		밀감나무	H=2.0m,R=0.15m	5	주								
35	보성리 769-2	담 장	H=1.6m,L=6.0m	1	식		오문필	제주시 도남동 50-3 이도백록연립-205					
		지하수	H=95.0m	1	식								
		사대기나무	H=3.0m,R=0.1m	26	주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유자		관계인			도면 번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밀감나무	H=2.3m,R=0.2m	13	주								
		구상나무	H=1.2m,R=0.4m	2	주								
		측백나무	H=2.0m,R=0.05m	1	주								
36	보성리 772-3,4	창고	보온+차광막+합석 /합석지붕	2.0	m <sup>2</sup>		고문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794					
		대문	철재,H=1.6m,L=4.8m	1	식								
		대문	철재,H=1.6m,L=3.0m	1	식								
		돌담	H=1.5m,L=113.0m	1	식								
		굴나무	H=2.5m,R=0.1m	7	주								
37	보성리 772-5	담장	H=1.0m,L=130.0m	1	식		박애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1-3 가락현대5차아파트52-901					
		삼나무	H=8.0m,R=0.2m	65	주								
38	보성리 1138-9	담장	H=0.5m,L=61.0m	1	식		손정애	서울 광진구 광장동 554-7 현대아파트502-1101					
		삼나무	H=7.0m,R=0.2m	60	주								
		협죽도	H=4.0m,R=0.3m	2	주								
39	보성리 1138-10	돌담	H=0.5m,L=108.0m	1	식		백승범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57 산세마을705-1602					
		사철나무	H=3.0m,R=0.2m	1	주								
		무궁화	H=2.0m,R=0.1m	5	주								
40	보성리 1141-7	돌담	H=1.3m,L=101.0m	1	식		강윤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73					
		무궁화	H=2.0m,R=0.05m	10	주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유자		관계인			도면 번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벚나무	H=4.0m,R=0.2m	2	주								
41	보성리 1187-11	감평나무재배 비닐하우스	맘모스/비닐지붕	884.0	㎡		이창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1550					
42	보성리 1198-14	창고	PIPE + 보온 + 차광막 /보온지붕	55.3	㎡		현애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1656					
		마당	콘크리트	131.3	㎡								
		돌담	H=1.0m,L=90.0m	1	식								
		대문	철재 H=1.6m,L=3.0m	1	식								
		마당	콘크리트	360.0	㎡								
		삼나무	H=10.0m,R=0.2m	70	주								
		밀감나무	H=2.3m,R=0.2m	106	주								
43	보성리 1198-15	돌담	H=1.0m,L=68.0m	1	식		이종협	제주시 도남동 88-9 다세대주택302					
		밀감나무	H=2.3m,R=0.2m	128	주								
		삼나무	H=10.0m,R=0.25m	55	주								
44	보성리 1200-4	돌담	H=1.0m,L=84.0m	1	식		이종협	제주시 도남동 88-9 다세대주택302					
		삼나무	H=12.0m,R=0.25m	55	주								
		밀감나무	H=2.3m,R=0.2m	106	주								
		사철나무	H=3.0m,R=0.1m	1	주								
45	보성리 1204-8	화장실	블록/슬라브지붕	7.4	㎡		강만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16					
		창고	블록/스래트지붕	11.7	㎡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 유 자		관 계 인			도면 번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창 고	블록/스래트지붕	34.4	㎡								
		가 추	블록/스래트지붕	8.9	㎡								
		돌 담	H=1.0m,L=53.0m	1	식								
		편백나무	H=8.0m,R=0.25m	13	주								
		밀감나무	H=2.3m,R=0.25m	287	주								
		사철나무	H=2.0m,R=0.06m	1	주								
		삼나무	H=12.0m,R=0.2m	65	주								
		동백나무	H=5.0m,R=0.2m	6	주								
		아훼나무	H=6.0m,R=0.2m	1	주								
46	보성리 1204-9	돌 담	H=1.3m,L=79.0m	1	식		김동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204-4					
		밀감나무	H=2.0m,R=0.15m	20	주								
		삼나무	H=8.0m,R=0.2m	6	주								
47	보성리 1206-1	밀감나무	H=2.3m,R=0.2m	7	주		강만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16					
		삼나무	H=8.0m,R=0.25m	12	주								
48	보성리 1566-1	밀감나무	H=2.3m,R=0.2m	43	주		임영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225					
49	보성리 1568-3	담 장	H=1.4m,L=22.0m	1	식		보성리 마을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73					
		사철나무	H=6.0m,R=0.15m	14	주								
		밀감나무	H=2.3m,R=0.2m	11	주								
		삼나무	H=12.0m,R=0.25m	6	주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유자		관계인			도면 번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50	보성리 1568-8	가 추	PIPE/함석	11.0	㎡								
		가 추	PIPE/함석	1.9	㎡								
		사무실	블록/판넬지붕	15.2	㎡								
		웬스	H=1.6m,L=61.0m	1	식								
		담장	블록 H=1.6m,L=24.0m	1	식								
		게이트볼장	콘크리트	293.0	㎡								
51	보성리 1568-9	작업장	PIPE + 함석/함석지붕	65.0	㎡		보성리 마을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568-5					
		화장실	판넬/판넬지붕	16.9	㎡								
		체력단련실	판넬/판넬지붕	43.8	㎡								
		마당	아스팔트	230.0	㎡								
		돌담	H=1.3m,L=58.0m	1	식								
		오버헤드 폴리머신		1	식								
		실업머신		1	식								
		큰활차머신		1	식								
52	보성리 1570-6	창고	블록/스래트지붕	27.7	㎡		송문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243					
		돌담	H=1.4m,L=51.0m	1	식								
		사철나무	H=4.0m,R=0.15m	39	주								
		사철나무	H=2.0m,R=0.3m	8	주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 유 자		관 계 인			도면 번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느티나무	H=6.0m,R=0.25m	1	주								
		삼나무	H=8.0m,R=0.25m	27	주								
		밀감나무	H=2.0m,R=0.2m	450	주								
53	보성리 1581-1	담 장	블럭 H=1.2m,L=18.0m	1	식		강승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581					
		마 당	콘크리트	4.0	m <sup>2</sup>								
54	보성리 1587-4	창 고	블록/스래트지붕	134.2	m <sup>2</sup>		보성리 마을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568-5					
		창 고	판넬/판넬지붕	-	m <sup>2</sup>								
		대 문	H=1.3m,L=4.0m	1	식								
		돌 담	H=1.3m,L=10.0m	1	식								
		웬 스	H=2.5m,L=10.0m	1	식								
		마 당	아스팔트	57.0	m <sup>2</sup>								
		4W쇼		1	식								
		포민기		1	식								
		대형루타		1	식								
		각끝기		1	식								
		벤딩기		1	식								
		동력전기	380kW	1	식								
55	보성리 1587-3	대 문	H=1.6m,L=3.6m	1	식		임영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10-5					
		담 장	H=0.5m,L=41.0m	1	식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 유 자		관 계 인			도면 번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밀감나무	H=2.3m,R=0.2m	43	주								
		삼나무	H=5.0m,R=0.15m	4	주								
56	보성리 1591-7	소나무	H=12.0m,R=0.3m	14	식		정성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59					
		삼나무	H=10.0m,R=0.25m	11	식								
		사철나무	H=10.0m,R=0.3m	1	주								
		사철나무	H=5.0m,R=0.12m	1	주								
		밀감나무	H=2.0m,R=0.25m	44	주								
57	보성리 1595-3	창 고	블록/슬라브지붕	11.2	m <sup>2</sup>		남제주군						
58	보성리 1596-3	담 장	H=1.7m,L=45.0m	1	식		임영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10-5					
		밀감나무	H=2.5m,R=0.25m	159	주								
		사철나무	H=5.0m,R=0.1m	38	주								
		삼나무	H=4.0m,R=0.2m	18	주								
59	보성리 1597-4	담 장	H=1.5m,L=61.0m	1	식		임영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10-5					
		무궁화	H=5.0m,R=0.25m	2	주								
		사철나무	H=6.0m,R=0.1m	36	주								
60	보성리 1603-5	대 문	철 재 H=1.7m,L=3.5m	1	식		강창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39					
		돌 담	H=1.2m,L=42.0m	1	식								
		삼나무	H=5.0m,R=0.15m	35	주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 유 자		관 계 인			도면 번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사철나무	H=5.0m,R=0.8m	44	주								
		밀감나무	H=2.3m,R=0.2m	23	주								
61	보성리 1605-5	담 장	H=0.6m,L=97.0m	1	식		임치부	보성리 1207					
		삼나무	H=8.0m,R=0.15m	45	주								
		사철나무	H=2.0m,R=0.03m	5	주								
62	보성리 1687-4	주 택	콘크리트/슬라브지붕	26.6	㎡		강위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281					
		담 장	블 록 H=2.5m,L=4.0m	1	식								
63	보성리 1687-3	다용도실	콘크리트/슬라브지붕	11.2	㎡		조명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87					
		주 택	콘크리트/슬라브지붕	44.6	㎡								
		화장실	콘크리트/슬라브지붕	3.2	㎡								
		가 추	판넬/판넬지붕	20.2	㎡								
		대 문	스 텐 H=1.5m,L=1.5m	1	식								
		돌 담	H=1.5m,L=8.0m	1	식								
		마 당	콘크리트	19.0	㎡								
64	보성리 1688-1	창 고	블록/스래트지붕	17.4	㎡		황보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52					
		대 문	철 재 H=1.8m,L=2.5m	1	식								
		돌 담	H=1.6m,L=70.0m	1	식								
		삼나무	H=8.0m,R=0.2m	6	주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 유 자		관 계 인			도면 번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사철나무	H=8.0m,R=0.15m	25	주								
		밀감나무	H=2.3m,R=0.2m	118	주								
65	보성리 1693-3	대 문	철 재 H=1.8m,L=3.2m	1	식		이복순 외3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83-9					
		삼나무	H=3.0m,R=0.25m	1	주								
		밀감나무	H=2.0m,R=0.1m	4	주								
66	보성리 1694-8	그물망	H=3.0m,L=63.0m	1	식		송상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242					
		돌 담	H=1.5m,L=111.0m	1	식								
		밀감나무	H=2.0m,R=0.2m	302	주								
67	보성리 1790-5	돌 담	H=1.2m,L=92.0m	1	식		심종극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2리2720					
		삼나무	H=9.0m,R=0.2m	22	주								
		소나무	H=15.0m,R=0.5m	16	주								
		밀감나무	H=2.2m,R=0.2m	253	주								
68	보성리 1796-4,5	돌 담	H=1.5m,L=19.0m	1	식		강형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1252-10-5층					
		밀감나무	H=2.3m,R=0.2m	7	주								
		느티나무	H=12.0m,R=0.7m	1	주								
		소나무	H=12.0m,R=0.4m	1	주								
69	보성리 1797-1	창 고	블록/스래트지붕	42.0	m <sup>2</sup>		임철민 외1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5무궁화아파트102-1401					
		농사용전기	5kW	1	식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유자		관계인			도면 번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70	보성리 1798-2	창고	블록/스래트지붕	55.2	㎡		김순자 외1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728					
		대문	철재,H=1.7m,L=3.8m	1	식								
		돌담	H=1.5m,L=91.0m	1	식								
		삼나무	H=9.0m,R=0.15m	39	주								
		밀감나무	H=2.2m,R=0.2m	45	주								
71	보성리 1800-3	돌담	H=1.5m,L=64.0m	1	식		강경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14					
		한라봉나무	H=0.7m,R=0.03m	25	주								
		측백나무	H=3.0m,R=0.08m	2	주								
		삼나무	H=10.0m,R=0.15m	4	주								
72	보성리 1801-2	한라봉재배 비닐하우스	맘모스/비닐지붕	149.3	㎡		송예종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하원동 1328-1에이엔빌라비-202					
		가추	PIPE + 비닐/비닐지붕	51.8	㎡								
		창고	블록/스래트지붕	70.3	㎡								
		지하수	H=63.0m	1	식								
		저수조	블록,2.5x2.5	1	식								
		대문		1	식								
		유류탱크	철재,6000ℓ	2	식								
		돌담	H=1.5m,L=39.0m	1	식								
		농사용전기	5kW	1	식								
		한라봉나무	H=2.0m,R=0.1m	55	주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유자		관계인			도면 번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73	보성리 1804-2	담장	H=1.5m,L=108.0m	1	식		좌순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195					
		대문	철재 H=1.3m,L=3.8m	1	식								
		진입로	콘크리트	59.0	m <sup>2</sup>								
		아훼나무	H=3.0m,R=0.15m	4	주								
		주목나무	H=3.0m,R=0.15m	6	주								
		동백나무	H=1.5m,R=0.1m	1	주								
		소철나무	H=1.5m,R=0.3m	1	주								
		남천나무	H=3.0m,R=0.05m	1	주								
		영산홍	H=0.5m,R=0.01m	500	주								
		철쭉	H=0.5m,R=0.05m	20	주								
		사철나무	H=3.5m,R=0.01m	12	주								
		소나무	H=10.m,R=0.3m	15	주								
		밀감나무	H=2.0m,R=0.15m	132	주								
74	보성리 1819-6	밀감나무	H=2.0m,R=0.15m	403	주		김통립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1136					
		삼나무	H=8.0m,R=0.2m	40	주								
75	보성리 2055-9	밀감나무	H=2.3m,R=0.3m	585	주		이상훈 외1인	상모리 3844 한라빌라 나동306호					
		삼나무	H=8.0m,R=0.2m	62	주								
		돌담	H=1.3m,L=82.0m	1	식								
76	보성리 2057-5	돌담	H=1.0m,L=92.0m	1	식		고정일	제주시 연동 294-81 경동빌라202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 유 자		관 계 인			도면 번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그물망	H=3.0m,L=55.0m	1	식								
		삼나무	H=4.0m,R=0.12m	100	주								
		소나무	H=2.0m,R=0.05m	6	주								
		밀감나무	H=2.0m,R=0.15m	440	주								
		사철나무	H=1.8m,R=0.03m	17	주								
77	보성리 2060-3	밀감나무	H=2.0m,R=0.15m	25	주	고정일	제주특별시 서귀포시 상모리3810						
78	안성리 1811-2	창고	하우스	59.4	㎡	이영관	제주시 일도이동 1029-23 태영빌라301	강정유					
		담 장	H=1.0m,L=56.0m	1	식								
		삼나무	H=8.0m,R=0.2m	81	주								
		사철나무	H=4.0m,R=0.2m	3	주								
		감나무	H=3.0m,R=0.05m	1	주								
		호두나무	H=8.0m,R=0.2m	3	주								
		밀감나무	H=2.0m,R=0.2m	55	주								
79	안성리 1959-3	냉동창고	블록/슬라브지붕	113.6	㎡	김경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235						
		가 추	PIPE + 목조 /스래트지붕	59.7	㎡								
		대 문	철재,H=1.6m,L=3.0m	1	식								
		담 장	H=1.0m,L=143.0m	1	식								
		밀감나무	H=2.3m,R=0.15m	320	주								
		삼나무	H=7.0m,R=0.2m	13	주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 유 자		관 계 인			도면 번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80	안성리 1962-4	담 장	H=1.0m,L=82.0m	1	식		강만부	보성리 1616					
		밀감나무	H=2.3m,R=0.12m	198	주								
		삼나무	H=8.0m,R=0.25m	107	주								
81	안성리 1963-2	창 고	블록/스래트지붕	6.4	m <sup>2</sup>		송창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36					
		창 고	블록/스래트지붕	68.8	m <sup>2</sup>								
		지하수	H=100.0m	1	식								
		저수조	블 록 H=1.5m,L=10.0m	1	식								
		대 문	철재,H=1.7m,L=3.8m	1	식								
		담 장	H=1.2m,L=82.0m	1	식								
		삼나무	H=10.0m,R=0.25m	52	주								
		밀감나무	H=2.3m,R=0.25m	120	주								
		사철나무	H=4.0m,R=0.2m	2	주								
82	안성리 1967-8	대 문	철 재 H=1.6m,L=3.6m	1	식		강윤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673					
		돌 담	H=0.6m,L=88.0m	1	식								
		삼나무	H=10.0m,R=0.2m	83	주								
		사철나무	H=2.0m,R=0.05m	1	주								
		사철나무	H=3.5m,R=0.1m	4	주								
		사대기나무	H=8.0m,R=0.25m	2	주								
		밀감나무	H=2.3m,R=0.2m	70	주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율	소 유 자		관 계 인			도면 번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사대기나무	H=2.0m,R=0.05m	2	주								
		편백나무	H=4.0m,R=0.1m	3	주								
83	안성리 1967-2	돌 담	H=1.6m,L=102.0m	1	식		오문필	제주시 도남동 50-3 이도백록연립-205					
		사대기나무	H=2.0m,R=0.1m	9	주								
		밀감나무	H=2.3m,R=0.2m	15	주								
84	안성리 1968-2	돌 담	H=2.0m,L=47.0m	1	식		강윤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1721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33호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2019년도  
이행실적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9조에  
따라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2019  
년도 이행실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28.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목표

- 고령사회 진입, 장애인구 증가, 국제화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 증가 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구축

2. 비전 : 3無(FREE), 3心(SAFETY), 3通(OPEN) 제주

- 누구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 및 이용이 가능한  
자립제주
-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안한 안심 제주
-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열린제주

3. 2019년 이행실적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체계 구축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조례 개정('19. 06. 12.)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대상 근거 마련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정비('19. 10.)
  -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19. 01.)
-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 탐동광장 화장실개선, 읍면지역 보건진료소 5개소
  -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구역 시범사업
    - 탐동 해변공연장, 화북동 제1,2 어린이공원  
(동화초 인근)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경관, 건축계획 심의 시  
유니버설 디자인 자발적 참여 유도
  - 일주도로 등 밝은 도로 조성사업 (가로등 446주)
  -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64개소) 및 놀이시설  
정비(2개소) 등
  -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 관광지 6개소,  
숙박업소 1개소, 이동수단관련

(관광약자 우선예약 및 배차시스템 구축, 리프트  
차량 지원 등), 관광서비스 교육 진행 및 관련  
내용 홍보 등

- 유니버설디자인과 일치된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  
교통시설 개선 지침 마련
- 교통약자를 위한 도내 버스 승차대 시설개선 100개소
-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CPTED)사업 : 6개 지구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 설치사업
  - 음향신호기(50대), 잔여시간 표시기(144대),  
경보등 10개소 등 설치
-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각종 보호구역 개선사업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5개소,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
-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 관광환경 이동, 접근 실태 모니터링(관광지 60건,  
도내 숙박업소 112건)
  - 관광콜센터 운영(270건) 및 콜센터 연계 여행  
코스 개발(4건)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위촉)
- 유니버설디자인 민간 확산 및 인식 개선 추진
  - 신문사 기획보도(1회) 및 기고 게재 (2회)
  - '유디' 퀴즈 이벤트 실시 (5회, 100명 이상)
    - 도 소속 직원 대상으로 '유디' 알리기 이벤트를 실시
  - 도 공식 영상 채널 활용한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
    - 유니버설디자인 주제로 '정책시그널' 제작 :  
10.30. 유튜브 게시
  - 유니버설디자인 캠페인 홍보 영상 제작 및 방송  
(MBC) 홍보 영상(30초) 10월2일부터 2개월간  
1일 3회 이상 송출  
(JIBS) '클릭 나우 제주' 매거진 프로그램 제작  
(12분, 2회, 11월) UD를 알리는 TV캠페인 방송  
(1분 내외)
  - 유니버설디자인 역량 강화 교육
    - 「제주건축문화축제」 참석자 대상 'UD 및  
BF 인증제의 이해' 교육 실시
    - '19.10.31.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건축  
관련 종사자 및 학생 등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34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설물 명칭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소재지	관리주체			
제1가시교	지방도1136호선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804)	제주특별 자치도	제3종시설물 편입	특이사항 없음	지정
명중내2교	지방도1136호선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706)	제주특별 자치도	제3종시설물 편입	특이사항 없음	지정
중남2교	지방도1136호선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616)	제주특별 자치도	제3종시설물 편입	특이사항 없음	지정
서중제2교	지방도1118호선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2006)	제주특별 자치도	제3종시설물 편입	특이사항 없음	지정
교래교	지방도1112호선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818)	제주특별 자치도	철 거 (재가설)	특이사항 없음	해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27)에 문의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http://www.jeju.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67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3. 4.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업체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40152호)	주식회사 골든디케이	김성남	제주시 우령4길 40 (외도일동)	2020.2.27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6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61(2018. 3. 21.)호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에 의거 교통시설인 도시계획도로(소로1-1), 제주안전체험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의 종류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제주안전체험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위치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187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및 시설규모
  - 사업 부지 면적 : 6,036㎡
  - 사업규모 : L=554.4m, B=10m
4. 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 사업시행기간 : 2019. 1. 24. ~ 2020. 2. 10.

6. 편입토지조서

구분	No.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도 로	1	어음리	산145-3	목	520	520	제주특별자치도	
	2	어음리	산146-1	임	973	636	제주특별자치도	
	3	어음리	산149-1	임	1,154	635	제주특별자치도	
	4	어음리	산150-1	목	1,942	1,031	제주특별자치도	
	5	어음리	산187	도	209,887	3,214	국(국토교통부)	
	소계		5필지			214,476	6,036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720호

**2020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계획 추가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신청자격

- 집수시설(지붕)면적이 300㎡이상인 시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집수시설(건축물, 비닐하우스 등)이 완비된 경우(하우스 골조 완료된 경우 포함)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대상 〉**

- 설치 예정지가 개발계획(도로개설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2년간 타사업(FTA기금 등)으로 빗물이용시설을 보조 받은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원, 출자·출연기관 재직자(배우자 포함)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지원규모(천원)			사업추진 기간
		계	보조(50%)	자부담(50%)	
빗물이용시설 설치	150톤이상	39,533	19,766	19,766	2020. 5. ~ 11.
	100톤이상	30,626	15,313	15,313	
	50톤이상	20,142	10,071	10,071	

※ 위 금액은 `20년 예상금액(터파기 토공사금액제외)으로, 기준단가 변동 시 공사금액(보조금액, 자부담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범위 : 예산범위(613백만원) 내
- 사업량 : 빗물이용시설 개소 40개소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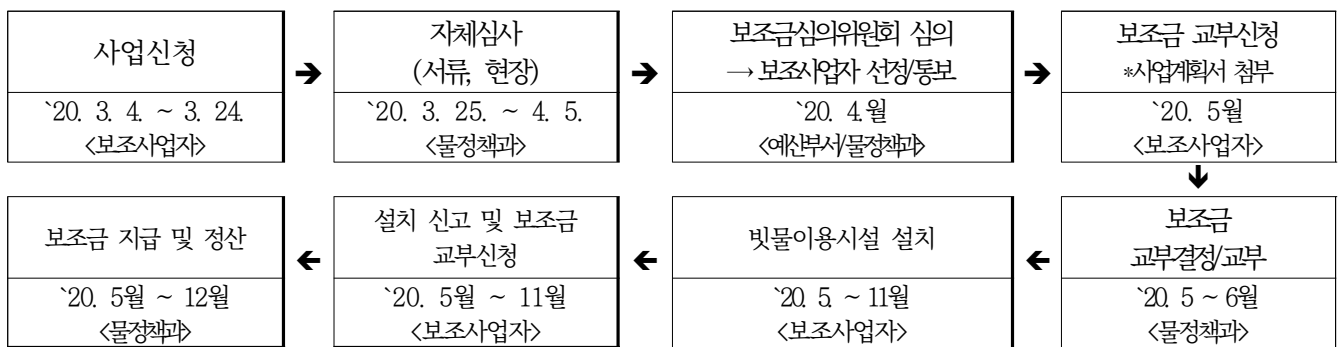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3. 4.(수) ~ 3. 24.(금), 09시~18시(토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접수 마감일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제출가능)  
(제주시 문연로 30 제주도청 2청사 본관 3층, ☎ 064-710-6344)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설치 예정지 표시 지적도(위치도) 1부,  
설치 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승낙(동의)서 1부, 집수시설 면적확인용 자료  
(도면 등) 1부, 청렴이행 서약서, 지하수 원상복구 신청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증빙서류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선정기준 : 붙임1
  -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선정
- 결과통보 : 개별통보

5. 추진절차



6. 기타 유의 사항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통보를 받은 후 제주도가 실시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관련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민간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해야 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고, 교부결정 후에 시공사와 계약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기간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빗물이용시설은 제주도가 제시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5개월 이내에 설치 완료해야 합니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 후 1개월 이내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설치완료 결과를 받은 뒤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유자격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빗물여과시설은 콘크리트로 하며 집중호우 시 빗물로 인하여 밀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빗물이용시설 상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시 관련법에 저촉될 경우 담당부서(행정시 건축과, 읍·면 건설담당 등)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후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시 개발행위 담당자에게 행위제한에 관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과 설치내용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 교부가 취소 또는 축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받은 뒤에 자부담금과 보조금액을 시공사에 입금해야 하며, 보조사업자 임의로 공사기간 중에 자부담금을 시공사에 입금할 수 없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15일 이내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한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설계도서는 “예시” 자료로서 부지 형태에 따라 알맞게 시공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 빗물 이용 시설 슬래브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구조물 보강 설계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 ①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 ② 보조사업의 완공 가능성이 없을 때
  - ③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할 때
  - ④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 위 교부조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금 관련 법령의 규정에 준합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후 단계별 구비서류〉

1. 보조금 교부 신청('20. 5월 보조금 교부 신청 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통장 잔고 정리 후 보조사업자 명의로 된 자부담금 입금내역 포함)
  2. 공사 계약(보조금 교부 결정 후)
    - 일반도급표준계약서(일반조건포함), 계약내역서, 설계도면,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격업체),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업체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공사 착공시
    -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신고서, 재직증명서, 공사공정예정표, 건설기술자경력 증명서
  4.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시설 준공 후 1달 이내)
    -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준공신고서, 준공내역서(준공도면포함), 준공검사원
    - 빗물이용시설 설치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 그 밖에 시설공사 진행단계(공정)별 사진대장 등 필요한 사항
  5. 보조금 지급 신청 시(시설 준공 및 설치완료 통지후 1달 이내)
    - 보조금지급신청서,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건강 및 연금완납증명서, 고용산재완납증명서, 하자보증지급각서(3천만 원 이상 하자보증서)
    -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6. 보조금 지급 신청 시
    - 보조금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시공사 공사비 계좌이체 후 통장사본
- ※ 기타 문의사항 : 물정책과(☎ 064-710-6344)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743호

2020년 지방경제혁신 아카데미 운영 지방보조사업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2020년 지방경제혁신 아카데미 운영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개요

사 업 명	지원규모(천원)	사업기간	접수·문의처
지방경제혁신 아카데미 운영	9,000(보조율 70%)	'20. 5월~12월	경제정책과 ☎ 710-2512

○ 주요내용

- 지역생산품 특화 및 브랜드 확대, 지역경제의 경쟁력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카데미 운영
- 초청강연, 중소규모 세미나, 현장답사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도민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비영리법인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3. 3.(화) ~ 2020. 3. 23.(월)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행정시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2020. 3. 23.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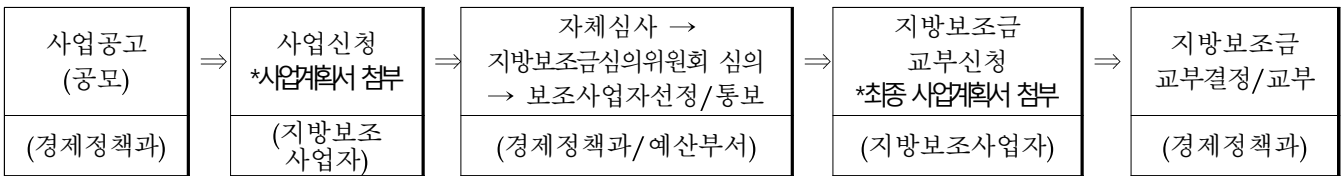
- 가) 지방보조금신청서 1부
- 나) 사업계획서 1부(지원사업 요약서 첨부)
- 다) 단체(법인) 소개서 1부

- 신청서식 : 붙임 1~3 참조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5. 추진 절차



5-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의무화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5-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개시 등 수행상황을 지체없이 보고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5-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5-4)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71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744호

2020년 메이드인 제주 융복합 페스티벌 지방보조사업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2020년 메이드인 제주 융복합 페스티벌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개요

사업명	지원규모(천원)	사업기간	접수·문의처
메이드인 제주 융복합 페스티벌	113,400(정액)	'20. 5월~12월	경제정책과 ☎ 710-2512

○ 주요내용

- 제주제품 품질인증(JQ) 및 제주화장품 인증(JCC)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언론 홍보(연중)
- JQ와 JCC 제품생산 회사 심층기획 취재 및 홍보를 통한 제품 신뢰성 제고(연중)
- JQ와 JCC 제품 홍보 페스티벌 개최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등록 신문사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3. 3.(화) ~ 2020. 3. 23.(월)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행정시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2020. 3. 23.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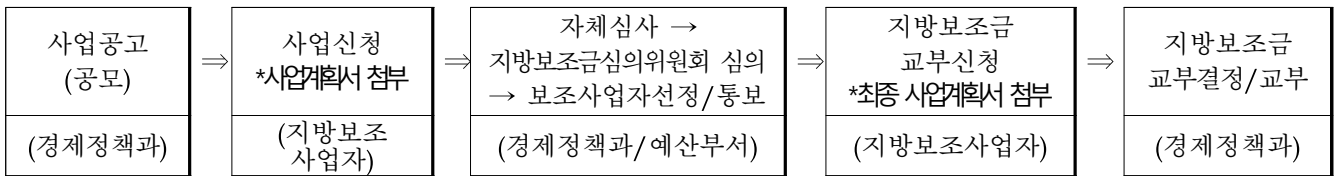
- 가) 지방보조금신청서 1부
- 나) 사업계획서 1부(지원사업 요약서 첨부)
- 다) 단체(법인) 소개서 1부

- 신청서식 : 붙임 1~3 참조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5. 추진 절차



5-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의무화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5-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개시 등 수행상황을 지체없이 보고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5-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5-4)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71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알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 2. 25.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경등록 년월일	주된사업
6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6(일도이동)	김양욱	'20. 2. 25.	○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 관련단체와의 협력사업
					○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 시장경제 가치창달
					○ 통일기반 확충사업
					○ 국제 간 유대강화 및 협력사업
					○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조달사업
					○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 당 초 : 한 주 용			
		- 변 경 : 김 양 욱			
120	분다클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80 현원아트빌 304호	조건형	'20. 2. 25.	○ 불교발전을 위한 사업
					○ 전통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계도, 봉사사업
					○ 회원 친목 사업
					○ 기타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 변경내용			
		* 소재지 변경			
		- 당 초 : 제주시 도남로 15길 4-9, 한아맨션 지층			
		- 변 경 : 제주시 동광로 80 현원아트빌 30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알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 3.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성명	변경등록년월일	주된사업
46	사단법인 제주민예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4층	이종형	'20.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적인 제주지역 문화예술의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li> <li>○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li> <li>○ 제주 4·3의 역사정신을 계승하고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한 예술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사업</li> <li>○ 지역문화정책 제안 및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한 사업</li> <li>○ 대중의 주체적 문화 활동 지원, 육성하는 사업</li> <li>○ 본 회의 목적에 맞는 국내외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li> <li>○ 예술인의 권익을 옹호하며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li> <li>○ 문화예술 관련 자료 발간과 보급을 위한 사업</li> <li>○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li> </ul>
<p>◇ 변경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초 : 강 정 호</li> <li>- 변 경 : 이 종 형</li> </ul> </li> </ul>					

제주시 고시 제2020-75호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2. 28.

제 주 시 장

□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시 행 자	법 인 명	(주)에코**
	대 표 자	정 석 *
	등록번호	220111-*****
	주 소	제주시 고마로 **
시 행 목 적	해당 토지 일원 건축물 신축에 따른 발생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097-1번지 일원	
공공하수도 규모	· 오수관(PVC이중벽관 D250mm): L=22m · 오수맨홀(D900mm): 2개소	
공 사 기 간	2020. 02. ~ 2020. 0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TEL 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치 도





제주시 고시 제2020-77호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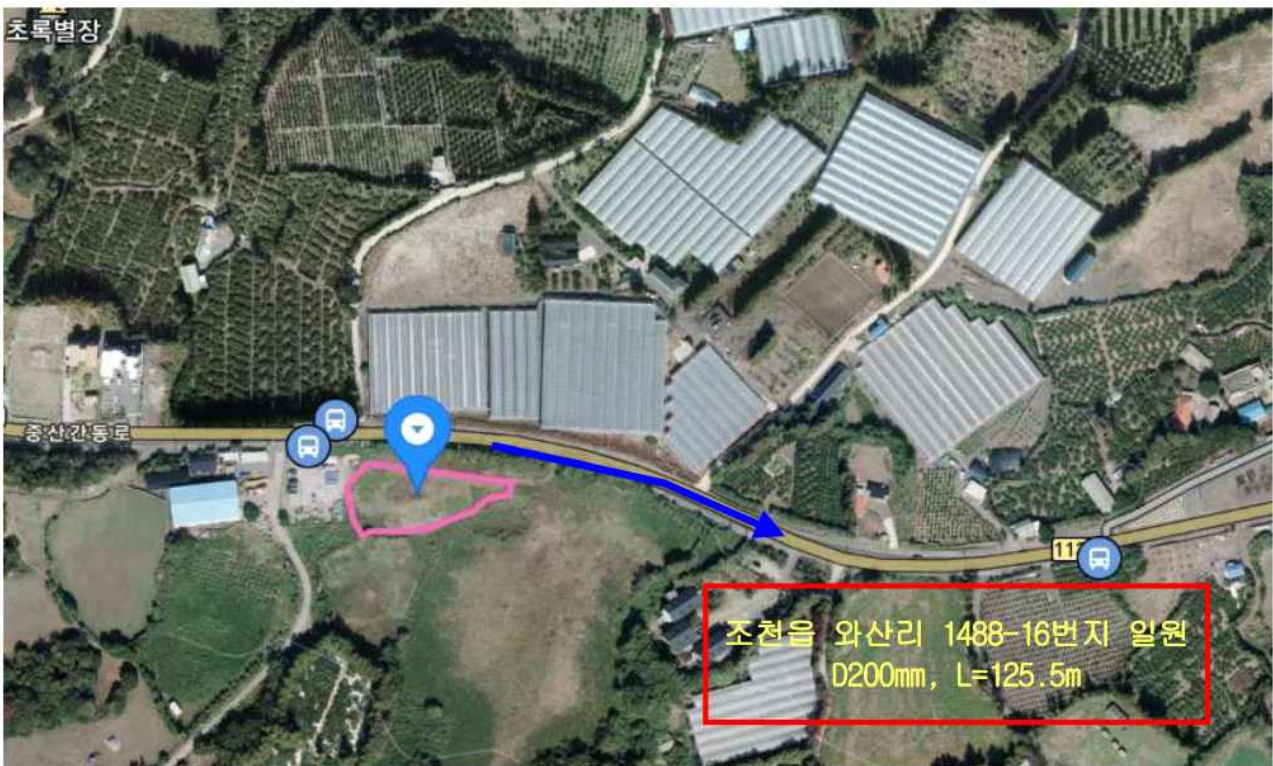
제 주 시 장

□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시 행 자	법 인 명	농협**
	대 표 자	김 원 *
	등록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
시 행 목 적	해당 토지 일원 건축물 신축에 따른 발생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488-16번지 일원	
공공하수도 규모	· 오수관(PVC이중벽관 D200mm): L=125.5m · 오수맨홀(D900mm): 5개소	
공 사 기 간	2020. 03. ~ 2022. 0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TEL 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치 도



제주시 고시 제2020-79호

지구단위계획구역(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도시계획시설(중로1-42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기반시설(도로)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중로1-42호선)가감속차로 설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3. 4.

제 주 시 장

다 음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제주시 월평동 71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과 사업의 규모 등

등급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1	42	20	보조간 선도로	1,162	중2-56	중2-56	일반 도로	-	2005.06.13	

※ 교통영향평가 협의조건(공동주택 부지 가감속차로 설치) 반영에 따른 도로 면적 증가(769.7㎡) - 제주시 고시 제2018-81호(2018.3.14.)

※ 공사 구간 (L: 284.3m , A: 1,825.7㎡)

다. 사업기간

: 2020. 3. 4. ~ 2021. 2. 2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시 첨단로213-4 엘리트빌딩 2층

마.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유권
합계				109,074.7	1,825.7	
1	제주시 월평동	757-5	도	1,009.0	69.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		757-6	도	230.0	49.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1379	도	27,794.0	4.0	국(건설부)
4		718-1	잡	2,407.7	16.0	제주특별자치도
5		717-3	학	15,064.0	287.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		717	학	33,728.7	466.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		750	도	28,841.3	93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고 제2020-764호

**건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처분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대상 :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업종	처분사유	처분내용
철주 (양기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10길 29-5	난방시공업 제2종	건설업체의 폐업사실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등록말소

2. 공고기간 : 2020. 02. 26. ~ 2020.03.12(15일간)

3. 공고장소 : 제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가.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의 제기는 제주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며,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청구 또는 제기하지 못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청 건설과(064-728-3703)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0. 2. 26.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767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출천지류)**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2월 27일

제 주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제주시청		
	대표자 (성명)	제주시장(도시계획과장)	주소	제주시 광양9길 10
소하천명		흘천지류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제주시 연동 2478-12번지, 2481번지(연동 1390-4번지 인근)		
	면적	344㎡(연동 2478-12번지) 3㎡(연동 2481번지)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02. 27. ~ 시설물 준치시까지		
	목적 및 사유	부림랜드~1100도로(중로 1-1-4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하천 정비(교량, 호안 등)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제주시 공고 제2020-769호

**보험미가입 일반여행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에 행정처분 통지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2. 대상업체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반여행업	2017-4	(주)인성국제여행사	장동신 (JIANG DONGXIN)	제주시 신대로 12길 51, 605호(연동, 로얄쇼핑오피스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가. 공고기간 : 2020. 02. 26. ~ 03. 13.(17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7.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26.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776호

**보험미가입 일반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 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의견제출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사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반여행업	2016-23	(주)태산글로벌	강태훈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162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5.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가. 공고기간 : 2020. 2. 26. ~ 2020. 3. 13.(17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0. 3. 13.

다.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2. 26.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791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6조(등록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 분 명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시정 기한	반송사유
700	제주해피데이여행사	박○숙	제주시 원노형3길 29, 1층 (노형동)	2020. 3. 11	수취인부재 등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6조 위반(등록기준 부적합)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1)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5. 공고 기간 : 2020. 2. 27. ~ 2020. 3. 11. (14일간)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2. 27.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809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일반여행업)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4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일반여행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처분사전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 분 명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일반여행업	166	(주)레드스카프국제여행사	문용만 (WEN LONGWAN)	제주시 노연로 42, 3층 비-303호(노형동, 정한오피스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4조제2항 위반 (무단휴폐업)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4차
바.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등록취소	-	-

5. 공고기간

가. 2020. 02. 28. ~ 2020. 03. 16.(18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28.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810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일반여행업)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6조(등록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일반여행업)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 분 명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일반여행업	2016-2	명국여행사 주식회사	이재호 (LI ZAIHAO)	제주시 노연로 54, 2층, 3호(노형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6조 위반(등록기준 부적합)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1)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5. 공고 기간

가. 2020. 2. 28. ~ 2020. 3. 16. (18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2. 28.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811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제1항(보험의 가입 등)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 2개월)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의견제출기한	반송사유
2014-54	신상투어	김○우	제주시 어영길 26 (용담삼동)	2020. 3. 13.	폐문부재 등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 위반(보험미가입)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5.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처

가. 공고 기간 : 2020. 2. 28. ~ 2020. 3. 13. (15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2. 28.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812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6조(등록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5일)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견제출기한	반송사유
2017-55	주식회사 제이와이컴퍼니	박○엽	제주시 도령로 54, 423호 (노형동)	2020. 3. 13.	폐문부재 등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6조 위반(등록기준 부적합)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1)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5.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처

가. 공고 기간 : 2020. 2. 28. ~ 2020. 3. 13. (15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2. 28.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813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6조(등록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5일)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견제출기한	반송사유
2018-35	블루오션	김○한	제주시 서광로 229, 2층 (삼도일동)	2020. 3. 13.	폐문부재 등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6조 위반(등록기준 부적합)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1)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5.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처
  - 가. 공고 기간 : 2020. 2. 28. ~ 2020. 3. 13. (15일간)
  -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2. 28.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814호

**보험미가입 일반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의견제출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사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반여행업	2017-3	한동여행(주)	장동길 (ZHANG DONGJI)	제주시 도령로 37, 1801호 (노형동, 에코하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아.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5.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가. 공고기간 : 2020. 2. 28. ~ 2020. 3. 16.(18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0. 3. 16.

다.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2. 28.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815호

**보험미가입 일반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의견제출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명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2. 대상업체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반여행업	2016-2	명국여행사 주식회사	이재호 (LI ZAIHAO)	제주시 노연로 54, 2층, 3호(노형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

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아.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6. 공고기간

가. 공고기간 : 2020. 2. 28. ~ 3. 16.(18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7.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2. 28.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838호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 제주시에서 추진 중인 중인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 열람 공고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의견 청취 공고하오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4.

제 주 시 장

다 음

1.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모, 시행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명	사업의 규모	시행위치
도시계획시설	제1-5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공원조성 2,994㎡	도련일동 1792-4 일원
도시계획시설	제1-55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공원조성 2,020㎡	도련일동 1836-4 일원
도시계획시설	제1-57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공원조성 2,352㎡	도련일동 2224-10 일원
도시계획시설	제1-58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공원조성 2,674㎡	도련일동 2277-5 일원
도시계획시설	제1-59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공원조성 2,600㎡	도련일동 1615-3 일원
도시계획시설	제1-60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공원조성 2,142㎡	봉개동 2448-11 일원
도시계획시설	제1-6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공원조성 1,632㎡	봉개동 2609-11 일원
도시계획시설	제1-6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공원조성 2,310㎡	봉개동 1920-8 일원
도시계획시설	제1-63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공원조성 1,891㎡	봉개동 1552-10 일원
도시계획시설	제1-6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공원조성 2,270㎡	봉개동 1378-8 일원

2) 사업기간: 실시계획 작성일로부터 ~ 2025. 12. 3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제주시장,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제주시청)

4) 토지 및 지장물 내용: “별첨” 참조

2. 열람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2020. 3. 4. ~ 2020. 3. 18.(15일간)

2) 열람장소: 제주시청 2별관 3층 도시계획과

3) 의견제출: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열람기간 내 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도시계획과(☎728-3023, 3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5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합 계				2,994	2,994						
1	도련 일동	1792-4	임	34	34	문영숙	제주시 대원길 13, 103동 402호	농협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2	도련 일동	1792-5	전	222	222	문영숙	제주시 대원길 13, 103동 402호	농협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3	도련 일동	1793-1	전	21	21	홍길자	제주시 이도이동 1048-2 진성빌라 102				
4	도련 일동	1794-1	전	555	555	고복희	제주시 수덕로 78 노형동 이편한세상 105동 503호				
5	도련 일동	1795-5	전	670	670	제주특별자치도					
6	도련 일동	1795-7	전	930	930	김용철	제주시 이도이동 1061 태성리치빌 1102	농협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7	도련 일동	1795-9	임	186	186	김용철	제주시 이도이동 1061 태성리치빌 1102	농협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8	도련 일동	1797	임	139	139	여산수씨지신공파 제주도문중회용강종중	제주시 삼도이동 1167-12				
9	도련 일동	1808-4	전	237	237	김덕훈	제주시 매촌2길 22-6	제주시농업 협동조합	제주시 삼도이동 20-8	근저당권	

○ 제1-5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지장물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도련일동	1632	분묘	유연단장	1기	양병화	도련일동 1647				
	"	"	겹담	자연석	1식	"	"				
	"	"	비석		1개	"	"				
	"	"	상석 大		1개	"	"				
	"	"	망주석		2개	"	"				
	"	"	동자석		2개	"	"				
	"	"	향로석		5개	"	"				
	"	"	산제석		1개	"	"				
	"	"	제절석		6M	"	"				
2	"	1633-7	창고	컨테이너	1식	채방실	화북일동 1968-1				
						양연심	우도면 서광리 2201				
						고경란	우도면 서광리 2203				
						강혜선	우도면 오봉리 1242				
						고희순	우도면 오봉리 980-1				
3	"	2277-5	창고	목조합석	16㎡	김재희	제주시 용담이동 606-70 101호				
						김재호	제주시 연동 293-84				
	"	"	물탱크	FRP	1식	"	"				
	"	"	양수기 모터		1식	"	"				
	"	"	동백나무	15년생	6주	"	"				

○ 제1-55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명	관계자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합 계				61,815	2,020						
1	도련일동	1769-1	과	301	301	고경희	제주시 삼봉로 12-4(삼양이동)				
2	도련일동	1769-17	과	11	11	고희성	제주시 일도이동 60-13				미등기
3	도련일동	1769-18	과	351	351	고희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8길 20(송파동)				미등기
4	도련일동	1769-2	도	315	235	강만희	1684				
5	도련일동	1769-20	과	51	51	고경희	제주시 삼봉로 12-4(삼양이동)				미등기
6	도련일동	1770	과	96	58	신유길	제주시 이도이동 1031-20				
7	도련일동	1771-1	묘	15	15	김완근	화북리				미등기
8	도련일동	1829-2	도	64	53	고상룡	1705				
9	도련일동	1829-6	전	169	169	김영석	연동 267-4 다세대주택 201호				미등기
						김진희	연동 1399-1 대림2차아파트 201-802				
10	도련일동	1836-1	도	76	58	양군방	1719				
11	도련일동	1836-4	전	448	448	김영석	연동 267-4 다세대주택 201호				미등기
						김진희	연동 1399-1 대림2차아파트 201-802				
12	도련일동	2868	도	59,918	270	국(건설부)					

○ 제1-55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지장물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도련일동	1769-1	감귤나무	30년생	40주	고경희	제주시 삼봉로 12-4(삼양이동)				
	"	"	종려나무	15년생	4주	"	"				
	"	"	후피향나무	15년생	8주	"	"				
	"	"	구름비나무	15년생	7주	"	"				
	"	"	구름비나무	10년생	5주	"	"				
	"	"	무궁화나무	10년생	2주	"	"				
	"	"	삼나무	20년생	7주	"	"				
	"	"	삼나무	10년생	3주	"	"				
	"	"	참식나무	30년생	4주	"	"				
	"	"	참식나무	15년생	4주	"	"				
	"	"	측백나무	30년생	1주	"	"				
	"	"	사철나무	10년생	2주	"	"				
	"	"	담팔수	30년생	1주	"	"				
	"	"	동백나무	15년생	8주	"	"				
	"	"	아왜나무	15년생	3주	"	"				
	"	"	후박나무	20년생	1주	"	"				
	"	"	무궁화나무	20년생	1주	"	"				
2	도련일동	1769-12	바닥포장	콘크리트	1식	고경희	제주시 삼봉로 12-4(삼양이동)				
3	"	1769-17	창고	블럭판넬	1식	고희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8길20(송파동)				
4	"	1769-18	가설주 및 배설함	단상2선식	1식	고희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8길20(송파동)				
	"	"	수도		1식	"	"				
	"	"	감귤나무	30년생	46주	"	"				
	"	"	후피향나무	15년생	3주	"	"				
	"	"	돈나무	10년생	2주	"	"				
	"	"	구름비나무	30년생	1주	"	"				
	"	"	구름비나무	15년생	11주	"	"				
	"	"	구름비나무	5년생	9주	"	"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	"	먼나무	25년생	1주	"	"				
	"	"	나한송	15년생	3주	"	"				
	"	"	담팔수	30년생	1주	"	"				
5	"	1770	감귤나무	30년생	12주	신유길	제주시 이도이동 1031-20				
6	도련일동	1829-6	무궁화나무	30년생	1주	김영석 외 1인	연동 267-4 다세대주택 201호				
	"	"	참식나무	30년생	12주	"	"				
7	"	1836-4	종려나무	20년생	10주	김영석 외 1인	연동 267-4 다세대주택 201호				
	"	"	구름비나무	15년생	5주	"	"				
	"	"	구름비나무	20년생	1주	"	"				
	"	"	광나무	20년생	1주	"	"				
	"	"	참식나무	15년생	2주	"	"				

○ 제1-57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명	관계자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 적	편 입						
합 계				2,375	2,352						
1	도련 일동	2224-10	과	2,137	2,137	김재근	제주시 도련남길 94(도련일동)				미등기
2	도련 일동	2234-12	과	41	41	현치수	제주시 정존11길 4, 101호 (노형동, 영보3차아파트)				미등기
						강춘자	제주시 정존11길 4, 101호 (노형동, 영보3차아파트)				
						농협회사법인 우리감귤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조로 309				
3	도련 일동	2758-3	전	21	4	김민서	제주시 고마로14길 4 (일도이동)				
4	도련 일동	2758-7	과	176	170	손보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남로 7-13, 106동104호(도남동, 도남1차이편한세상)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제주중앙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 제1-57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지장물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도련일동	2224-10	감귤나무	30년생	270주	김재근	제주시 도련남길 94(도련일동)				
	"	"	삼나무	30년생	18주	"	"				

○ 제1-58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	관계자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합 계				2,674	2,674						
1	도련일동	1629-1	임	216	216	양성원	서울 노원구 종계동 359-1 주공아파트 501-503				
2	도련일동	1629-13	과	66	66	제주특별자치도					
3	도련일동	1632	묘	175	175	양병화	도련일동 1647				미등기
4	도련일동	1633-7	과	764	764	채방실	화북일동 1968-1				미등기
						양연심	우도면 서광리 2201				
						고경란	우도면 서광리 2203				
						강혜선	우도면 오봉리 1242				
						고희순	우도면 오봉리 980-1				
5	도련일동	1640-4	도	17	17	제주특별자치도					
6	도련일동	2274-4	과	25	25	김재희	제주시 용담이동 606-70 101호				
						김재호	제주시 연동 293-84				
7	도련일동	2277-5	과	1,411	1,411	김재희	제주시 용담이동 606-70 101호				미등기
						김재호	제주시 연동 293-84				

○ 제1-58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지장물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도련일동	1632	분묘	유연단장	1기	양병화	도련일동 1647				
	"	"	접담	자연석	1식	"	"				
	"	"	비석		1개	"	"				
	"	"	상석 大		1개	"	"				
	"	"	망주석		2개	"	"				
	"	"	동자석		2개	"	"				
	"	"	향로석		5개	"	"				
	"	"	산제석		1개	"	"				
	"	"	제절석		6M	"	"				
2	"	1633-7	창고	컨테이너	1식	채방실	화북일동 1968-1				
						양연심	우도면 서광리 2201				
						고경란	우도면 서광리 2203				
						강혜선	우도면 오봉리 1242				
						고희순	우도면 오봉리 980-1				
3	"	2277-5	창고	목조합석	16㎡	김재희	제주시 용담이동 606-70 101호				
						김재호	제주시 연동 293-84				
	"	"	물탱크	FRP	1식	"	"				
	"	"	양수기 모터		1식	"	"				
	"	"	동백나무	15년생	6주	"	"				

○ 제1-59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	관계자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합 계				66,191	2,600						
1	도련일동	1520-1	대	383	20	고평호	2263				
2	도련일동	1520-5	과	2,407	45	고평호	제주시 도련남길 14-3 (도련일동)				
3	도련일동	1520-6	과	241	101	고평호	2263				
4	도련일동	1584-3	과	323	323	양장호	제주시 신선로 55, 107동 703호 (이도이동, 제주이도한일베라체)				미등기
5	도련일동	1612-4	전	482	482	부기정	제주시 도련3길 23(도련일동)	주식회사 제주은행	제주시 이도일동 1349(동문지점)	근저당권	
								주식회사 제주은행	제주시 이도일동 1349	지상권	
6	도련일동	1615-2	대	124	124	유선호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09 벽산아파트 105-206				미등기
7	도련일동	1615-3	과	1,224	1,224	유선호	강원도 원주시 백단길80 105동 206호(단계동, 벽산아파트)				미등기
8	도련일동	1616-4	과	1,089	94	강정희	제주시 삼도이동 1072				
9	도련일동	2868	도	59,918	187	국(건설부)					



○ 제1-59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지장물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도련일동	1612-4	창고	경량철골판넬	1식	부기정	제주시 도련3길 23(도련일동)				
	"	"	바닥포장	쇄석	1식	"	"				
	"	"	무화과나무	20년생	1주	"	"				
	"	"	무화과나무	15년생	1주	"	"				
	"	"	복숭아나무	20년생	1주	"	"				
	"	"	대추나무	15년생	1주	"	"				
	"	"	선인장	15년생	1식	"	"				
2	"	1615-2	식당	블럭칼라강판	96㎡	유선호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09 벽산아파트 105-206				
	"	"	창고	경량철골판넬	6㎡	"	"				
	"	"	가설주 및 배전함	3상4선식	1식	"	"				
	"	"	가설주		2식	"	"				
	"	"	바닥포장	콘크리트	1식	"	"				
3	도련일동	1615-3	관리사	철재컨테이너	27㎡	유선호	강원도 원주시 백단길80 105동 206호(단계동, 벽산아파트)				
	"	"	화장실	판넬조판넬	1식	"	"				
	"	"	차양	경량철골판넬	1식	"	"				
	"	"	창고	목조스레트	12㎡	"	"				
	"	"	창고	목조스레트	4㎡	"	"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	"	감귤나무	23년생	173주	"	"				
	"	"	은행나무	30년생	3주	"	"				
	"	"	구름비나무	30년생	3주	"	"				
	"	"	구름비나무	20년생	5주	"	"				
	"	"	구름비나무	10년생	9주	"	"				
	"	"	선인장	15년생	15주	"	"				
	"	"	동백나무	5년생	5주	"	"				
	"	"	후박나무	30년생	6주	"	"				
3	도련일동	1615-3	후박나무	20년생	5주	유선호	강원도 원주시 백단길80 105동 206호(단계동, 벽산아파트)				
	"	"	후박나무	10년생	11주	"	"				
	"	"	무궁화나무	10년생	1주	"	"				
	"	"	두릅나무	8년생	5주	"	"				
	"	"	단풍나무	5년생	1주	"	"				
	"	"	멀구슬나무	10년생	5주	"	"				
4	"	1584-3	감귤나무	35년생	42주	양장호	제주시 신선로 55, 107동 703호 (이도이동, 제주이도한일베라체)				
	"	"	삼나무	30년생	20주	"	"				

○ 제1-60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	관계자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합계				2,142	2,142						
1	봉개동	2448-11	과	1,106	1,106	임석홍	일도이동 414-8				미등기
2	봉개동	2448-12	과	645	645	강근필	2014				미등기
3	봉개동	2448-13	과	164	164	임석홍	일도이동 414-8				미등기
4	봉개동	2482-3	과	54	54	강근필	제주시 봉개동 2472-1				
5	봉개동	2482-9	전	133	133	양기석	제주시 일도이동 1043-53				미등기
						양훈석	제주시 일도이동 1043-53				
						양재석	일본 대판시 천왕사구 왕조원조 7-14				
						양용석	제주시 일도이동 1043-53				
6	봉개동	2483	묘	40	40	강병추					미등기

○ 제1-60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지장물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봉개동	2448-11	창고	블럭스레트	10㎡	임석홍	일도이동 414-8				
	"	"	방풍망	파이프그물	1식	"	"				
	"	"	수도		1식	"	"				
	"	"	감귤나무	8년생	145주	"	"				
	"	"	감귤나무	25년생	1주	"	"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	"	삼나무	20년생	4주	"	"				
	"	"	측백나무	20년생	3주	"	"				
2	"	2448-12	감귤나무	25년생	89주	강근필	2014				
	"	"	참식나무	30년생	1주	"	"				
3	"	2448-13	참식나무	15년생	1주	임석홍	일도이동 414-8				
	"	"	구름비나무	15년생	4주	"	"				
	"	"	동백나무	15년생	5주	"	"				
	"	"	동백나무	10년생	40주	"	"				
	"	"	삼나무	25년생	14주	"	"				
	"	"	감귤나무	8년생	22주	"	"				
	"	"	대문	철재	1식	"	"				
4	"	2448-3	방풍망	파이프그물	1식	강근필	제주시 봉개동 2472-1				
	"	"	감귤나무	25년생	8주	"	"				

○ 제1-6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	관계자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합 계				217,034	1,632						
1	봉개동	2607-1	임	2,365	29	조로섬회	1948				
2	봉개동	2607-3	도	56	27	고영아	제주시 일도이동 991-34				
3	봉개동	2607-4	도	787	75	조로섬회	1948				
4	봉개동	2608	묘	136	136	정중심	오등리				미등기
5	봉개동	2609-2	도	370	28	임상호	1987				
6	봉개동	2609-4	도	102	102	김병일	제주시 일도이동 983-15				
7	봉개동	2609-6	도	89	31	이성희	제주시 봉개동 2609				
8	봉개동	2609-10	잡	185	185	봉개리마을회	1819-7				미등기
9	봉개동	2609-11	전	1,000	1,000	안경훈	제주시 복지로 80, 104동 501호				미등기
10	봉개동	2610-2	도	36	3	강재문					미등기
11	봉개동	2736	도	211,908	16	국(건설부)					

○ 제1-6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지장물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봉개동	2609-11	창고	철재컨테이너(3×6)	1식	안경훈	제주시 복지로 80, 104동 501호				
2	"	2609-10	담장	블럭조	1식	봉개리마을회	1819-7				
	"	"	건립기념비		1식	"	"				
	"	"	받침대		1식	"	"				
	"	"	조경석		1식	"	"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	"	정원의자 및 쓰레기통		1식	"	"				
	"	"	비자나무	25년생	1주	"	"				
	"	"	후박나무	30년생	2주	"	"				
	"	"	동백나무	20년생	4주	"	"				
	"	"	종려나무	25년생	1주	"	"				
	"	"	모과나무	25년생	1주	"	"				
	"	"	팽나무	40년생	1주	"	"				
	"	"	철쭉	15년생	5주	"	"				
	"	"	잔디		1식	"	"				
3	"	2608	분묘	유연단장	1식	정중심	오등리				
	"	"	계단		1식	"	"				

○ 제1-6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	관계자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합 계				2,310	2,310						
1	봉개동	1909-2	전	169	169	제주특별자치도					
2	봉개동	1918-13	대	1	1	임지종	제주시 봉개동 1918-1				미등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	관계자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3	봉개동	1920-8	전	1,605	1,605	제주특별자치도					
						김기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 212, 402호(괴정동, 승경하이츠)				
4	봉개동	1921	과	99	99	김태분	서귀포시 보목동 875 로얄하이츠빌라 나-411				
5	봉개동	1922-10	대	2	2	제주특별자치도					
6	봉개동	1922-11	대	434	434	제주특별자치도					

○ 제1-6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지장물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	1921	감귤나무	25년생	6주	김태분	서귀포시 보목동 875 로얄하이츠빌라 나-411				

○ 제1-63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	관계자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합 계				213,716	1,891						
1	봉개동	1545-5	전	246	246	고관오	제주시 신산로7길 56-1	제주 새마을금고	제주시 고마로 49	근저당권	
2	봉개동	1545-6	전	16	16	고관오	제주시 신산로7길 56-1				
3	봉개동	1550-2	전	19	19	오경중	이도이동 1768-23				미등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	관계자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4	봉개동	1551-1	묘	2	2	변항찬	도련이동 617				미등기
5	봉개동	1552-10	전	1,175	1,175	오경종	제주시 이도이동 1768-23				
6	봉개동	1554-4	대	191	191	오경종	제주시 이도이동 1768-23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7	봉개동	1555-2	전	65	65	오현봉	제주시 원노형로 102, 104동 1102호 (노형동, 한화아파트)				미등기
8	봉개동	1865-3	전	47	47	고관오	1946				미등기
9	봉개동	1866-2	전	47	47	고관오	제주시 신산로7길 56-1	제주 새마을금고	제주시 고마로 49	근저당권	
10	봉개동	2736	도	211,908	83	건설부					

○ 제1-63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지장물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봉개동	1866-2	대나무		1식	고관오	제주시 신산로7길 56-1				
	"	"	멀구슬나무	20년생	1주	"	"				
2	"	1545-5	대나무		1식	고관오	제주시 신산로7길 56-1				
	"	"	멀구슬나무	20년생	1주	"	"				
	"	"	삼나무	30년생	11주	"	"				
	"	"	후박 나무	25년생	1주	"	"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	"	대나무		1식	"	"				
	"	"	멸구슬나무	40년생	1주	"	"				
3	"	1552-10	삼나무	30년생	32주	오경종	제주시 이도이동 1768-23				
	"	"	참식나무	10년생	1주	"	"				
	"	"	구름비나무	5년생	1주	"	"				
	"	"	후박나무	15년생	5주	"	"				

○ 제1-6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	관계자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 적	편 입						
합 계				2,270	2,270						
1	봉개동	1376-1	과	122	122	홍동심	1534				미등기
2	봉개동	1377	묘	18	18	제주특별자치도					
3	봉개동	1378-8	과	1,366	1,366	강용기	1966-5				미등기
4	봉개동	1521-3	과	764	764	강용기	2429				미등기

○ 제1-6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지장물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봉개동	1376-1	감굴나무	30년생	5주	홍동심	1534				
	"	"	감나무	30년생	2주	"	"				
	"	"	후박나무	15년생	1주	"	"				
	"	"	참식나무	10년생	1주	"	"				
	"	"	구름비나무	10년생	6주	"	"				
	"	"	사철나무	10년생	1주	"	"				
2	"	1378-8	창고	블럭스레트	69㎡	강용기	1966-5				
	"	"	창고	블럭스레트	10㎡	"	"				
	"	"	수도	계량기	1식	"	"				
	"	"	대문	철재	1식	"	"				
	"	"	가설주 및 배전함	3상4선식	1식	"	"				
	"	"	감나무	30년생	1주	"	"				
	"	"	제피나무	30년생	1주	"	"				
	"	"	황칠나무	10년생	1주	"	"				
	"	"	헛개나무	30년생	3주	"	"				
	"	"	편백나무	30년생	1주	"	"				
	"	"	감나무	40년생	1주	"	"				
	"	"	감굴나무	30년생	138주	"	"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자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2	봉개동	1378-8	황칠나무	10년생	1주	강용기	1966-5				
	"	"	헛개나무	30년생	3주	"	"				
	"	"	편백나무	30년생	1주	"	"				
	"	"	감나무	40년생	1주	"	"				
	"	"	감귤나무	30년생	138주	"	"				
	"	"	동백나무	10년생	28주	"	"				
	"	"	삼나무	5년생	1주	"	"				
	"	"	참식나무	10년생	1주	"	"				
	"	"	후박나무	15년생	2주	"	"				
	"	"	삼나무	30년생	50주	"	"				
	"	"	후박나무	20년생	2주	"	"				
	"	"	매실나무	15년생	1주	"	"				
3	"	1521-3	방풍망	파이프그물 (L:15H:3)	1식	강용기	2429				
	"	"	감귤나무	30년생	93주	"	"				

제주시 공고 제2020-845호

**보험미가입 일반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의견제출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사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반여행업	357	홍양(주)	탕류이리	제주시 도령로 103, 204호 (연동, 연동한일씨티파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아.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5.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가. 공고기간 : 2020. 3. 3. ~ 2020. 3. 19.(17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0. 3. 19.

다.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3. 3.

제 주 시 장

서귀포시 고시 제2020-28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내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협의 또는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2. 4.

서 귀 포 시 장

□ 허가(협의)내역

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목 적	장 소	허가(승인)받은 자		면적 (㎡)	기 간
				성 명	주 소		
2020-1	2020.1.6.	해양쓰레기 임시집하장 시설(펜스) 설치	표선면 표선리 1-2 지선	표선면장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74	138	2020.1.6.~ 2023.1.5.
2020-2	2020.1.6.	해양레저기구 계류장(에어봉) 설치	표선면 표선리 45-8 인근 공유수면	장남수	제주시 동화로1길 39(210동 403호)	40	2020.1.6.~ 2020.12.31

□ 변경허가(협의)내역

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목 적	장 소	허가(승인)받은 자		면적 (㎡)	기 간
				성 명	주 소		
2014-73	2020.1.6.	육상양식장 취·배수시설	성산읍 신천리 7 지선	원경수산	제주시 수덕로 78, 106-201(노형동, 노형e편한세상)	2,016	2020.1.6.~ 2024.7.24.
2018-142	2020.1.28.	해양레저 부대시설	성산읍 시흥하동로 114 지선	제주 오션파크	서귀포시 동홍동 90-1 701호 (남진이르빌)	1,834	2019.12.13.~ 2020.12.12.

서귀포시고시 제2020-45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서 귀 포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종합병원 및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하여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코자함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별첨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열람장소에 비치(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열람장소에 비치(게재생략)
5. 열람장소: 서귀포시 도시과(☎760-2973)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별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35,485.3	-	1,135,485.3	100.0		
주거지역	소 계	863,434.4	-	863,434.4	76.0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1,158.8	-	111,158.8	9.8	
		제2종일반주거지역	268,305.9	-	268,305.9	23.6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185.1	-	200,185.1	17.6	
준주거지역		283,739.6	-	283,739.6	25.0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6,446.0	-	86,446.0	7.6		
자연녹지지역		185,604.9	-	185,604.9	16.4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해당사항 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대	1,135,485.3	-	1,135,485.3	

3)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변경)

가.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교통시설 (변경없음)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일반도로	합 계	40	10,440.0	171,743.8	-	-	-	40	10,440.0	171,743.8	
	대로	소계	2	2,086.0	56,975.2	-	-	-	2	2,086.0	56,975.2
		1류	-	-	-	-	-	-	-	-	-
		2류	-	-	-	-	-	-	-	-	-
		3류	2	2,086.0	56,975.2	-	-	-	2	2,086.0	56,975.2
	중로	소계	19	5,899.0	92,415.2	-	-	-	19	5,899.0	92,415.2
		1류	1	480.0	10,676.0	-	-	-	1	480.0	10,676.0
		2류	12	3,675.0	64,138.4	-	-	-	12	3,675.0	64,138.4
		3류	6	1,744.0	17,600.8	-	-	-	6	1,744.0	17,600.8
	소로	소계	19	2,455.0	22,353.4	-	-	-	19	2,455.0	22,353.4
		1류	3	271.0	3,285.1	-	-	-	3	271.0	3,285.1
		2류	16	2,184.0	19,068.3	-	-	-	16	2,184.0	19,068.3
		3류	-	-	-	-	-	-	-	-	-
특수도로	합계	8	585.5	4,699.1	-	-	-	8	585.5	4,699.1	
	소로	1류	2	245.0	2,509.3	-	-	-	2	245.0	2,509.3
		2류	4	83.5	675.7	-	-	-	4	83.5	675.7
		3류	2	257.0	1,484.1	-	-	-	2	257.0	1,484.1
		기타	-	-	4,176.7	-	-	-	-	-	4,176.7

■ 도로 결정 조서

연번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면적							
1	기정	대로	3	5	25	주간선도로	1,509	서호동 732-6과	서호동 732-6과	일반도로	제고 제2002-8호 ('2002.4.24)	
2	기정	대로	3	11	25	주간선도로	577	서호동 1583 도	서호동 1583 도	일반도로	제고 제 97-7호 ('97. 11. 5)	
3	기정	중로	1	2	21	보조간선도로	480	서호동 1589 도	서호동 1589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4	기정	중로	2	6	15	보조간선도로	129	서호동 1565 도	서호동 1565 도	일반도로	제고 제1042호 ('77. 8 .31)	
5	기정	중로	2	24	15	보조간선도로	397	서호동 1580 도	서호동 1580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6	기정	중로	2	25	15	보조간선도로	382	서호동 1584 도	서호동 1584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7	기정	중로	2	26	18	보조간선도로	572	서호동 1577 도	서호동 1577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연번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8	기정	중로	2	27	15	보조간선도로	484	서호동 1587 도	서호동 1587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9	기정	중로	2	29	15	보조간선도로	220	서호동 1590 도	서호동 1590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10	기정	중로	2	31	17	집산도로	383	서호동 1564 도	서호동 1564 도	일반도로	국고 제2010-930호 ('2010.12.16)	
11	기정	중로	2	32	15	집산도로	76	서호동 1571 도	서호동 1571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12	기정	중로	2	34	15	집산도로	255	서호동 1585 도	서호동 1585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13	기정	중로	2	35	18	보조간선도로	276	서호동 1578 도	서호동 1578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14	기정	중로	2	36	18	보조간선도로	145	서호동 1573 도	서호동 1573 도	일반도로	국고 제2010-930호 ('2010.12.16)	
15	기정	중로	2	37	17	집산도로	356	서호동 1572 도	서호동 1572 도	일반도로	국공 제2014-73호 ('2014.2.3)	
16	기정	중로	3	33	13	집산도로	443	서호동 1582 도	서호동 1581 도	일반도로	국고 제2012-360호 ('2012. 6.20)	
17	기정	중로	3	35	13	집산도로	373	서호동 1588 도	서호동 1588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18	기정	중로	3	36	13	국지도로	200	서호동 1575 도	서호동 1575 도	일반도로	국고 제2010-930호 ('2010.12.16)	
19	기정	중로	3	37	13	집산도로	216	법환동 1660 도	법환동 1660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20	기정	중로	3	a	12	국지도로	358	서호동 1615-9 도	서호동 1615-9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14-755호 ('2014.12. 5)	
21	기정	중로	3	b	12	국지도로	154	서호동 1613-5 도	서호동 1613-5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14-755호 ('2014.12. 5)	
22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144	서호동 1509 도	서호동 1509 도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23	기정	소로	1	8	10	특수도로	101	서호동 1503-10 도	서호동 1503-10 도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24	기정	소로	1	12	11	집산도로	105	서호동 1561 도	서호동 1561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25	기정	소로	1	14	11	국지도로	66	서호동 1569 도	서호동 1569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26	기정	소로	1	16	11	국지도로	100	서호동 1594 도	서호동 1594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27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38	서호동 1592 도	서호동 1592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28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24	서호동 1557 도	서호동 1557 도	일반도로	국고 제2012-360호 ('2012. 6.20)	
29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22	서호동 1566 도	서호동 1566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30	기정	소로	2	4	8	집산도로	101	서호동 1558 도	서호동 1558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31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11	서호동 1559 도	서호동 1559 도	일반도로	국고 제2012-360호 ('2012. 6.20)	
32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46	서호동 1560 도	서호동 1560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33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72	서호동 1563 도	서호동 1563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34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156	서호동 1562 도	서호동 1562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연번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35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62	서호동 1567 도	서호동 1567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36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47	서호동 1568 도	서호동 1568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37	기정	소로	2	17	8	특수도로	40	서호동 1554-8 도	서호동 1554-8 도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 제2010-930호 ('2010.12.16)	
38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118	서호동 1570 도	서호동 1570 도	일반도로	국고 제2012-360호 ('2012. 6.20)	
39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165	서호동 1591 도	서호동 1591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40	기정	소로	2	21	8	특수도로	14.5	서호동 1503-5 도	서호동 1503-5 도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 제2012-360호 ('2012. 6.20)	
41	기정	소로	2	22	8	국지도로	82	서호동 1593 도	서호동 1593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42	기정	소로	2	23	8	특수도로	14.5	서호동 1503-15 도	서호동 1503-15 도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 제2012-360호 ('2012. 6.20)	
43	기정	소로	2	24	8	국지도로	213	서호동 1595 도	서호동 1595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2007. 8.30)	
44	기정	소로	2	26	8	국지도로	177	서호동 1586 도	서호동 1586 도	일반도로	국고 제2010-930호 ('2010.12.16)	
45	기정	소로	2	28	8	특수도로	14.5	서호동 1521-6 도	서호동 1521-6 도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 제2012-360호 ('2012. 6.20)	
46	기정	소로	2	30	8~15	국지도로	350	서호동 1576 도	서호동 1576 도	일반도로	국고 제2010-930호 ('2010.12.16)	
47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236	서호동 1497 도	서호동 1497 도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 제2012-360호 ('2012. 6.20)	
48	기정	소로	3	3	4	특수도로	21	서호동 1524-4 도	서호동 1524-4 도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 제2010-930호 ('2010.12.16)	

주) \* 국고 : 국토해양부고시, 건고 : 건설교통부고시,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고시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9,061.8	-	9,061.8	3개소
기정	1	주차장	노외주차장	서호동 1521-12 차	2,568.0	-	2,568.0	
기정	2	주차장	노외주차장	서호동 1603 차	5,848.8	-	5,848.8	
기정	3	주차장	노외주차장	서호동 1552-8 차	645.0	-	645.0	

(2) 공간시설 (변경없음)

(가)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167,836.7	-	167,836.7	8개소
소	계	-	-	-	116,221.9	-	116,221.9	4개소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서귀포시 서호동 1598 공	22,660.4	-	22,660.4	설문대공원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서귀포시 서호동 1599 공 외	31,677.1	-	31,677.1	감쿨길공원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서귀포시 서호동 1601 공	31,066.7	-	31,066.7	바람모루공원
기정	4	공원	근린공원	서귀포시 서호동 1609 공	30,817.7	-	30,817.7	숨골공원 유수지
소	계	-	-	-	42,015.4	-	42,015.4	1개소
기정	1	공원	체육공원	서귀포시 서호동 1602 공	42,015.4	-	42,015.4	삼다체육공원
소	계	-	-	-	9,599.4	-	9,599.4	3개소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서귀포시 서호동 1507-9 공	1,465.1	-	1,465.1	바당 어린이공원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서귀포시 서호동 1533 공	4,194.4	-	4,194.4	오름 어린이공원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서귀포시 서호동 1543 공	3,939.9	-	3,939.9	송이마당 어린이공원

(나)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b>합 계</b>		-		-	<b>56,508.6</b>	-	<b>56,508.6</b>	28개소
<b>소계</b>		-	<b>완충녹지</b>	-	<b>35,648.5</b>	-	<b>35,648.5</b>	23개소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00-1 공	1,565.6	-	1,565.6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499 공	3,207.4	-	3,207.4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498 공	1,607.5	-	1,607.5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00-8 공	515.1	-	515.1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03-1 공	606.7	-	606.7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03-19 공	515.7	-	515.7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07-1 공	788.9	-	788.9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11 공	1,979.0	-	1,979.0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10 공	1,019.9	-	1,019.9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16-1 공	1,858.1	-	1,858.1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21-1 공	564.2	-	564.2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21-7 공	124.4	-	124.4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35 공	1,088.2	-	1,088.2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39 공	2,924.1	-	2,924.1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611 공	1,341.0	-	1,341.0	
기정	17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42 공	2,062.0	-	2,062.0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46 공	4,215.8	-	4,215.8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48 공	3,996.2	-	3,996.2	
기정	20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54-12 공	701.4	-	701.4	
기정	21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659 공	2,431.6	-	2,431.6	
기정	22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612 공	983.9	-	983.9	
기정	23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54-13 공	1,070.8	-	1,070.8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23-1 공	481.0	-	481.0	
<b>소계</b>		-	<b>경관녹지</b>	-	<b>8,214.1</b>	-	<b>8,214.1</b>	3개소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서호동 1526 공	5,666.7	-	5,666.7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서호동 1529 공	1,098.8	-	1,098.8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서호동 1531 공	1,448.6	-	1,448.6	
<b>소계</b>		-	<b>연결녹지</b>	-	<b>12,646.0</b>	-	<b>12,646.0</b>	2개소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서호동 1536 공	5,626.0	-	5,626.0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서호동 1547 공	7,020.0	-	7,020.0	

(다) 광장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614.4	-	614.4	
기정	1	광장	근린광장	서호동 1552-1 공	614.4	-	614.4	폭낭광장

(라)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892.7	-	892.7	3개소
기정	1	공공공지	-	서호동 1522-4 도	295.8	-	295.8	
기정	2	공공공지	-	서호동 1523-2 도	106.3	-	106.3	
기정	3	공공공지	-	서호동 1574 도	490.6	-	490.6	

(3)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가) 학교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901.4	-	901.4	2개소
기정	1	학교	유치원	서호동 1538 대	901.4	-	901.4	

(나)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11,819.2	-	11,819.2	1개소
기정	1	문화시설	문화체육시설	서호동 1604 대	11,819.2	-	11,819.2	

(다)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3,335.0	-	3,335.0	2개소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서호동 1512 대	1,335.0	-	1,335.0	
기정	2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법환동 1666-2 대	2,000.0	-	2,000.0	

(라)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23,947.0	-	23,947.0	1개소
기정	1	공공청사	공공청사	서호동 1528 대	23,947.0	-	23,947.0	

(4) 방재시설 (변경없음)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20,509.0	-	20,509.0	2개소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서호동 1541 유	8,561.0	-	8,561.0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서호동 1609 공	11,948.0	-	11,948.0	근린공원내설치

(5)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가) 하수도시설

■ 하수도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500.0	-	500.0	1개소
기정	1	하수도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서호동 1544 수	500.0	-	500.0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주택건설용지 (변경없음)

(가) 일반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단1-1	단1-1	2,314.4	-1	서호동 1500-2	381.2	-	381.2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00-3	380.0	-	380.0	
			-3	서호동 1500-4	380.0	-	380.0	
			-4	서호동 1500-5	381.0	-	381.0	
			-5	서호동 1500-6	396.0	-	396.0	
			-6	서호동 1500-7	396.2	-	396.2	
단1-2	단1-2	2,548.0	-1	서호동 1501-3	430.0	-	430.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01-2	429.0	-	429.0	
			-3	서호동 1501-1	416.0	-	416.0	
			-4	서호동 1501-6	428.0	-	428.0	
			-5	서호동 1501-5	424.0	-	424.0	
			-6	서호동 1501-4	420.8	-	420.8	
단1-3	단1-3	2,555.1	-1	서호동 1502-4	314.1	-	314.1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02-3	320.0	-	320.0	
			-3	서호동 1502-2	322.0	-	322.0	
			-4	서호동 1502-1	321.0	-	321.0	
			-5	서호동 1502-8	320.0	-	320.0	
			-6	서호동 1502-7	319.0	-	319.0	
			-7	서호동 1502-6	319.0	-	319.0	
			-8	서호동 1502-5	320.0	-	320.0	
단1-4	단1-4	4,632.8	-1	서호동 1503-2	337.0	-	337.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03-3	338.0	-	338.0	
			-3	서호동 1503-4	370.2	-	370.2	
			-4	서호동 1503-6	322.0	-	322.0	
			-5	서호동 1503-7	322.0	-	322.0	
			-6	서호동 1503-8	322.0	-	322.0	
			-7	서호동 1503-9	321.6	-	321.6	
			-8	서호동 1503-11	316.9	-	316.9	
			-9	서호동 1503-12	317.0	-	317.0	
			-10	서호동 1503-13	317.0	-	317.0	
			-11	서호동 1503-14	317.0	-	317.0	
			-12	서호동 1503-16	364.0	-	364.0	
			-13	서호동 1503-17	336.0	-	336.0	
			-14	서호동 1503-18	332.1	-	332.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단1-5	단1-5	2,629.9	-1	서호동 1504-4	316.0	-	316.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04-3	330.0	-	330.0	
			-3	서호동 1504-2	328.0	-	328.0	
			-4	서호동 1504-1	328.0	-	328.0	
			-5	서호동 1504-8	330.0	-	330.0	
			-6	서호동 1504-7	336.0	-	336.0	
			-7	서호동 1504-6	331.0	-	331.0	
			-8	서호동 1504-5	330.9	-	330.9	
단1-6	단1-6	3,250.7	-1	서호동 1505-5	315.0	-	315.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05-4	331.0	-	331.0	
			-3	서호동 1505-3	331.0	-	331.0	
			-4	서호동 1505-2	327.0	-	327.0	
			-5	서호동 1505-1	319.0	-	319.0	
			-6	서호동 1505-10	329.0	-	329.0	
			-7	서호동 1505-9	336.0	-	336.0	
			-8	서호동 1505-8	331.0	-	331.0	
			-9	서호동 1505-7	331.0	-	331.0	
			-10	서호동 1505-6	300.7	-	300.7	
단1-7	단1-7	2,232.4	-1	서호동 1507-2	317.4	-	317.4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07-3	322.0	-	322.0	
			-3	서호동 1507-4	321.0	-	321.0	
			-4	서호동 1507-5	323.0	-	323.0	
			-5	서호동 1507-6	318.0	-	318.0	
			-6	서호동 1507-7	313.0	-	313.0	
			-7	서호동 1507-8	318.0	-	318.0	
단1-8	단1-8	3,128.7	-1	서호동 1506-5	294.4	-	294.4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06-4	324.0	-	324.0	
			-3	서호동 1506-3	324.1	-	324.1	
			-4	서호동 1506-2	318.0	-	318.0	
			-5	서호동 1506-1	318.0	-	318.0	
			-6	서호동 1506-10	276.0	-	276.0	
			-7	서호동 1506-9	322.0	-	322.0	
			-8	서호동 1506-8	327.0	-	327.0	
			-9	서호동 1506-7	327.0	-	327.0	
			-10	서호동 1506-6	298.2	-	298.2	
단2-1	단2-1	1,380.4	-1	서호동 1517-4	337.4	-	337.4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17-3	361.0	-	361.0	
			-3	서호동 1517-2	361.0	-	361.0	
			-4	서호동 1517-1	321.0	-	321.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단2-2	단2-2	2,591.0	-1	서호동 1516-2	293.0	-	293.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16-3	293.0	-	293.0	
			-3	서호동 1516-4	290.0	-	290.0	
			-4	서호동 1516-5	289.0	-	289.0	
			-5	서호동 1516-6	286.0	-	286.0	
			-6	서호동 1516-7	285.0	-	285.0	
			-7	서호동 1516-8	285.0	-	285.0	
			-8	서호동 1516-9	285.0	-	285.0	
			-9	서호동 1516-10	285.0	-	285.0	
단2-3	단2-3	2,601.0	-1	서호동 1518-4	311.0	-	311.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18-3	343.0	-	343.0	
			-3	서호동 1518-2	364.0	-	364.0	
			-4	서호동 1518-1	395.0	-	395.0	
			-5	서호동 1518-7	408.0	-	408.0	
			-6	서호동 1518-6	398.0	-	398.0	
			-7	서호동 1518-5	382.0	-	382.0	
단2-4	단2-4	1,291.3	-1	서호동 1519-2	324.8	-	324.8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19-1	323.8	-	323.8	
			-3	서호동 1519-4	312.0	-	312.0	
			-4	서호동 1519-3	330.7	-	330.7	
단2-5	단2-5	1,933.9	-1	서호동 1520-2	236.0	-	236.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20-1	252.0	-	252.0	
			-3	서호동 1520-8	242.0	-	242.0	
			-4	서호동 1520-3	240.0	-	240.0	
			-5	서호동 1520-4	238.0	-	238.0	
			-6	서호동 1520-7	241.0	-	241.0	
			-7	서호동 1520-6	250.0	-	250.0	
			-8	서호동 1520-5	234.9	-	234.9	
단2-6	단2-6	1,954.0	-1	서호동 1521-2	250.0	-	250.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21-3	250.0	-	250.0	
			-3	서호동 1521-4	249.0	-	249.0	
			-4	서호동 1521-5	250.0	-	250.0	
			-5	서호동 1521-8	239.0	-	239.0	
			-6	서호동 1521-9	238.0	-	238.0	
			-7	서호동 1521-10	239.0	-	239.0	
			-8	서호동 1521-11	239.0	-	239.0	
단3-1	단3-1	3,710.7	-1	서호동 1550-1	338.8	-	338.8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50-2	336.8	-	336.8	
			-3	서호동 1550-3	337.8	-	337.8	
			-4	서호동 1550-4	337.8	-	337.8	
			-5	서호동 1550-5	335.8	-	335.8	
			-6	서호동 1550-6	336.8	-	336.8	
			-7	서호동 1550-7	337.8	-	337.8	
			-8	서호동 1550-8	337.8	-	337.8	
			-9	서호동 1550-9	336.8	-	336.8	
			-10	서호동 1550-10	336.8	-	336.8	
			-11	서호동 1550-11	337.7	-	337.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단3-2	단3-2	3,356.7	-1	서호동 1551-6	381.8	-	381.8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51-5	356.0	-	356.0	
			-3	서호동 1551-4	339.0	-	339.0	
			-4	서호동 1551-3	301.0	-	301.0	
			-5	서호동 1551-2	301.0	-	301.0	
			-6	서호동 1551-1	338.0	-	338.0	
			-7	서호동 1551-10	335.0	-	335.0	
			-8	서호동 1551-9	336.0	-	336.0	
			-9	서호동 1551-8	335.0	-	335.0	
			-10	서호동 1551-7	333.9	-	333.9	
단3-3	단3-3	1,697.0	-1	서호동 1552-4	288.0	-	288.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52-3	287.0	-	287.0	
			-3	서호동 1552-2	286.0	-	286.0	
			-4	서호동 1552-7	278.0	-	278.0	
			-5	서호동 1552-6	279.0	-	279.0	
			-6	서호동 1552-5	279.0	-	279.0	
단3-4	단3-4	3,065.1	-1	서호동 1553-5	305.1	-	305.1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53-4	311.0	-	311.0	
			-3	서호동 1553-3	302.0	-	302.0	
			-4	서호동 1553-2	308.0	-	308.0	
			-5	서호동 1553-1	307.0	-	307.0	
			-6	서호동 1553-10	307.0	-	307.0	
			-7	서호동 1553-9	305.0	-	305.0	
			-8	서호동 1553-8	305.0	-	305.0	
			-9	서호동 1553-7	307.0	-	307.0	
			-10	서호동 1553-6	308.0	-	308.0	
단3-5	단3-5	3,139.2	-1	서호동 1554-1	329.4	-	329.4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54-2	332.4	-	332.4	
			-3	서호동 1554-3	329.4	-	329.4	
			-4	서호동 1554-4	330.0	-	330.0	
			-5	서호동 1554-5	303.0	-	303.0	
			-6	서호동 1554-6	303.0	-	303.0	
			-7	서호동 1554-7	303.0	-	303.0	
			-8	서호동 1554-9	303.0	-	303.0	
			-9	서호동 1554-10	303.0	-	303.0	
			-10	서호동 1554-11	303.0	-	303.0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A1	A1	35,644.0	서호동 1540 대	35,644.0	-	35,644.0	필지분할·합병 불허 (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제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은 대지분할 가능)
A2	A2	71,940.8	서호동 1534 대	71,940.8	-	71,940.8	
A3	A3	50,790.0	서호동 1545 대	50,790.0	-	50,790.0	
A4	A4	7,696.0	서호동 1615-3 대	7,696.0	-	7,696.0	

(2)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

(가) 근린상업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근상1	1	4,301.2	-1	서호동 1524-7	1,525.0	-	1,525.0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필지분할 불허)
			-2	서호동 1524-6	591.9	-	591.9	
			-3	서호동 1524-5	570.9	-	570.9	
			-4	서호동 1524-3	525.4	-	525.4	
			-5	서호동 1524-2	560.0	-	560.0	
			-6	서호동 1524-1	528.0	-	528.0	
	2	2,719.1	-1	서호동 1525-5	549.6	-	549.6	
			-2	서호동 1525-4	569.0	-	569.0	
			-3	서호동 1525-3	551.0	-	551.0	
			-4	서호동 1525-2	541.0	-	541.0	
			-5	서호동 1525-1	508.5	-	508.5	
근상2	1	2,550.0	-1	서호동 1522-1	1,286.0	-	1,286.0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22-2	1,264.0	-	1,264.0	
근상3	1	1,475.0	-1	서호동 1521-13	722.0	-	722.0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21-14	753.0	-	753.0	

(나) 업무용지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업무1	-	1,364.3	서호동 1522-3	1,364.3	-	1,364.3	공공업무시설에 한함
		1개			1,364.3	-	1,364.3	

(다) 관광숙박시설용지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숙1	-	51,350.0	서호동 1616 대	51,350.0	-	51,350.0	
		1개			51,350.0	-	51,350.0	

(3) 혁신클러스터용지 (변경)

(가) 이전공공기관용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이전1	이전1	-	-	-	-	-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차청사
기정	이전2	이전2						재외동포재단	
기정	이전3	이전3	14,364.0	서호동 1532 대	14,364.0	-	14,364.0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정	이전4	이전4-1	120,131.0	서호동 1513 대	92,762.6	-	92,762.6	국세공무원교육원	
		이전4-2		서호동 1515 대	27,368.4	-	27,368.4		
기정	이전5	이전5	58,007.0	서호동 1532 대	58,007.0	-	58,007.0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정	이전6	이전6	19,560.0	서호동 1530 대	19,560.0	-	19,560.0	공무원연금공단	
기정	이전7	이전7	9,055.0	서호동 1514 대	9,055.0	-	9,055.0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기정	이전8	이전8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기정	이전9	이전9	16,953.0	서호동 1508 대	16,953.0	-	16,953.0	국립기상과학원	
		7개			238,070.0	-	238,070.0		

(나) 산학연클러스터용지 (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클1	클1-1	2,350.0	법환동 1666-6 대	2,350.0	-	2,350.0	입주기업 규모, 수요경향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획지를 분할·합병 할 수 있으며, 획지 분할 시에는 최소 1,000㎡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기정	클1	클1-2	3,346.4	법환동 1666-3 대	3,346.4	-	3,346.4	
기정	클1	클1-3	7,423.0	법환동 1666-4 대	7,423.0	-	7,423.0	
기정	클1	클1-4	6,600.0	법환동 1666-5 대	6,600.0	-	6,600.0	
기정	클1	클1-5	8,150.0	법환동 1666-7 대	8,150.0	-	8,150.0	
기정	클1	클1-6	1,500.0	법환동 1666-1 대	1,500.0	-	1,500.0	
기정	클2	클2-1	6,766.7	서호동 1615-1 대	6,766.7	-	6,766.7	
기정	클2	클2-2	6,681.9	서호동 1615-2 대	6,681.9	-	6,681.9	
기정	클2	클2-4	2,929.4	서호동 1615-4 대	2,929.4	-	2,929.4	
기정	클2	클2-5	2,968.7	서호동 1615-5 대	2,968.7	-	2,968.7	
변경	클2	클2-6	3,804.1	서호동 1615-6 대	1,905.6	증)1,898.5	3,804.1	
폐지	클2	클2-7	1,898.5	서호동 1615-7 대	1,898.5	감)1,898.5	-	
기정	클2	클2-8	1,627.2	서호동 1615-8 대	1,627.2	-	1,627.2	
기정	클2	클2-9	7,382.3	서호동 1615-13 대	7,382.3	-	7,382.3	
기정	클2	클2-10	6,283.2	서호동 1615-12 대	6,283.2	-	6,283.2	
기정	클2	클2-11	8,701.5	서호동 1615-14 대	8,701.5	-	8,701.5	
기정	클2	클2-12	3,087.1	서호동 1615-11 대	3,087.1	-	3,087.1	
기정	클2	클2-13	3,230.3	서호동 1615-10 대	3,230.3	-	3,230.3	
기정	클3	클3	17,585.0	서호동 1605 대	17,585.0	-	17,585.0	
기정	클4	클4-1	4,930.3	서호동 1613-1 대	4,930.3	-	4,930.3	
기정	클4	클4-2	5,626.0	서호동 1613-2 대	5,626.0	-	5,626.0	
기정	클4	클4-3	4,020.0	서호동 1613-7 대	4,020.0	-	4,020.0	
기정	클4	클4-4	4,777.7	서호동 1613-3 대	4,777.7	-	4,777.7	
변경	클4	클4-5	5,028.5	서호동 1613-6 대	5,028.5	감)1,052	3,976.5	
기정	클4	클4-6	6,551.0	서호동 1613-4 대	6,551.0	-	6,551.0	
신규	클4	클4-7	-	서호동 1613-6 대	-	증)1,052	1,052.0	
기정	클5	클5	19,497.7	서호동 1614 대	19,497.7	-	19,497.7	
		27개			150,848.0	-	150,848.0	

(4)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유1	-	901.4	서호동 1538 대	901.4	-	901.4	
		1개			901.4	-	901.4	

(5)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가) 복지시설용지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복1	-	1,335.0	서호동 1512 대	1,335.0	-	1,335.0	사회복지시설
기정	복2	-	2,000.0	서호동 1666-2 대	2,000.0	-	2,000.0	보육시설
		2개			3,335.0	-	3,335.0	

(나) 문화시설용지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문1	-	11,813.0	서호동 1604 대	11,819.2	-	11,819.2	문화체육시설
		1개			11,819.2	-	11,819.2	

(다) 종교시설용지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종1	-	1,150.6	서호동 1537 대	1,150.6	-	1,150.6	
		1개			1,150.6	-	1,150.6	

(라) 오수처리시설용지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오1	-	500.0	서호동 1544 수	500.0	-	500.0	오수중계펌프장
		1개			500.0	-	500.0	

(마) 위험물저장시설용지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위1	-	1,006.8	서호동 1549 주	1,006.8	-	1,006.8	주유소
		1개			1,006.8	-	1,006.8	

(바) 주차장용지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1	-	2,568.0	서호동 1521-12 차	2,568.0	-	2,568.0	노외주차장
기정	주2	-	5,849.0	서호동 1603 차	5,848.8	-	5,848.8	노외주차장
기정	주3	-	645.0	서호동 1522-8 차	645.0	-	645.0	노외주차장
		3개			9,061.8	-	9,061.8	

(사) 방재시설용지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저1	-	8,561.0	서호동 1541 유	8,561.0	-	8,561.0	
기정	저2	-	11,948.0	서호동 1609 공	11,948.0	-	11,948.0	중복결정(공원내설치)
		2개			20,509.0	-	20,509.0	

(6)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1	-	23,947.0	서호동 1528 대	23,947.0	-	23,947.0	
		1개			23,947.0		23,947.0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주택건설용지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1~단3	단1~단3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1필지당 세대수	• 1필지당 세대수는 <별표 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획지의 합병에 의한 공동개발시는 당초 지정된 필지당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 단독주택은 정남방향으로부터 일조권이 확보되도록 하며, 건축법 제53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제3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1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소2-4, 소2-21, 소1-8, 소2-23, 소1-12, 중2-6, 소1-14, 소2-28, 소1-16, 소2-17, 완1, 완4, 완5, 완6, 완7, 완10, 완12, 완13, 완20, 완23, 아1, 근4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높이는 4.5미터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li> <li>-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30이내에서 허용한다.</li> <li>-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6/10 이내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li> <li>-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li> </ul> </li> <li>• 외벽의 재료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li> <li>- 점포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li> </ul> </li> <li>• 1층 바닥높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li> </ul> </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1~단3	단1~단3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장 및 대문, 계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li> <li>담장의 재료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또는 제주석을 이용하여 투시 가능하도록 한다.</li> </ul> </li> <li>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설계 시에는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lt;별표 9&gt;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의거 광고물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도서 등에 반영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계획 심의와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li> </ul> </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lt;별표 4&gt;에 따른다.</li> <li>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전·후면과 측면 중 2개면 이상은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독주택의 외부색채는 마감재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재, 콘크리트, 드라이비트, 파스텔타일, 알미늄 등의 조색가능한 마감재 사용시 주조색과 보조색은 지침을 준수한다.</li> <li>자연상태의 석재, 원목 또는 적벽돌 등의 조색 불가능한 마감재 사용시 주조색은 마감재의 고유색상을 사용하고, 보조색은 마감재와 조화될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하되 중고명도(5.0 ~ 7.5), 중저채도(2.5 ~ 4.0)의 범위에서 사용한다.</li> </ul> </li> </ul>

< 별표 1 >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단독주택용지	
		R1 (협의양도자 택지, 이주자택지)	R2 (이주자 택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한다.)</li> <li>점포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기목 내지 바목, 아목, 자목, 타목(노래연습장에 한한다.)]</li> </ul>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1층 및 지하층에 한하며,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주차 등을 이유로 조성된 1층부 피로티 부분은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150%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15m 이하
1필지당 가구수		3가구 이하	3가구 이하
해당블록		단1 BL1~BL8 단2 BL1~BL6	단3 BL1~BL5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1~A4	A1~A4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의 제2조의 제6호,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3>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3>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는 <별표 3>에 규정된 규모의 5%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다. 다만, 홀수세대수는 단수를 감하여 짝수로 조정할 수 있으며(예시 : 101세대의 경우 100세대로 가능),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형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배치 및 건축선	·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건물의 형태와 저층~고층 아파트 혼합배치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을 탈피하도록 한다. · 단지내에는 보행통로 등을 통하여 보행동선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3미터 건축한계선 : 연1, 어2, 연2, 어3, 저1, 완15, 중2-26, 중2-35, 소2-30, 완14 · 11미터 건축한계선 : 완18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길이제한 - 10층 이하 : 제한없음 - 11층 ~ 15층 : 80미터 이하 ·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주거동은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최상층부</th> <th>기준층부</th> <th>지상층부</th> </tr> </thead> <tbody> <tr> <td>15층 이하</td> <td>최상층</td> <td>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td> </tr> </tbody> </table>	구 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5층 이하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구 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5층 이하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워형(평면상 장·단변 비례가 1:2 미만을 말한다.) 아파트인 경우와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물매 3/10 ~ 6/10 범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A4	A1~A4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계단, 피로티</li> <li>- 담장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며, 재료는 제주도 토종식재료인 화목류의 생울타리 또는 제주석을 이용하여 투시형이 되도록 한다.</li> <li>-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li> <li>-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li> <li>-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피로티 구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공용공간으로 활용한다.</li> <li>· 옥외광고물</li> <li>-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lt;별표 9&gt;에 따른다.</li> <li>· 야간경관조명</li> <li>-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은 &lt;별표 10&gt;을 따른다.</li> <li>·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lt;별표 12&gt;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lt;별표 4&gt;에 따른다.</li> <li>· 건축물의 입면 색채변화는 수직형보다는 수평형을 권장하며, 지상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이내), 기준층부(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최상층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이내)로 구분시 저층부일수록 색의 명도를 낮추어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li> <li>· 최상층부와 지상층부 구간에는 단지이름이나 주거동 호수 등 일체표기를 할 수 없다.</li> </ul>

< 별표 2 >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구 분		공동주택용지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A1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li> <li>-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li> <li>- 부대복리시설</li> </ul>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별표 3 〉 공동주택(아파트)의 유형·세대수·건폐율·용적률·높이

필지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세대당 평균면적(㎡)	최고높이	건폐율	용적률	비고
A1	60㎡이하	15,908.0	238	660	85	40m 이하	50%	120%	Social-mix
	60㎡초과 85㎡이하	19,736.0	214	600	114	40m 이하	50%	120%	
A2	60㎡초과 85㎡이하	22,123.1	242	680	114	40m 이하	50%	120%	-
	85㎡초과	49,817.7	440	1,220	135	40m 이하	50%	120%	
A3	60㎡초과 85㎡이하	50,790.0	550	1,540	114	40m 이하	50%	120%	-
A4	60㎡이하	7,696.0	200	394	51	40m 이하	50%	120%	행복주택
합 계		166,070.8	1,884	5,094	-	-	-	-	

주) 현상설계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아파트)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 별표 4 〉 건축물 외벽의 색채

항 목	색채구분	색 상	명 도	채 도	입면색	지붕옥탑부
단독주택	주조색	2.5YR~7.5P	7.5-9.0	1.0-2.0		
	보조색	2.5YR~7.5P	6.0-8.0	2.0-6.0		
	강조색	2.5YR~7.5P	6.5-8.0	2.0-4.0		
공동주택	주조색	2.5YR~7.5P	8.0-9.0	1.0-2.0		
	보조색	2.5YR~7.5P	6.5-8.0	2.0-6.0		
	강조색	2.5YR~7.5P	6.5-8.0	2.0-4.0		
혁신클러스터	주조색	2.5YR~7.5P	8.0-9.0	1.0-2.0		
	보조색	2.5YR~7.5P	6.5-8.0	2.0-6.0		
	강조색	2.5YR~7.5P	6.5-8.0	2.0-4.0		
상업·업무	주조색	2.5YR~7.5P	8.0-9.0	1.0-2.0		
	보조색	2.5YR~7.5P	6.5-8.0	2.0-6.0		
	강조색	2.5YR~7.5P	6.5-8.0	2.0-4.0		
공공청사	주조색	2.5YR~7.5P	8.0-9.0	1.0-2.0		
	보조색	2.5YR~7.5P	6.5-8.0	2.0-6.0		
	강조색	2.5YR~7.5P	6.5-8.0	2.0-4.0		

(2) 상업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근상1~ 근상3	근상1~ 근상3	용도(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용도는 &lt;별표 5&gt;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 외에는 불허한다.</li> <li>· 건축물의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이하 “승인권자”라 한다)는 주요도로변에 면한 대지에 건축물 1층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권장용도[1층 바닥면적(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로 지정할 수 있다.</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건폐율은 &lt;별표 6&gt;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용적률은 &lt;별표 6&gt;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높이는 &lt;별표 6&gt;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li> <li>· 1층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권장한다. 다만, 1층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1층 높이를 4.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li> </ul>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을 주전면으로 배치한다.</li> <li>-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 이상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을 주전면으로 하되,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하여 외관설계를 권장(각각이 있는 경우 각각 포함) 한다.</li> <li>- 건축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을 주전면으로 한다.</li> </ul> </li> <li>·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20센티미터 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li> <li>· 1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소2-26, 소3-3</li> <li>· 2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2-32, 중2-31, 중2-34</li> <li>· 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근2</li> <li>· 5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대3-5, 공지1</li> <li>· 건축지정선 지정 : 대3-11</li> <li>-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건축지정선 길이의 3분의 2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서터를 포함)은 7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li>·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li> <li>· 지붕·옥상에는 조형물 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li> <li>· 담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li> <li>· 장애인을 위한 계획 : 상업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li> <li>·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lt;별표 9&gt;를 따른다.</li> <li>· 주택 및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lt;별표 12&gt;에 의한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lt;별표 4&gt;에 따른다.</li> </ul>		

(3) 관광숙박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숙1	숙1	용도(T)	· 건축물 용도는 <별표 5>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 외에는 불허한다. - 관광숙박시설 설치 시에는 부대시설로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준회의시설’ 규모(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1실과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 3실 이상)의 회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6>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6>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1층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권장한다. 다만, 1층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1층 높이를 4.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2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을 주전면으로 배치한다. -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 이상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을 주전면으로 하되,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하여 외관설계를 권장(각각이 있는 경우 각각 포함) 한다. - 건축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을 주전면으로 한다.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20센티미터 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 · 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2-26, 완16, 완19, 완22 · 25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연2
		형태 및 외관	· 건축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서터를 포함)은 7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하여 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 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지붕·옥상에는 조형물 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담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장애인을 위한 계획 : 상업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별표 9>를 따른다. · 주택 및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2>에 의한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별표 4>에 따른다.

〈 별표 5 〉 근린상업용지, 관광숙박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용도별		내용	
		근린상업용지	관광숙박시설용지
판매 및 영업시설군	위락시설	▲	X
	판매시설	○	X
	숙박시설	○	○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문화 및 집회 시설군	공연장	▲	X
	집회장	▲	X
	관람장	▲	X
	전시장	▲	X
	동·식물원	▲	X
교육 및 의료시설군	교육연구시설	○	X
	의료시설	○ 격리병원제외	X
주거 및 업무시설군	단독주택	○	X
	공동주택	○ (복합용도 - 주거 90% 미만)	X
	공공·업무시설	▲	X
기타 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	X
	제2종 근린생활시설	○	X
	동식물관련시설	X - 종묘, 화초 등 온실 제외	X
	묘지관련시설	X	X

주) ○ : 허용, ▲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 불허

〈 별표 6 〉 근린상업용지, 관광숙박시설용지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근린상업용지	관광숙박시설용지
건폐율	70%이하	70%이하
용적률	700%이하	400%이하
최고높이	30m이하	30m이하
해당블록	근상1, 근상2, 근상3	숙1

(4) 업무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업무1	업무1	용도(B4)	· 건축물 용도는 공공업무시설 외에는 불허.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지사포함)은 허용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30m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 1층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권장한다. 다만, 1층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1층 높이를 4.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2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을 주전면으로 배치한다. -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 이상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을 주전면으로 하되,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하여 외관설계를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한다. - 건축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을 주전면으로 한다.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20센티미터 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 · 2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2-32, 중2-31 · 5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공지1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 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지붕·옥상에는 조형물 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담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장애인을 위한 계획 : 업무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별표 9>를 따른다.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2>에 의한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별표 4>에 따른다.		



(5) 혁신클러스터용지

(가) 이전공공기관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이전3~ 이전9	이전3~ 이전9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li> <li>·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li> </ul>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전면은 가급적 남향을 향하도록 배치한다.</li> <li>- 2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을 주전면으로 배치한다.</li> <li>-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 이상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을 주전면으로 하되,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하여 외관설계를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한다.</li> </ul> </li> <li>· 2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2-34, 중2-24, 완8, 북1</li> <li>· 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2-27, 중2-25, 경1, 경2, 경3, 근3, 근2, 근1, 여2</li> <li>· 5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대3-11</li> <li>· 10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3-33, 중3-35, 대3-5, 근1</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옥상에는 조형적 디자인 또는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li> <li>· 담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li> <li>·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lt;별표 12&gt;에 의한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ul>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별표 4>에 따른다.		

(나) 산학연클러스터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클1~클5	클1~클5	허용 용도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⑩ 지식산업센터, ⑪ 벤처기업집적시설, ⑫ 소프트웨어진흥시설, ⑬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1)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100 병상 이상 병원도 포함)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제외하되 산학연클러스터 구축목적과 직접 연계된 특성화 고등학교 및 부속시설은 허용)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1호 노유자 시설중 근로복지시설 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 ⑦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2)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중 이전공공기관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공간으로 제공하는 청사, 지역 내 공공업무시설 중 산학연클러스터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기업지원 및 산업진흥지원시설3)로서 집적화가 필요한 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제3항의 정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⑧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 마목을 제외한 공장 ⑩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시설) ⑪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⑫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⑬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⑭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반영된 시설 ⑮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시설4)
		불허용도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더목의 단란주점, 러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거목의 고시원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나목 격리병원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제외) 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 ⑦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⑧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시설 ⑪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클1~클5	클1~클5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전면은 가급적 남향을 향하도록 배치한다.</li> <li>- 2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을 주전면으로 배치한다.</li> <li>-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 이상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을 주전면으로 하되,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하여 외관설계를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한다.</li> </ul> </li> <li>· 2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2-24, 중3-37, 소3-1</li> <li>· 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1-2, 중2-26, 중2-29, 근1, 근3, 연1, 연2, 완19, 완21</li> <li>· 10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대3-5, 근1</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 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li> <li>· 지붕·옥상에는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li> <li>· 담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li> <li>·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lt;별표 12&gt;에 의한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lt;별표 4&gt;를 따른다.</li> </ul>

-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업지원시설 및 산업지원시설(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포함)
- 4) 「금지용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 별표 7 〉 이전공공기관용지의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구분	업무기능		연수기능
	업무기능	업무기능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300% 이하	200% 이하
최고높이	30m 이하	20m 이하	20m 이하
해당블록	이전3, 이전6~이전8	이전9	이전4, 이전5

〈 별표 8 〉 산학연클러스터용지의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구분	교육연구, 업무기능		교육연구, 연수기능
	교육연구, 업무기능	교육연구, 업무기능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300% 이하	200% 이하
최고높이	30m 이하	20m 이하	30m 이하
해당블록	클1, 클3	클4, 클5	클2

(6) 교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유치원	유치원	용도 (S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유치원</li> <li>·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li> <li>·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①항 1호에 의한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0이상을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로 건축하여야 한다. 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따라 건물의 1층에만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1 미만을 건축할 수 있다.</li> </ul>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15m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li> <li>· 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2-26</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li> <li>-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li> </ul> </li> </ul>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경계부 담장은 높이 1.2미터의 화관목류 생울타리 설치를 권장한다.</li> <li>· 주간선도로변에는 높이 1.2미터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 또는 제주 자연 현무암 쌓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12m 이상의 도로변 및 녹지에 면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li> </ul>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별표 4>을 따른다.		

(7) 기타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담장	· 대지경계부 담장은 높이 1.2미터의 화관목류 생울타리 설치를 권장한다.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별표 4>를 따른다.	
주차장	주1	용도(P1)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에 한하여,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 중 자동차정비관련업종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20m 이하	
	주2	배치 및 건축선	· 5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대3-5 · 10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단독주택지 연결부	
		용도(P1)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P1)과 동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주3	높이	· 20m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체1, 중2-27	
		용도(P1)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P1)과 동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높이	· 15m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1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소1-16, 단3-3-4
용도(W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건폐율			· 50% 이하	
보육시설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20m 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용도(W2)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보육시설	높이	· 30m 이하		
	형태 및 외관	· (W1)과 동일		
	배치 및 건축선	· 2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3-37 · 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1-2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문화시설	문화시설	용도 (W3)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 문화 및 집회시설 - 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도서관에 한한다.) - 운동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마목에 한한다.)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문화시설, 동 규칙 제99조의 체육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20m 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체1, 중1-2, 중2-27		
종1	종1	용도(D)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 종교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15m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2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연1 · 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2-26		
저1~저2	저1~저2	용도(Q)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의 유수지 중 저류시설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오1	오1	용도(Z)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우수 중계펌프장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15m 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위1	위1	용도(H)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에 한한다.)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제1,2항에 의한 시설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15m 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5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대3-5		

(8) 공공청사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1	공1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 공공업무시설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25m 이하 - 다만,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옥탑, 철탑 등 옥상 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은 제외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주전면은 가급적 남향을 향하도록 배치한다. - 2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을 주전면으로 배치한다. -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 이상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 벽면을 주전면으로 하되,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하여 외관설계를 권장(가각 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한다. · 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1-2. 중2-27 · 10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3-35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 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지붕·옥상에는 조형적 디자인 및 조경시설 설치를 권장 한다.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치안이나 보안 등을 위하여 필요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2>에 의한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별표 4>를 따른다.		

< 별표 9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분 류		간판 총수량	가로형	건물상단 가로형	돌출형	지주형	창문이용
완화 지역	Main Commercial 특화가로	2 (곡각지점의 점포는 3개 허용)	3층 이하	4층이상 건물	10층 이하	5개 업소 이상	1층
보통 지역	간선도로	2 (곡각지점의 점포는 3개 허용)	3층 이하	4층이상 건물	5층 이하	5개 업소 이상	1층
규제 지역	Inno Cluster Community Corridor	1 (곡각지점의 점포는 2개 허용)	3층 이하	제한적 사용/심의	3층 이하	제한적 사용/심의	1층

주) 세부규격 및 설치위치, 표기내용, 형태에 관한 사항은 「혁신도시 공공디자인 공통 가이드라인」  
및 「제I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 제6장 옥외광고물」의 내용을 따른다.



〈 별표 10 〉 야간경관조명의 설치기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통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된 용지는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연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li> <li>야간 경관조명 설치기준의 세부사항은 「혁신도시 공공디자인 공통 가이드라인」 및 「혁신도시별 공공디자인 기본설계 지침」을 따른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gt;</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대상용지</th> </tr> </thead> <tbody> <tr> <td>상업용지</td> <td>·근린상업용지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td> </tr> <tr> <td>아파트용지</td> <td>·대상지 동남측 3개아파트단지</td> </tr> <tr> <td>혁신클러스터용지</td> <td>·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사이 도로변의 2개 단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대로3-5도로변의 3개의 클러스터 단지, 이전기관 일부</td> </tr> <tr> <td>공공청사용지</td> <td>·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사이</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용지	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	아파트용지	·대상지 동남측 3개아파트단지	혁신클러스터용지	·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사이 도로변의 2개 단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대로3-5도로변의 3개의 클러스터 단지, 이전기관 일부	공공청사용지	·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사이
		구분	대상용지										
		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										
		아파트용지	·대상지 동남측 3개아파트단지										
혁신클러스터용지	·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사이 도로변의 2개 단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대로3-5도로변의 3개의 클러스터 단지, 이전기관 일부												
공공청사용지	·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사이												
	 <p>The map illustrates the designated areas for night landscape lighting. Key features inclu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혁신클러스터용지 (Innovation Cluster Use Land):</b> Shaded in blue, located along the road between the new city and the innovation city.</li> <li><b>상업용지 (Commercial Use Land):</b> Shaded in red, indicating commercial areas near the target site.</li> <li><b>공공청사용지 (Public Office Use Land):</b> Shaded in dark blue, located between the new city and the innovation city.</li> <li><b>아파트용지 (Apartment Use Land):</b> Shaded in yellow, representing three apartment complexes on the southeast side of the target site.</li> </ul>												

라.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주택건설용지

(가) 단독주택용지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1~단3	단1~단3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1>를 따른다.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부설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 필지 경계부에 담장설치 불허구간을 지정한다. 다만, 필지의 구분을 위하여 경계석 표시는 가능하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 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친환경 계획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6종 이상으로 분류된 수거함을 마을공동광장 등에 설치하여 수거한다. 단, 재활용쓰레기는 해당지자체와 협의하여 수거일을 정하여 처리한다. ·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2>에 의한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A4	A1~A4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은 &lt;별표11&gt;의 기준을 따른다.</li> <li>· 가각부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가각부의 공개공지 예시도&gt;</b></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523 640 951 1032"> <p style="text-align: center;"><b>&lt;곡선 가각부&gt;</b></p> </div> <div data-bbox="975 640 1402 1032"> <p style="text-align: center;"><b>&lt;직선 가각부&gt;</b></p> </div> </div>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을 사이에 둔 연결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결한 블록 간)을 가로지르는 연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li> <li>·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li> <li>·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li> <li>-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li> <li>-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li> </ul> </li> <li>·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li> <li>· 단지의 한 면이 생활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도로변에 진출입구를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을 배치한다.</li> </ul>
		대지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한다.</li> <li>·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li> <li>·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단, 지정용도로 정한 유치원시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li> <li>·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 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li> </ul>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A4	A1~A4	보행 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미터 이상과 경사구배 8% 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 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 이외의 시설은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르며,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공동주택 용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 중 10% 이상을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내에는 주민들을 위한 정원 및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의 설치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전거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 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치한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p>&lt;공동주택용지내 자전거보관소의 1개소당 설치규모&gt;</p>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head> <tr> <th>구 분</th> <th>1개소당 보관가능대수</th> </tr> </thead> <tbody> <tr> <td>주 동</td> <td>주동세대수당 0.3대</td> </tr> <tr> <td>상 가</td> <td>30대</td> </tr> <tr> <td>복지관 및 관리소</td> <td>15대</td> </tr> <tr> <td>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td> <td>10대</td> </tr> </tbody> </table> </div>	구 분	1개소당 보관가능대수	주 동	주동세대수당 0.3대	상 가	30대	복지관 및 관리소	15대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	10대
		구 분	1개소당 보관가능대수										
주 동	주동세대수당 0.3대												
상 가	30대												
복지관 및 관리소	15대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	10대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지가 생활가로에 면해있는 경우에는 ‘연도형 아파트’ 에 우선 배치한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A4	A1~A4	친환경계획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이하의 블록인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친환경 규제항목의 사항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li> <li>·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lt;별표 12&gt;에 의한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ul>
			녹지면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면적(식재면적)률은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순수식재면적)을 말하며, 녹지면적(식재면적)률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li> <li>- 산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 대지면적) × 100</li> <li>·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15% 이상(전용면적 60㎡이하의 블록인 경우는 최소 1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li> </ul>
			보존수목활용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용지는 보존수목활용율을 30% 이상 반드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존수목활용율이란 교목 중 보존수목의 비중을 말하며, 이때 보존수목활용율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li> <li>- 산식 : 보존수목활용율 = 보존수목본수 ÷ 조례상 식재해야하는 교목본수 × 100</li> <li>- 보존수목기준 : 수고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5센티미터 이상(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li> </ul>
			우수활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활용시설의 조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한 우수저류시설, 우수정화시설, 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비와, 수생비오톱이나, 저류기능의 연못, 건지(dry pond) 등의 옥외공간의 설치(최소 50제곱미터 이상) 중 최소 2가지를 설치 또는 설비하여야 한다.</li> <li>- 우수활용시설의 용량은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이하 '생활용수량'이라 한다.)의 5%에 해당하는 용량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수활용시설용량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li> <li>- 산식 : 우수활용시설용량(V) = 총 세대수 × 3.0(인/세대) × 172(ℓ/인·일) × 0.05</li> <li>- 1인당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2002년) : 172ℓ/인·일(2002년도 상수도통계 : 환경부), 혁신도시 세대당 인구수 : 2.8(인/세대)</li> <li>-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공동주택용지는 산식에 별도 산정된 계획인구를 반영한다.</li> </ul>
표토의보존및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용지는 표토 재활용율을 5% 이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단,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로서 표토가 상실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표토 재활용율이란 사업지에 분포된 자연상태의 표토량에 대한 사업후 활용비율로 친환경적 환경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정방식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li> <li>- 산식 : 표토 재활용율(V) = (재활용 계획에 의한 표토량 ÷ 전체표토량) × 100</li> <li>- 표토량 단위는 ㎡이며, 전체표토량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li> <li>- 전체 표토량 = 대지면적(㎡) × 0.15m(표토는 토심 15cm를 기준으로 함)</li> </ul>			

도 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A4	A1~A4	친환경 계획  자연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폐기물 중 · 고품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며, 주민들의 자율참여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가 일상화되도록 한다. 다만, 선진적 기술수법이 적용된 생활폐기물 수집장치(쓰레기자동 집하시설 등)가 계획되는 경우는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따로 두지 않는다.</li> <li>·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은 150세대당 1개소씩 설치하며, 가장 먼 주거동의 출입구로부터 5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li> <li>·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규모는 개소당 길이4.5미터, 폭3.0미터, 높이 3.5미터 이상으로 하고, 비 또는 눈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폭 1.5미터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는 가급적 퇴비화하여 단지내에서 활용가능하도록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li> <li>· 분리수거용기는 6종 이상의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li> </ul>
		환경 친화적 자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li> <li>·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적용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한다.</li> <li>·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내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li> </ul>
		단지내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공동주택단지의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li>· 통경구간,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처리된 면적은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을 공동주택단지 조경면적에 관한 위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본다.</li> <li>·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li> <li>·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li> <li>-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li> <li>-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li> <li>-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li> </ul> </li> </ul>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A4	A1~A4	단지내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용지 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li> <li>-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li> <li>-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li> <li>-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li> <li>-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li> <li>-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li> </ul>
		단지내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포장</li> <li>-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li> <li>-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li> <li>· 보도포장</li> <li>-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li> <li>- ‘투수성포장’ 을 권장한다.</li> </ul>

(2) 상업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근상1 ~근상3	근상1, ~근상3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공지는 &lt;별표 11&gt;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지정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중 공개공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li> </ul>
		공개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공지는 &lt;별표 11&gt;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ul>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li> <li>·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li> </ul>
		부설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1미터 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li> </ul> </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lt;별표 12&gt;에 의한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ul>



(3) 관광숙박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숙1	숙1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 전면공지는 <별표 11>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가 공개 공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개 공지	· 공개공지는 <별표 11>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 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 조경	· 연2변의 공공조경은 <별표 11>에 따른다.
		차량동선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 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 폭 1미터 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기타사항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2>에 의한 심의 (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 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숙1	숙1	친환경 계획	녹지면적률	·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1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존수목 활용율	· 보존수목활용율을 10% 이상 반드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우수활용시설	· 우수활용시설에 대한 사항은 지침서(우수활용시설)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표토의 보존 및 활용	<p>· 지침서의 표토재활용율을 5% 이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단,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의한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로서 표토가 상실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 표토 재활용율에 따라 친환경 계획중 ‘보존수목활용율 기준에 관한 사항’의 보존수목활용율을 완화 받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lt;표토 재활용률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gt;</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인센티브 적용순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표토 재활용율</th> <th style="text-align: center;">인센티브 적용 항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4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존수목활용율의 25%완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0% 이상 ~ 40%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존수목활용율의 20%완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0% 이상 ~ 30%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존수목활용율의 15%완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10% 이상 ~ 20%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존수목활용율의 10%완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5% 이상 ~ 10%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존수목활용율의 5%완화</td> </tr> </tbody> </table>	인센티브 적용순위	표토 재활용율	인센티브 적용 항목	1	40% 이상	보존수목활용율의 25%완화	2	30% 이상 ~ 4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20%완화	3	20% 이상 ~ 3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15%완화	4	10% 이상 ~ 2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10%완화	5	5% 이상 ~ 1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5%완화
			인센티브 적용순위	표토 재활용율	인센티브 적용 항목																	
1	40% 이상	보존수목활용율의 25%완화																				
2	30% 이상 ~ 4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20%완화																				
3	20% 이상 ~ 3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15%완화																				
4	10% 이상 ~ 2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10%완화																				
5	5% 이상 ~ 1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5%완화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	<p>·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p> <p>·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건물의 3분의 2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건물 내부에 적용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한다.</p> <p>·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내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 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p>																					

(4) 업무용지

도 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업무1	업무1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 전면공지는 <별표 11>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가 공개공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개 공지	· 공개공지는 <별표 11>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동선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 폭 1미터 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분을 식재 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기타사항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2>에 의한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혁신클러스터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이전3~ 이전9, 클1~ 클5	이전3~ 이전9, 클1~ 클5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 전면공지는 <별표 11>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가 공개 공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개 공지	· 공개공지는 <별표 11>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 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 조경	· 대로3-5, 종로3-37, 종로3-35, 종로3-33번의 공공조경은 <별표 11>에 따른다.
			차량동선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클2, 클4의 경우 부지면적 3,000㎡ 이상시 법정주차 대수의 110%를 확보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의 조경: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 폭 1미터 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기타사항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2>에 의한 심의 (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허가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위치	구분	계획내용																			
이전3~ 이전9, 클1~ 클5	이전3~ 이전9, 클1~ 클5	친환경 계획	공통	· 혁신클러스터용지중 업무기능의 블록인 경우는 완화하여 적용한다.																		
			녹지면적률	· 이전공공기관용지는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40% 이상(업무기능의 이전기관인 경우는 최소 2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존수목 활용률	· 혁신클러스터용지에는 보존수목활용율을 10% 이상 반드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우수활용시설	· 혁신클러스터용지내 우수활용시설에 대한 사항은 지침서(우수활용시설)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표토의 보존 및 활용	· 혁신클러스터용지는 지침서의 표토재활용율을 5% 이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단, 주택개발사업에 의한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로서 표토가 상실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표토 재활용률에 따라 친환경 계획중 ‘보존수목활용률 기준에 관한 사항’ 의 보존수목활용율을 완화 받을 수 있다. <표토 재활용률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인센티브 적용순위	<table border="1"> <thead> <tr> <th>인센티브 적용순위</th> <th>표토 재활용률</th> <th>인센티브 적용 항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40% 이상</td> <td>보존수목활용율의 25%완화</td> </tr> <tr> <td>2</td> <td>30% 이상 ~ 40% 미만</td> <td>보존수목활용율의 20%완화</td> </tr> <tr> <td>3</td> <td>20% 이상 ~ 30% 미만</td> <td>보존수목활용율의 15%완화</td> </tr> <tr> <td>4</td> <td>10% 이상 ~ 20% 미만</td> <td>보존수목활용율의 10%완화</td> </tr> <tr> <td>5</td> <td>5% 이상 ~ 10% 미만</td> <td>보존수목활용율의 5%완화</td> </tr> </tbody> </table>	인센티브 적용순위	표토 재활용률	인센티브 적용 항목	1	40% 이상	보존수목활용율의 25%완화	2	30% 이상 ~ 4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20%완화	3	20% 이상 ~ 3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15%완화	4	10% 이상 ~ 2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10%완화	5	5% 이상 ~ 1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5%완화
			인센티브 적용순위	표토 재활용률	인센티브 적용 항목																	
1	40% 이상	보존수목활용율의 25%완화																				
2	30% 이상 ~ 4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20%완화																				
3	20% 이상 ~ 3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15%완화																				
4	10% 이상 ~ 2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10%완화																				
5	5% 이상 ~ 1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5%완화																				
자원 재활용	· 혁신클러스터용지내 생활폐기물 보관소의 설치는 지침서의 “생활폐기물보관소”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건물의 3분의 2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건물 내부에 적용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한다. ·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티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내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 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6) 교육시설용지

도 번 명 칭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치원	유치원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공지는 &lt;별표 11&gt;의 내용을 따른다.</li> <li>·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경계부에 담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 또는 수공간으로 대신하도록 한다.</li> <li>-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한다.</li> </ul> </li> </ul>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li> </ul>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주차장의 조경(1)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2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li> </ul> </li> <li>· 옥외주차장의 조경(2)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상기 조경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한다.</li> <li>·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li> </ul>
		대지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li> <li>·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li> <li>· 생활가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한다.</li> </ul>
보행자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li> <li>·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li> </ul>		

(7) 공공청사용지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1	공1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 전면공지는 <별표 11>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지정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중 공개공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개 공지	· 공개공지는 <별표 11>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 조경	· 종로3-35번의 공공조경은 <별표 11>에 따른다.
		차량동선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 폭 1미터 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기타사항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2>에 의한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 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1	공1	친환경 계획	<p>녹지면적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li> </ul>																		
			<p>보존수목 활용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존수목활용율을 10% 이상 반드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ul>																		
			<p>우수활용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청사용지내 우수활용시설에 대한 사항은 지침서(우수활용시설)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li> </ul>																		
			<p>표토의 보존 및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청사용지는 지침서의 표토재활용율을 5% 이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단, 주택개발사업에 의한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로서 표토가 상실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li>· 표토 재활용율에 따라 친환경 계획중 ‘보존수목활용율 기준에 관한 사항’의 보존수목활용율을 완화 받을 수 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표토 재활용률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gt;</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인센티브 적용순위</th> <th style="width: 35%;">표토 재활용율</th> <th style="width: 50%;">인센티브 적용 항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4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존수목활용율의 25%완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0% 이상 ~ 40%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존수목활용율의 20%완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0% 이상 ~ 30%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존수목활용율의 15%완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10% 이상 ~ 20%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존수목활용율의 10%완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5% 이상 ~ 10%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존수목활용율의 5%완화</td> </tr> </tbody> </table>	인센티브 적용순위	표토 재활용율	인센티브 적용 항목	1	40% 이상	보존수목활용율의 25%완화	2	30% 이상 ~ 4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20%완화	3	20% 이상 ~ 3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15%완화	4	10% 이상 ~ 2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10%완화	5	5% 이상 ~ 1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5%완화
			인센티브 적용순위	표토 재활용율	인센티브 적용 항목																
			1	40% 이상	보존수목활용율의 25%완화																
2	30% 이상 ~ 4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20%완화																			
3	20% 이상 ~ 3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15%완화																			
4	10% 이상 ~ 2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10%완화																			
5	5% 이상 ~ 1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5%완화																			
<p>자원 재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청사용지내 생활폐기물 보관소의 설치는 지침서의 “생활폐기물보관소”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li> </ul>																					
<p>환경 친화적 자재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li> <li>·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건물의 3분의 2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건물 내부에 적용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한다.</li> <li>·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티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내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 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li> </ul>																					



(8) 기타시설용지

도 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저1	저1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재시설용지의 경우 주거지와 인접하여 완충녹지가 계획되지 않은 곳은 간선도로변으로 폭원 6미터 이상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차폐를 위한 식재를 권장한다.</li> </ul>
주1~ 주3	주1~ 주3	대지안의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 이상</li> <li>- 연면적 1,000㎡ ~ 2,000㎡ 미만 : 대지면적의 5% 이상</li> <li>- 연면적 200㎡ ~ 1,000㎡ 미만 : 대지면적의 5% 이상</li> </ul> </li> <li>· 대지안의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li> </ul>
		차량출입 및 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li> <li>·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li> <li>·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li> </ul>

〈 별표 11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 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li> <li>- “차도 연결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li> </ul> </li> <li>·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ul> </li> <li>- 경계부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공지는 연결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li> <li>·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li> </ul> </li> <li>-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운 것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li> </ul> </li> <li>- 위의 조성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li> </ul> </li> </ul>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li> <li>· 진입구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li> <li>-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이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li> </ul> </li> <li>·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30㎡ 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li> <li>-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li> <li>-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li> <li>- 공개공지 면적 50㎡ 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 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li> </ul> </li> </ul>

구 분	조 성 기 준									
공공조경	<p>· “공공조경” 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 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p> <p>·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 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냉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 3)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li> <li>-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 (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li> <li>-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공공조경의 식재기준&gt;</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수목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식재밀도(본/㎡)</th> <th style="text-align: center;">상록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td> <td style="text-align: center;">0.3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록수 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td> <td style="text-align: center;">0.5본 이상</td> <td></td> </tr> </tbody> </table> <p>-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다.</p>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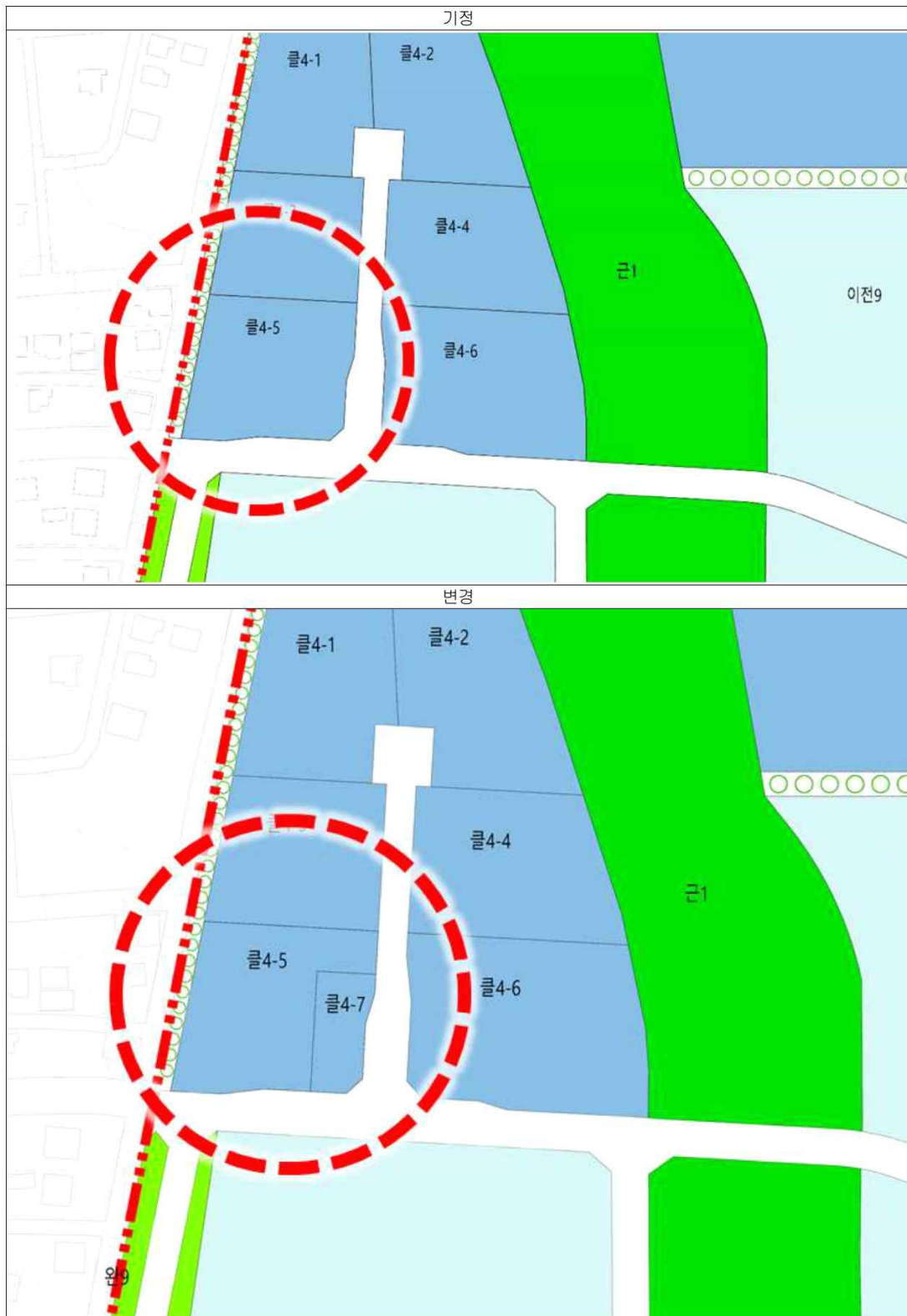
- 주1)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 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 주3)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수성포장으로 본다.

〈 별표 12 〉 심의(인·허가) 제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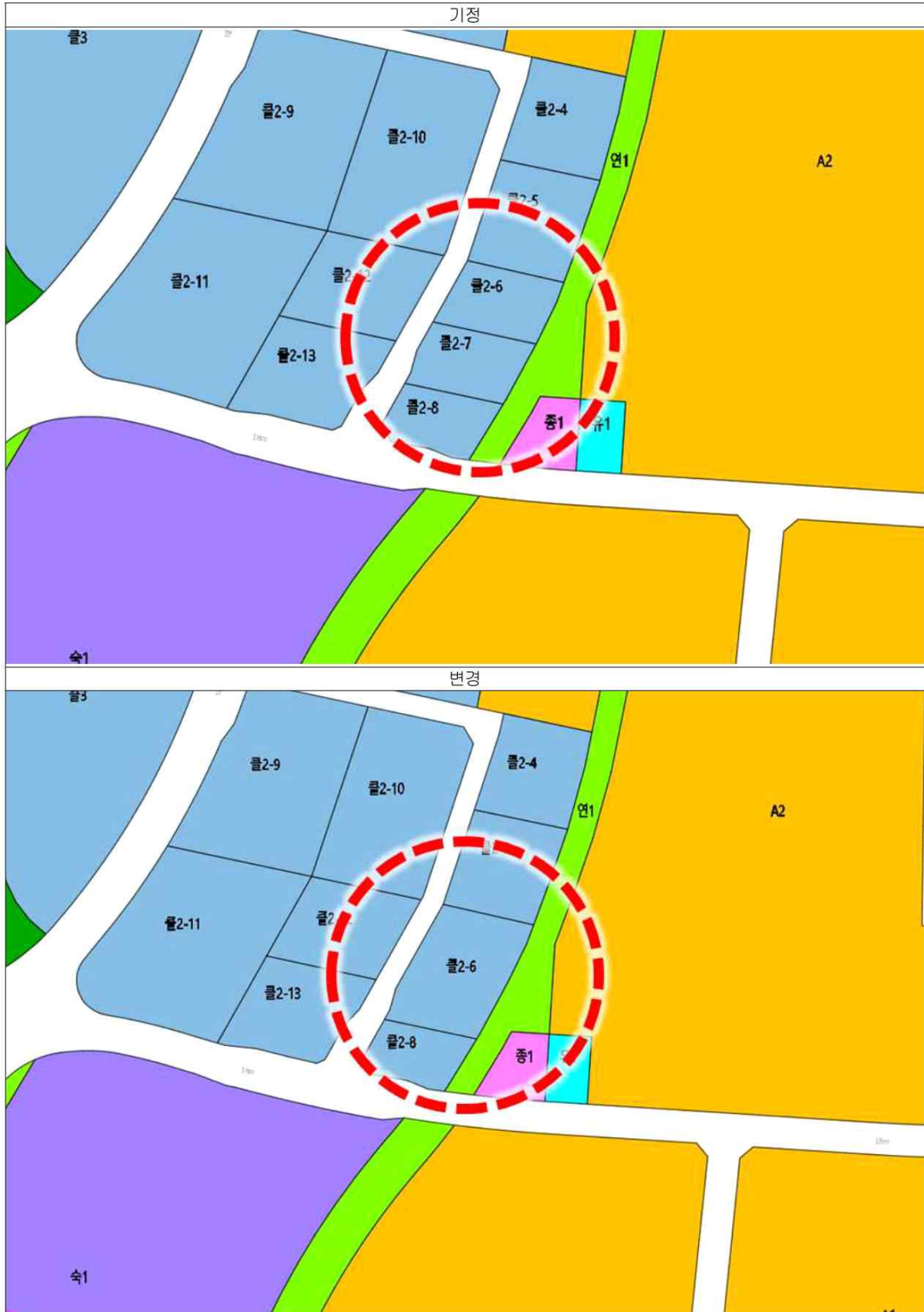
구 분	제 출 내 용																
<p>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li> <li>-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li> <li>-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li> </ul> </li> <li>· 제출도서의 축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li> <li>-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li> </ul> </li> <li>·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도서에는 제1항의 1호 내지 3호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li> </ul>																
<p>친환경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친환경 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gt;</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 규제항목</th> <th>승인(허가)시 제출 도서</th> </tr> </thead> <tbody> <tr> <td>녹지면적(식재면적)률</td> <td>·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td> </tr> <tr> <td>보존수목 활용율</td> <td>·개발사업전 보존수목 분포도면과 수량 및 현황사진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 및 수량(보존수목활용율 산출표포함)</td> </tr> <tr> <td>우수활용시설</td> <td>·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구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우수 저류,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td> </tr> <tr> <td>표토 재활용율</td> <td>·표토 재활용 계획서(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td> </tr> <tr> <td>생활폐기물 보관소</td> <td>·위치도 및 적용 반경범위 표시도(단지배치도에 병기할 것)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세부평면도 및 입면도(전면, 측면 등)</td> </tr> <tr> <td>환경 친화적 자재사용 *</td> <td>·환경친화자재 사용계획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 ·UFFI의 사용규제 명시 도서 ·휘발성유기물질 방출량 관련 시험성적서, 적용부위 표현도서 ·자재별 인증서, 제품설명서</td> </tr> <tr> <td>공 통 사 항</td> <td>·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td> </tr> </tbody> </table>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 규제항목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녹지면적(식재면적)률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보존수목 활용율	·개발사업전 보존수목 분포도면과 수량 및 현황사진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 및 수량(보존수목활용율 산출표포함)	우수활용시설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구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우수 저류,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표토 재활용율	·표토 재활용 계획서(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	생활폐기물 보관소	·위치도 및 적용 반경범위 표시도(단지배치도에 병기할 것)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세부평면도 및 입면도(전면, 측면 등)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 *	·환경친화자재 사용계획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 ·UFFI의 사용규제 명시 도서 ·휘발성유기물질 방출량 관련 시험성적서, 적용부위 표현도서 ·자재별 인증서, 제품설명서	공 통 사 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 규제항목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녹지면적(식재면적)률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보존수목 활용율	·개발사업전 보존수목 분포도면과 수량 및 현황사진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 및 수량(보존수목활용율 산출표포함)																
우수활용시설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구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우수 저류,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표토 재활용율	·표토 재활용 계획서(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																
생활폐기물 보관소	·위치도 및 적용 반경범위 표시도(단지배치도에 병기할 것)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세부평면도 및 입면도(전면, 측면 등)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 *	·환경친화자재 사용계획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 ·UFFI의 사용규제 명시 도서 ·휘발성유기물질 방출량 관련 시험성적서, 적용부위 표현도서 ·자재별 인증서, 제품설명서																
공 통 사 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p>경관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 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 되어야 한다.</li> <li>·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이상)은 천연색으로, A4(210× 297mm)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li> <li>·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li> <li>· 지붕(옥탑 포함)</li> <li>·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li> <li>·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li> <li>·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연출 계획서</li> </ul> </li> <li>-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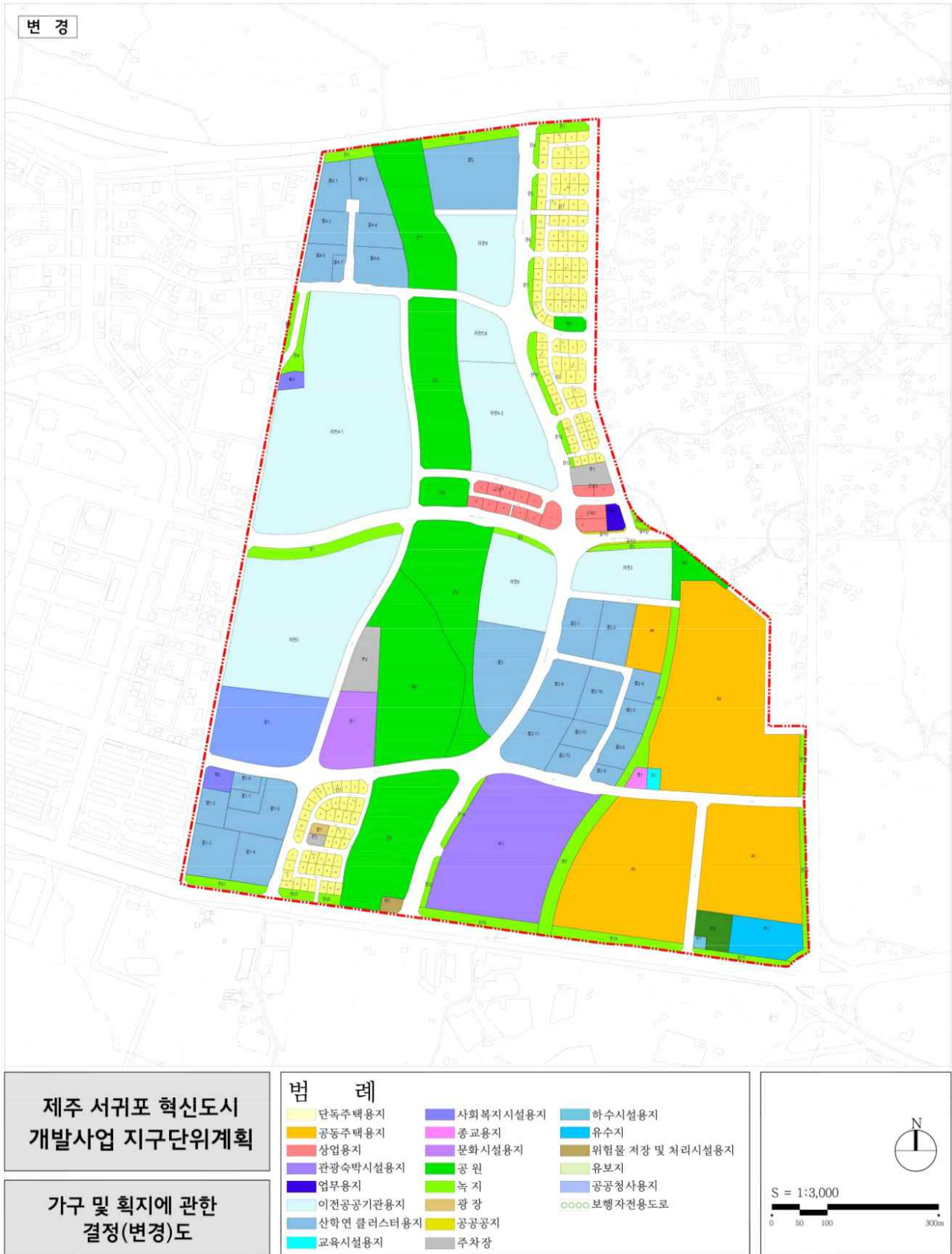
[참고도면]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계획도 >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계획도 〉





서귀포시 공고 제2020-607호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태흥2리 도시계획도로(소로3-4호선)개설사업』, 『대정오일시장~동일리 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도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0. 2. 26.

서 귀 포 시 장

아 래

재결신청 토지 및 물건 내역

○ “붙임” 참조

사업시행자: 서귀포시장

열람기간: 2020. 2. 26. ~ 2020. 3. 12.(15일간)

열람 장소 및 의견 제출처

○ 서귀포시청 도시과 ☎064)760-2982~3

의견제출 기간: 2020. 2. 26. ~ 2020. 3. 12.(15일간)

○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열람공고 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재결신청 토지 및 물건 내역

○ 태흥2리 도시계획도로(소로3-4호선) 개설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지장물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현실 이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남원읍 태흥리	566-2	566-6	대		257						고*선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566-2	김*자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7	가압류	
							창고	콘크리트스라브	25	㎡				김*일	남원읍 태신로 **	토지주 자	망(亡)
							창고	블럭스레트	24	㎡				반*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 ***동 ***호(평화동1가, 평화주공아파트)	토지주 자(김*일) 배우자	
							담팔수	10년생	1	주				김*순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길 ***-(옥교동)	토지주 손녀	망(亡)
							감귤나무	20년생	52	주				이*렬	제주시 조천읍 평사길 **	토지주 손녀(김*순) 배우자	망(亡)
							삼나무	20년생	15	주				이*심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 ***호(학산동, **아파트)	토지주 손녀(김*순) 자녀	
							측백나무	30년생	15	주				이*경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길 ***-(복산동)	토지주 손녀(김*순) 자녀	
							구름비나무	10년생	3	주				김*순	울산광역시 중구 구역전길 ***-(학성동)	토지주 손녀	
							감나무	5년생	2	주				김*욱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번 길 **, ***호(신정동, **빌라)	토지주 손자	
							아왜나무	20년생	1	주				김*애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검단로 **	토지주 손녀	
							녹나무	15년생	2	주				김*순	성산읍 신양리 ***	토지주 손녀	
							비파나무	5년생	1	주				김*경	경북 구미시 비산로5길 **, *** 동 ***호(비산동, **아파트)	토지주 손녀	
													김*순	남원읍 태위로 ***-*	토지주 손녀		
													김*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추 천로 ** (팔복동*가)	토지주 손자		
													김*준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 번길 **, 1호(남동)	토지주 손자		
													김*정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리 내*길 **, ***호(덕진동2가)	토지주 손녀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지장물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현실 이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김*열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중앙로 ***-**, ***호(**다세대주택)	토지주 자녀		
													김*열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 ****호(학산동, **탑스빌)	토지주 자녀		
													김*자	제주시 태성중2길 ** (일도이동)	토지주 자녀	망(亡)	
													현*길	제주시 태성중2길 ** (일도이동)	토지주 자(김*자) 배우자		
													현*우	제주시 태성중2길 **, 1층 (일도이동)	토지주 손자		
													현*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 로 **번길 **, ***동 ***호 (이매동, 이매촌)	토지주 손녀		
													현*훈	제주시 태성중2길 ** (일도이동)	토지주 손자		

○ 대정읍일시장~동일리 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개설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지장물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현실 이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대정읍 동일리	3107	3107-1	묘	묘	9						임*중	사정토지				
2	대정읍 동일리	3111	3111	묘	묘	46						김*진	사정토지				
3	대정읍 동일리	3156	3156	묘	묘	40						김*진	사정토지				
4	대정읍 동일리	3160	3160-1	묘	묘	15						김*진	사정토지				

서귀포시공고 제2020-649호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운진항(중로1-2-3호선) 진입도로 정비사업(광장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동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보상대상 토지 등을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다 음

1.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사업의 종류	사업명	사업의 규모	위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도시계획 시설(도로) 사업	운진항(중로1-2-3호선) 진입도로 정비사업(광장구간)	광장조성: 381㎡	상모리 3790-17 ~ 상모리 3790-18	2020. 2. 26. ~ 2022. 12. 3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서귀포시장,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흥동)

3. 열람기간: 2020. 3. 4. ~ 2020. 3. 19.(15일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토지·물건조서 참조 및 열람장소에 비치

5. 보상방법

가. 보상의 시기: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개인별 현금보상(계좌입금)

다. 보상시기: 2020. 4. 11. ~ 2020. 7. 11.

라.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 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의 경우 :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이전

마. 보상액 산정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3인(시·도 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위 같은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귀포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 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나. 열람결과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7. 열람장소 및 이의신청 장소

- 서귀포시청 도시과 【☎ 064-760-2983, fax 064-760-3819】

□ 토지 및 물건조서

번호	소재지		지적 [㎡]	분할 지번	지목	지장물건		편입 면적 또는 수량	단위	소유자		권리 관계			비고	
	읍·리	지번				종 류	구조및규격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1	대정읍 상모리	3790	447	3790-17	대			219	㎡	강정성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274번길 4-1				지분 49/447	
						배창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74번길 2			대정농업 협동조합	대정읍 하모리 947	근저당	지분 398/447			
						창고	조립식판넬	9	㎡							
						냉동고(2칸)	철재컨테이너	1	식							
						기타부대시설	외부기2개	1	식							
						창고	경량철골판넬	45	㎡							
						공선별기		2	㎡							
						바닥포장	아스콘	125	㎡							
						담장	블록조	15	㎡							
2	대정읍 상모리	3790-15	221	3790-19	대			69	㎡	조석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272					
						주택 및 점포	벽돌스라브	98	㎡							
						화장실 및 창고	벽돌스라브	13	㎡							
						옥상창고	스텐새시 판넬	13	㎡							
						물탱크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3	㎡							
3	대정읍 상모리	3790-16	199	3790-30	대			51	㎡	고병석	제주시 수덕로 44, 207동 402호(노형동,뜨란채)					
						주택 및 점포 (1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93	㎡							
						주택(2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54	㎡							
						주택	벽돌스레트	19	㎡							

도보 제842호 2020년 03월 04일(수요일)

번호	소재지		지적 [㎡]	분할 지번	지목	지장물건		편입 면적 또는 수량	단위	소유자		관리 관계			비고
	읍·리	지번				종 류	구조및규격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화장실 및 세탁실	벽돌스라브	8	㎡						
4	대정읍 상모리	3790-12	249	3790-18	대			42	㎡	김소영	서귀포시 신서로 52번길 26(강정동)				
						주택(1층)	벽돌스라브	97	㎡						
						주택(2층)	벽돌, 경량철골조스라브, 판넬	64	㎡						
						창고(2층)	경량철골판넬	6	㎡						
						차양	파이프 비닐천막	1	식						
						대문	목조	1	식						
						주택	블록스레트	53	㎡						
						욕실 및 화장실	벽돌스라브	8	㎡						
						대문	알루미늄새시	1	식						
						동백나무	25년생	2	주						
						목련나무	25년생	1	주						
						천리향	10년생	1	주						
						헛개나무	10년생	1	주						
						명자나무	15년생	1	주						

서귀포시공고 제2020-655호

**위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7호선)개설사업 실시계획(안)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위미도시계획도로(소로2-27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같은법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보상대상 토지 등을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02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 다 음 -

1.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에 관한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사업명	사업의 규모	착수 및 준공 예정일	비고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	위미 도시계획도로 (소로2-27호선)개설사업	도로연장 : 84m 도로 폭 : 8m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서귀포시장,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흥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계획평면도: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2020. 3. 2. ~ 2020. 3. 16.(15일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토지·물건조서 참조 및 열람장소에 비치

6. 보상방법

가. 보상의 시기: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개인별 현금보상(계좌입금)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 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의 경우 :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이전

라. 보상액 산정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3인(시·도 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위 같은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귀포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 가.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 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 나. 열람결과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8. 열람장소 및 이의신청 장소

- 서귀포시청 도시과 ☎ 064-760-2982, fax 064-760-381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	분할 지번	지목	편입 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남원읍 위미리	2839-1	374	2839-3	과	89	㎡	오*화	남원읍 위미리 2747	강*길	남원읍 태위로 123-11	가압류	
2	남원읍 위미리	2832-2	998	2832-7	잡	105	㎡	제주특별자치도					
3	남원읍 위미리	2838	797	2838-1	전	195	㎡	제주특별자치도					
4	남원읍 위미리	2837	321	2837-1	전	54	㎡	제주특별자치도					

○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장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	지번	종류	구조 및 규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남원읍 위미리	2839-1	비가림 하우스	파이프	72	㎡	오*화	남원읍 위미리 2747				
			묘목	50cm	180	주						



서귀포시 공고 제2020-662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인조례 제7조 및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등록·폐기사항을 동 조례 제10조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2일

서 귀 포 시 장

다 음

1. 등록·폐기 사유 : 민원인증기 교체에 따른 신조공인등록 및 미사용 공인 폐기
2.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  
○ 정방동장인(민원인증용) : 2020. 3. 2.
3.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 2020. 2. 28.
4.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부서명	등록공인명	인영(규격·서체)	폐기공인명	인영(규격·서체)
정방동	정방동장인 (민원인증용)	 (2.2cm×2.2cm 훈민정음체)	정방동장인 (민원인증용)	 (2.2cm×2.2cm 훈민정음체)